



식품 수출 안내서 중국편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 2021. 12

<http://www.mfds.go.kr>





식품 수출 안내서 중국편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 2021. 12
<http://www.mfds.go.kr>



CONTENTS

식품 수출 안내서 중국편

I. 수출국 개요

1. 법령 체계	3
2. 수입식품 관련 법령	4
3. 관리조직	10
3-1 해관총서	13
3-2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13
3-3 국가위생건강위원회	14
3-4 농업농촌부	15

II. 수입·통관절차

1. 수입통관 개요	19
2. 일반 수입절차	19
3. 통관세부절차	20
4. 통관관련 서류준비	23
4-1 수출서류작성	24
4-2 원산지증명서(C/O)발급	24
4-3 영문 위생증명서(H/C) 발급	25
4-4 동물(식물)검역증 필요	26
5. 통관 예시	27

III. 식품 등 기준·규격

1. 중국 식품 기준·규격	37
1-1 기준규격 제정	37
1-2 기준규격 개요	37

CONTENTS

1-3 한국 식품 유형에 따른 중국 식품 분류	42
1-4 성분심의	44
1-5 식품첨가물 규정	46
1-6 식품용 기구용기포장 규정	48
2. 한국산 수출식품 부적합 현황	50
2-1 개요	50
2-2 식품유형별 부적합 현황	51
2-3 원인별 부적합 현황	52
2-4 중국 수입식품 부적합 공개 현황	62
2-5 부적합 수입식품에 대한 조치	63
2-6 부적합 동향 분석	63
2-7 주요 통관거부사례 지침 가이드	64

Ⅳ. 표시제도

1. 용어 정의	75
2. 식품의 표시기준	77
2-1 사전포장식품의 표시기준	77
2-2 농산품의 표시기준	79
2-3 냉장·냉동 육류 제품의 표시기준	80
2-4 수산품의 표시기준	80
2-5 보건식품의 표시기준	80
2-6 영유아식품의 표시기준	83
3. 식품 표시 부적합 주요 현황	87

V. 수입제도 주요 개정사항

1. 검사검역제도	91
1-1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 등록·관리 규정」 공포(4월12일)	91
1-2 수입식품에 코로나 바이러스 검역 확인서 제출요구	93
1-3 콜드체인 수입식품 관리 강화	93
2. 기준·규격	95
2-1 통조림 식품 국가표준(GB)발표	95
2-2 코엔자임 Q10 등 5가지 보건식품 원료목록 제정('21.03.01~)	95
2-3 중국, 간장 및 식초를 대상으로 강화된 감독·관리 방침 시행 공고 ...	95
2-4 [규제관련] 중국, 유제품 패키지에 확인하기 쉬운 유통기한 표시 권장	97

VI. 수출·입 통계

1. 수입 현황	103
2. 수출 현황	103

VII. 부 록

[부록 1] 일반원산지 증명서 예시	107
[부록 2] FTA 원산지 증명서 예시	108
[부록 3] ATPA 원산지 증명서 예시	109
[부록 4] 영문 위생증명서 예시	110
[부록 5] 사전포장식품 라벨 통칙(GB 7718-2011)	111
[부록 6] 사전포장식품 영양 라벨 통칙(GB 28050-2011)	124
[부록 7] 사전포장 특수식이용도식품 라벨 통칙(GB 13432-2013)	141
[부록 8]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 등록 관리 규정	145

V. 수입제도 주요 개정사항

1. 검사검역제도	91
1-1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 등록·관리 규정」 공포(4월12일)	91
1-2 수입식품에 코로나 바이러스 검역 확인서 제출요구	93
1-3 콜드체인 수입식품 관리 강화	93
2. 기준·규격	95
2-1 통조림 식품 국가표준(GB)발표	95
2-2 코엔자임 Q10 등 5가지 보건식품 원료목록 제정('21.03.01~)	95
2-3 중국, 간장 및 식초를 대상으로 강화된 감독·관리 방침 시행 공고 ...	95
2-4 [규제관련] 중국, 유제품 패키지에 확인하기 쉬운 유통기한 표시 권장	97

VI. 수출·입 통계

1. 수입 현황	103
2. 수출 현황	103

VII. 부 록

[부록 1] 일반원산지 증명서 예시	107
[부록 2] FTA 원산지 증명서 예시	108
[부록 3] ATPA 원산지 증명서 예시	109
[부록 4] 영문 위생증명서 예시	110
[부록 5] 사전포장식품 라벨 통칙(GB 7718-2011)	111
[부록 6] 사전포장식품 영양 라벨 통칙(GB 28050-2011)	124
[부록 7] 사전포장 특수식이용도식품 라벨 통칙(GB 13432-2013)	141
[부록 8]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 등록 관리 규정	145



I

식품 수출 안내서 중국편

수출국 개요

1. 법령 체계¹⁾

- 중국의 법체계는 가장 상위에 헌법이 있고, 헌법의 하위 법령으로 법률, 행정법규, 부서규장 등이 존재함
 - 법률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국가주석이 서명한 주석령이며, 헌법 다음으로 효력이 있음
 - 부서규장의 경우 그 효력은 헌법, 법률, 행정법규보다 하위의 규정임

[중국의 법령 체계]

법 률

전국인민대표대회 또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제정하고 국가주석이 반포하는 규범성 문건의 총칭

* 예: 식품안전법, 수출입상품검사법등



행정법규

국무원에서 헌법과 관련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제정하는 기본 행정관리 규범성 문건의 총칭

* 예: 식품안전법 실시조례, 수출입상품검사법 시행조례, 수출입동식물검역법 시행조례 등



부서규장

국무원 부서에서 법률과 국무원의 행정법규, 결정과 명령에 의해 각 부서의 직책 범위 내에서 발표하는 규범성 문건의 총칭

* 예: 수출입식품 안전관리 방법, 수입식품 불량기록 관리 실시세칙 등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보원, 중국 식품안전법 개정 동향(2015)



2. 수입식품 관련 법령

<주요법률 및 내용>

○ 해관(세관)법²⁾

- (목적) 국가의 주권과 이익을 수호하며 해관(세관)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대외경제 무역과 과학기술 문화 교류를 촉진하고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 보장을 위하여 본 법을 제정함
- (주요내용) 출입국 운송수단, 출입국 화물, 출입국 물품, 관세, 해관(세관) 사무 담보, 법률 집행 감독, 법률 책임 등에 대해 규정함

○ 식품안전법³⁾

- (목적) 식품안전, 대중의 건강 및 생명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본 법을 제정함
- (주요내용) 식품의 생산경영에 대한 식품안전 위험모니터링 및 평가, 식품안전표준, 생산·경영 과정 통제, 라벨과 설명서 광고, 특수식품, 식품 검사, 식품 수출입, 식품 안전사고 처리, 감독·관리, 법률 책임 등을 규정함

○ 수출입 상품검사법⁴⁾

- (목적) 수출입 상품검사 업무를 강화하고 수출입 상품검사 행위를 규범화하며 사회 공공이익과 수출입 무역 관련 각 영역의 합법적 권익 보호 및 대외 경제무역 관계의 순조로운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본 법을 제정함
- (주요내용) 수입 상품검사, 수출 상품검사, 감독관리 및 법률 책임 등을 규정함

○ 출입국 동식물 검역법⁵⁾

- (목적) 동물전염병, 기생충병 및 식물위해성 병(病), 충(虫), 잡초 및 기타 유해생물의 국경 유입 및 유출을 방지하고 농업, 임업, 목축업, 어업 생산과 신체건강을 보호하며 대외경제 무역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본 법을 제정함
- (주요내용) 출입국 동식물, 동식물제품 및 기타 검역물에 대한 출입국 검역, 국경 통과 검역, 휴대 또는 우편물 검역, 운송수단 검역 및 법률 책임 등을 규정함

2) 해관총서 (<http://www.customs.gov.cn/customs/302249/302266/302267/356575/index.html>)

3) 식품화반넷 (<http://law.foodmate.net/show-186186.html>)

4) 식품화반넷 (<http://law.foodmate.net/show-194805.html>)

5) 식품화반넷 (<http://law.foodmate.net/show-1710.html>)

<주요 행정법규 및 내용>

○ 식품안전법 실시 조례⁶⁾

- (목적) 「식품안전법」에 근거하여 제정되었으며, 「식품안전법」의 규정사항을 구체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마련함
(참고) 「식품안전법」은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하고 법률에 해당하나, 「실시 조례」는 국무원이 제정하고 행정법규에 해당함
- (주요내용) 「식품안전법」에서 다루고 있는 식품안전 위험모니터링 및 평가, 식품 안전표준, 식품 생산·경영, 식품 검사, 식품 수출입, 식품안전 사고처리, 감독·관리에 관한 세부 규정임

○ 출입국 동식물 검역법 실시 조례⁷⁾

- (목적) 「출입국 동식물 검역법」에 근거하여 국무원이 제정한 행정법규로, 「출입국 동식물 검역법」실시를 위한 세부 규정으로 마련함
- (주요내용) 출입국, 국경 통과와 동식물, 동식물제품과 기타 검역물의 적재용기, 포장물, 동식물 전염병 발생지역 출처 등에 관한 검역 실시를 규정함

○ 수출입 상품검사법 실시 조례⁸⁾

- (목적) 「수출입 상품검사법」에 근거하여 국무원이 제정한 행정법규로, 「수출입 상품 검사법」규정사항을 구체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마련함
- (주요내용) 전국 수출입 상품검사 업무 실시 기관의 역할 및 수입상품의 검사, 수출 상품의 검사, 감독 관리, 법률 책임에 관한 세부내용을 규정함

<주요 부서규장 및 내용>

○ 수출입 식품 안전 관리 방법⁹⁾

- (목적) 수출입 식품안전을 보장하고 신체 및 동식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관법」, 「수출입 상품검사법」 및 그 실시 조례, 「출입국 동식물 검역법」 및 그 실시 조례, 「국경 위생검역법」 및 그 실시 조례, 「농산품 품질안전법」 등 법률

6) 식품화반넷 (<http://law.foodmate.net/show-198468.html>)

7) 식품화반넷 (<http://law.foodmate.net/show-163928.html>)

8) 식품화반넷 (<http://law.foodmate.net/show-12476.html>)

9) 식품화반넷 (<http://law.foodmate.net/show-207904.html>)



및 행정법규 규정에 의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하였으며, 속성은 규장(規章/행정성 법률 규범 문건)에 해당함

※ 2021년 4월 13일 개정 발표 및 2022년 1월 1일 실시 예정

- (주요내용) 수출입 생산경영자 및 수출입식품 안전에 관한 신고 및 평가, 감독관리, 법률 책임, 수입식품 현장검사 등을 규정함

○ 수출입 유 및 유제품 검사검역 관리 방법¹⁰⁾

- (목적) 수출입 유제품* 검사검역 감독관리 강화를 위하여 국가질검총국이 제정한 규장(規章)임

* 초유, 생유, 유제품

※ 2022년 1월 1일부로 폐지 (근거: 해관총서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식품 안전 관리 방법’ 공포에 관한 령(해관총서 제249호령) 예정

- (주요내용) 유제품 수입, 유제품 수출, 위험 사전경보 및 법률 책임을 규정함

○ 수출입 수산물 검사검역 감독 관리 방법¹¹⁾

- (목적) 수출입 수산물* 검사검역 및 감독관리 강화, 수출입 수산물의 품질안전 보장, 동물 전염병 유출입 차단 및 어업 생산안전과 인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한 규장(規章)임

* 식용으로 제공하는 수생동물 및 수생제품(활수생동물 및 수생동식물 번식재료 불포함)

※ 2022년 1월 1일부로 폐지 (근거: 해관총서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식품 안전 관리 방법’ 공포에 관한 령(해관총서 제249호령) 예정

- (주요내용) 수출입 수산물의 검사·검역 및 감독·관리를 규정함

○ 수출입 육류제품 검사검역 감독 관리 방법¹²⁾

- (목적) 수출입 육류제품* 검사검역 및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수출입 육류제품의 품질안전을 보장하며 동물 전염병 유·출입 방지 및 농업과 목축업의 생산안전과 인체건강 보호를 위하여 마련한 규장(規章)임

* 동물 도체 중 식용으로 제공하는 모든 부분(통조림 불포함)

※ 2022년 1월 1일부로 폐지 (근거: 해관총서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식품 안전 관리 방법’ 공포에 관한 령(해관총서 제249호령) 예정

10) 식품화반넷 (<http://law.foodmate.net/show-175861.html>)

11) 식품화반넷 (<http://law.foodmate.net/show-165929.html>)

12) 식품화반넷 (<http://law.foodmate.net/show-165930.html>)

- (주요내용) 수출입 육류제품의 검사·검역 및 감독·관리를 규정함

○ 입국(국경반입) 과일 검사검역 감독 관리 방법¹³⁾

- (목적) 입국 과일의 유해생물과 유독·유해 물질의 유입을 방지하고 중국 농업 생산과 생태안전과 인체건강을 보호를 위하여 「출입국 동식물검역법」 및 실시 조례, 「수출입 상품검사법」 및 실시 조례, 「식품위생법」 및 기타 법률·법규 규정에 의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하였으며, 속성은 규장(規章)에 해당함
- (주요내용) 중국으로 반입되는 신선 과일에 관한 검역 심사, 검사검역 조건, 제출 서류 등 검사검역 및 감독·관리를 규정함

○ 출입국 식량 검사검역 감독 관리 방법¹⁴⁾

- (목적) 출입국(국경통과 포함) 식량^{*} 검사검역 감독·관리에 적용하기 위한 규장(規章)임
 - * 가공, 비(非)번식용으로 사용하는 화곡류(禾谷類), 두류, 식물유지원료류 등 작물의 종실 및 서류의 괴근(塊根) 혹은 괴경(塊莖) 등
- (주요내용) 입출국 검사검역의 등록등기 및 검사검역 실시 요구, 제출 서류, 샘플 검사, 반송 또는 소각처리, 리스크모니터링 및 사전경보, 감독관리, 법률 책임 등을 규정함

○ 출입국 유전자변형제품 검사검역 감독 관리 방법¹⁵⁾

- (목적) 출입국 유전자변형제품^{*} 검사검역 관리를 강화하고 인체건강과 동식물, 미생물의 안전 보장 및 생태환경 보호를 위하여 「수출입 상품검사법」, 「식품위생법」, 「출입국 동식물검역법」 및 실시 조례, 「농업유전자변형 생물안전 관리 조례」 등 법률·법규 규정에 의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하였으며 속성은 규장(規章)에 해당함
 - * 「농업 유전자변형 생물안전 관리 조례」에서 규정한 농업 유전자변형 생물 및 기타 법률·법규에서 규정한 유전자변형 생물과 제품
- (주요내용) 각종 방식(무역, 내료가공(來料加工/원료수입가공), 우편, 휴대, 생산, 대체번식(代繁), 연구, 교환, 전람, 지원(원조), 증정 및 기타 방법)을 통해 국경 반입, 국경 통과, 국경 반출하는 유전자변형제품의 검사검역을 규정함

13) 식품화반넷 (<http://law.foodmate.net/show-163841.html>)

14) 식품화반넷 (<http://law.foodmate.net/show-188245.html>)

15) 식품화반넷 (<http://law.foodmate.net/show-1648.html>)

**○ 출입국 검사검역 과정 관리 규정¹⁶⁾**

- (목적) 검사검역 절차(과정) 관리를 강화하고 검사검역의 통관 효율 및 업무 품질의 제고를 위하여 본 규정을 제정하였으며, 속성은 규범성 문건에 해당함
- (주요내용) 출입국 검사검역기관이 법에 따라 출입국 화물 등 감독대상에 대해 검사검역을 실시하는 일부 혹은 전체 과정(검역신고 접수, 서류 심사, 현장 및 실험실 검사검역, 동식물 격리 검사, 검역처리, 종합평가, 허가증발급과 서류보관)의 절차(과정) 단계, 절차 관리, 절차 감독관리 등을 규정함

○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 관리 규정¹⁷⁾

- (목적) 수입식품 해외 생산기업에 대한 등록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식품안전법」 및 실시 조례, 「수출입상품 검역법」 및 실시 조례, 「출입국 동식물검역법」 및 실시 조례, 「식품 등 제품 안전 감독관리 강화에 관한 국무원 특별규정」 등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의거하여 본 규정을 제정하였으며, 속성은 규장(規章)에 해당함
- (주요내용) 중국으로 수출하는 해외 생산, 가공, 저장 기업의 등록 관리에 대해 등록 조건 및 절차, 등록 정보의 변경 혹은 연장 시 제출 서류, 등록 요구 부적합 조치 및 등록 관리를 규정함

※ 2021년 4월 13일 개정 발표 및 2022년 1월 1일 실시 예정

○ 수입식품 수출입업체의 등록 관리 규정¹⁸⁾

- (목적) 수입식품 수출입업체 정보 및 수입식품의 출처와 향방을 파악하고 수입식품의 이력추적 가능성을 확보하며 수입식품 안전사고 처리 및 수입식품안전 보장을 위하여 「식품안전법」 및 그 실시 조례, 「식품 등 제품 안전 감독 관리 강화에 관한 국무원 특별 규정」, 「수출입식품 안전 관리 방법」 등 법률, 행정법규, 규장(規章) 규정에 의거하여 본 규정을 제정함
- (주요내용) 중국 내(홍콩, 마카오 불포함)으로 수출하는 식품의 해외 수출업체 및 대리업체의 비안(신고), 중국 내 수입식품의 수화인의 비안(신고) 관리, 감독관리 등을 규정함

16) 식품화반넷 (<http://law.foodmate.net/show-192558.html>)

17) 식품화반넷 (<http://law.foodmate.net/show-207905.html>)

18) 식품화반넷 (<http://law.foodmate.net/show-174853.html>)

○ 식품 수입기록과 판매기록 관리 규정¹⁹⁾

- (목적) 수입식품 출처와 향방을 파악하고 수입식품의 이력추적 가능성을 확보하며 식품 수입기록과 판매기록 감독 관리 강화를 위하여 「식품안전법」 및 실시 조례, 「식품 등 제품 안전 감독 관리 강화에 관한 국무원 특별 규정」, 「수출입 식품안전 관리 방법」 등 법률, 행정법규, 규장(規章)요구에 의거하여 본 규정을 제정함
- (주요내용) 출입국검사검역기관의 식품 수입기록과 판매기록 감독 관리에 있어 감독 관리 업무의 책임 및 기록 대상 항목 등을 명시하고 수입기록 및 판매기록 양식을 제공함

○ 수입식품 불량기록 관리 실시 세칙²⁰⁾

- (목적) 수입식품 안전을 보장하고 수입식품 기업 주체의 책임 구현 및 업계 자율 촉진을 위하여 「식품안전법」 및 그 실시 조례, 「수출입 상품검사법」 및 그 실시 조례와 「수출입식품 안전 관리 방법」(총국령 제144호)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본 세칙을 특별 제정하였으며, 속성은 통고공고(通告公告)에 해당함
- (주요내용)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과 수출업체, 중국 내 수입업체, 대리업체의 불량기록에 관한 불량기록 작성, 리스크 조기 경보, 통제 조치 및 경보 해제 등을 규정함

○ 수출입 사전포장식품 라벨검사 감독관리 방법²¹⁾

- (목적) 수출입 사전포장식품 라벨검사 감독관리 강화를 위하여 「식품안전법」 및 그 실시 조례, 「수출입 상품검사법」 및 그 실시 조례 등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 의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함
- (주요내용) 수출입 사전포장식품 라벨 검사 감독 관리에 있어 기업의 책임, 수입 사전포장식품 라벨 검사 감독 시 제출 서류 및 검사 내용, 수출 사전포장식품의 라벨 관리 등을 규정함

○ 수출입 사전포장식품 라벨검사 감독관리 관련 사항에 관한 공고²²⁾

- (목적) 행정 간소와 권한 이양 개혁 심화 요구를 관철하고 통관 효율을 보다 더 제고하기 위하여 「식품안전법」 및 그 실시 조례, 「수출입 상품검사법」 및 그 실시 조례 등 법률법규 규정에 의거하여 제정하였으며, 속성은 통고공고(通告公告)에 해당함

19) 식품화반넷 (<http://law.foodmate.net/show-174854.html>)

20) 식품화반넷 (<http://law.foodmate.net/show-182142.html>)

21) 식품화반넷 (<http://law.foodmate.net/show-192902.html>)

22) 식품화반넷 (<http://law.foodmate.net/show-195737.html>)



- (주요내용) 수입 사전포장식품 라벨에 관한 중문 라벨 규정 부합, 현장검사 및 실험실 검사 시 수입업체의 합격증명서류 제출, 라벨 규정 위반 등을 규정함

3. 관리조직²³⁾²⁴⁾

- 중국은 행정효율성을 높이고 기구 간 업무중복, 권한과 책임소재 불분명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8년 3월에 정부조직개편을 단행했음.
- 특히 국가질량검험검역총국의 폐지로 기존의 수출입 상품 및 출입국 검역관리 업무가 해관총서로 변경됨

* 해관총서(General Administration of China Customs, GACC)

[수입식품 통관/검역 및 유통 관할 행정부처 변경 사항]

기존	대표 직무	변경 후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국가/품목별 수출입 허가, 수입식품 생산공장등록관리 등	해관총서로 대표 직무 이관, 국가 시장감독관리국으로 통합(신설)
출입경검험검역국	수출입 화물 검역	해관 총서(통합)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경영허가, 불법행위 단속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	식품, 약품 생산 및 유통 관리 감독	(통합 신설)

23)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중국 농식품 통관 가이드북(2018년)

24) 식품안전정보원, 중국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조직 변화(2019년)



[식품안전관리 감독기관 조직도]²⁵⁾²⁶⁾

25) 중국 식품안전관리감독 기관 (https://mfds.go.kr/brd/m_613/view.do?seq=33188)

26) 식품안전정보원, 중국정부조직도

(<https://www.foodinfo.or.kr/portal/bbs/detailBBSArticle.do?bbsId=1000000000000000494&goMenuNo=900001474&topMenuNo=9000001079&upperMenuNo=9000001096&nttId=209505>)



[해관총서 조직도]²⁷⁾

27) 식품안전정보원, 해관총서 조직도

(<https://www.foodinfo.or.kr/portal/bbs/detailBBSArticle.do?bbsId=1000000000000000494&goMenuNo=9000001474&topMenuNo=9000001079&upperMenuNo=9000001096&nttId=209505>)

중국 수출입식품안전국 (<http://jckspj.customs.gov.cn/>)

3-1 해관총서

- 주요 업무: 수입식품 안전관리
 - 전국 해관(세관)업무
 - 수출입 관세 및 기타 세금 징수 관리
 - 출입국 위생검역
 - 출입국 동식물 및 그 제품 검사검역
 - 수출입상품 법정검사
 - 수입식품·화장품 검사검역 및 감독관리
 - 해관 리스크 관리
 - 밀수 단속
 - 국제협력 등
- 주요 부서: 수출입식품안전국이 수출입식품 안전관리 업무담당
 - 수출입 식품·화장품 안전 및 검사검역에 대한 업무제도 마련
 - 수입식품기업 등록, 수입식품·화장품의 검사검역 및 감독관리
 - 리스크 분석 및 긴급예방조치 실시
- 인터넷 주소:
 - (해관총서) <http://customs.gov.cn/>
 - (수출입식품안전국) <http://jckspj.customs.gov.cn/>

3-2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 주요 업무: 시장 종합 감독관리, 시장질서 감독관리, 공업제품품질안전 감독관리, 식품안전 감독관리, 검사·인증인가업무 통합관리, 표준화 통합관리, 국가약품감독관리국 및 국가지적재산권국 관리 등
- 주요 부서: 식품안전 감독관리는 제품품질안전감독관리사, 식품생산안전감독관리사, 식품경영안전감독관리사, 특수식품안전감독관리사, 식품안전샘플검사감시사 등에서 담당
 - 국가가 중점 감독하는 제품 목록 마련(제품품질안전감독관리사)
 - 기업의 식품안전이력추적체계 구축 지도 등(식품생산안전감독관리사)
 - 유통 및 외식서비스 영역 식품안전상황 파악, 분석(식품경영안전감독관리사)



- 보건식품, 특수의학용도 조제식품, 영유아조제분유 등 특수식품 안전상황 파악, 분석(특수식품안전감독관리사)
- 식품안전표준, 식품안전리스크모니터링 계획 제정 참여(식품안전샘플검사감시사)

○ 인터넷 주소:

(시장감독관리총국) <http://gkml.samr.gov.cn/>
 (제품품질안전감독관리사) <http://samr.gov.cn/zljds/>
 (식품생산안전감독관리사) <http://samr.gov.cn/spscs/>
 (식품경영안전감독관리사) <http://samr.gov.cn/spjys/>
 (특수식품안전감독관리사) <http://samr.saic.gov.cn/tssps/index.html>
 (식품안전샘플검사감시사) <http://samr.gov.cn/spcjs/>

3-3 국가위생건강위원회

- 주요 업무: 국민건강정책, 질병예방관리계획·국가면역계획, 인구노령화 대응정책 조치 등 마련, 약품사용모니터링·임상종합평가실시, 식품안전위험모니터링 및 평가 실시, 식품안전표준제정및 공포, 직업·방사선·환경·학교·공공장소·음용수 등 공공 위생감독관리, 산아제한 관리 및 서비스, 국가중의약관리국관리 등
- 주요 부서: 식품안전표준·감시평가사는 식품안전국가표준(식품기준규격)제정, 위험 평가, 식품원료 안전성심사 등을 담당하며, 하부에 종합처, 식품안전표준관리처, 식품안전모니터링·평가처, 식품영양처 등 4개 부서가 포함
 - 식품안전국가표준 제정, 공포
 - 식품안전 위험모니터링·위험평가·위험교류 실시
 - 신식품원료, 신규 식품첨가물, 신규 식품관련제품의 안전성 심사 담당
- 인터넷 주소:

(국가위생건강위원회) <http://www.nhc.gov.cn/>
 (국가위생건강위원회식품안전표준감시평가사)
http://www.nhc.gov.cn/sps/new_index.shtml

3-4 농업농촌부

- 주요 업무: 3농(농업·농촌·농민)업무, 농촌 산업관리, 농산물 품질안전 감독관리, 농업생산재 및 투입재 감독관리, 농업재해예방관리, 농업투자 관리, 농업기술혁신, 농업분야 대외 협력 등
- 주요 부서: ‘농산물품질안전감독관리사’는 농산물 품질안전감독관리를 담당하며, 하부에 종합처, 표준처, 감시처, 감독 관리처, 응급처 등 5개 부서가 포함
 - 농산물 품질안전 감독관리 방면의 법률·법규·규정 마련(표준처)
 - 농산물 품질안전 국가표준 제정 참여(표준처)
 - 농업품질인증 관리 지도, 녹색식품·무공해·유기농산물 관리, 인증, 품질감독 실시(표준처)
 - 국제식품규격위원회(CAC) 중국연락사무소로서 국제기구 및 국외표준 동태추적, CAC등 국제표준 제정 참여(표준처)
 - 농산물품질안전감시계획 제정, 농약 잔류, 동물용의약품 잔류, 중금속 등 오염물질 모니터링(감시처)
 - 농산물 품질안전 관련 연례 모니터링 및 상황 조사 실시(감시처)
 - 농산물 품질안전 조기경보 분석 및 정보공개(감시처)
 - 식용농산물 생산부터 도소매시장·가공기업 진입 전까지의 품질안전 감독관리(감독관리처)
 - 농산물 품질안전 감독·샘플검사·조사 계획 제정, 시행(감독관리처)
 - 농산물 품질안전 이력추적 관리, 농산물 생산단계 합격증명 관리(감독관리처)
 - 농산물 포장표시 업무 및 감독검사(감독관리처)
 - 농산물 품질안전 위험평가 실시, 위험관리조치 마련(응급처)
- 인터넷 주소:
 - (농업농촌부) <http://www.moa.gov.cn/>
 - (농업농촌부농산물품질안전감독관리사) <http://www.moa.gov.cn/>



II

식품 수출 안내서 중국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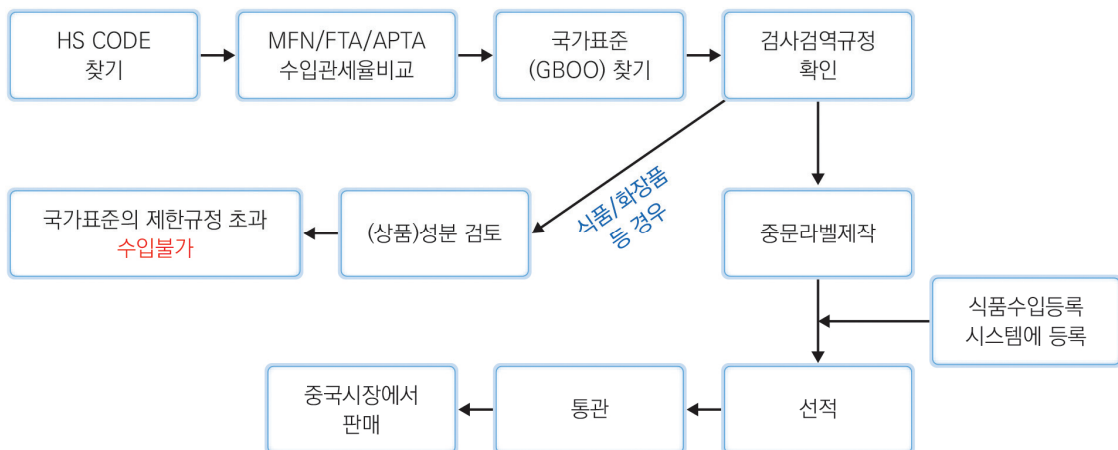
수입·통관절차

1. 수입통관 개요²⁸⁾

- 수입통관은 외국물품을 중국내로 반입하기 위한 일련의 행위로, 수입신고, 물품 심사·검사, 관세 납부 또는 징수, 수입허가 등 일련의 절차를 일컫음

2. 일반 수입절차²⁹⁾

- 수입자유품목의 對중국 수출은 “HS CODE 찾기”부터 시작
 - HS CODE 확인 → 국가표준과 검사검역규정에 의한 검사검역검험 → 각종 수입증서 획득을 위한 서류준비 → 중문 라벨 준비
 - 또 선적과정에서는 필요한 증서 제출, 서류 작성 정확도에 유의해야 함



자료원 : KOTRA 베이징무역관

[중국 상품 수출 절차]

28) KOTRA, 중국 수출통관가이드 유망품목 25選(2019)

29) KOTRA, 중국 수출통관가이드 유망품목 25選(2019)



3. 통관세부절차³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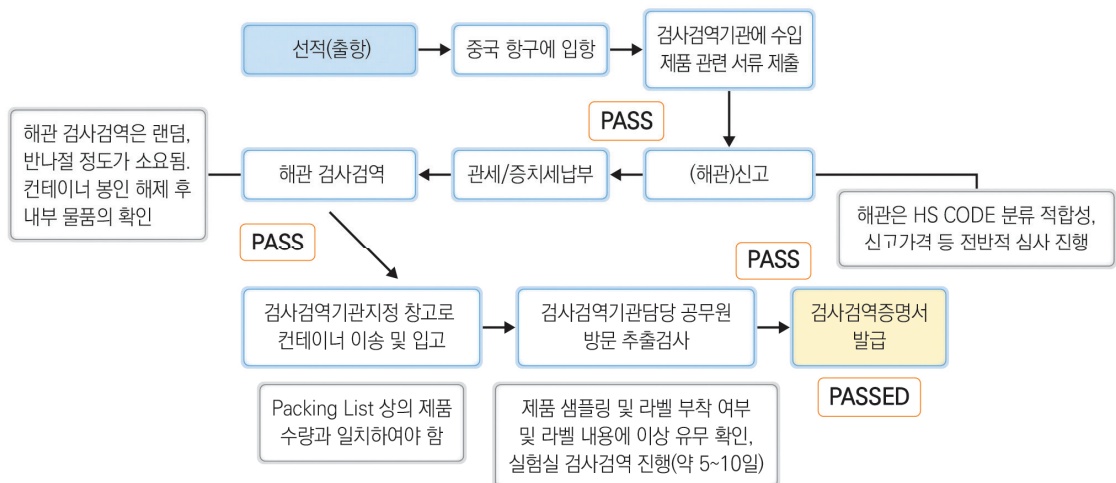
□ STEP 1 중문 라벨 준비(선적전)

- 수입(포장)식품 라벨은 반드시 중국어 간체, 아래 내용이 표기되어야 함
 - 제품명, 원료배합비, 원산지, 순함량, 제조사, 판매사 및 공장주소, 생산일자, 포장일자, 유통기한, 품질등급, 제품기준번호, 주의사항 등을 명시함

□ STEP 2 식품수입등록 시스템에 등록(선적전)

- 수출시 식품수입등록시스템에 관련 정보 등록 필요, 등록 완료 후 등록 번호를 받은 기업만이 식품 수출입 가능함
 - 등록번호를 받기 까지 약 30일이 소요되므로 사전 진행 필수
- 수입제품의 안전문제 발생시,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고 해당 수출자(혹은 생산자)가 수출한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 혹은 관련 조사를 신속히 진행하기 위한 규정임

□ STEP 3 서류 준비 및 통관신고(중국 수입항 도착 후)



자료원 : KOTRA 베이징무역관

[선적 및 통관 절차]

30) KOTRA, 중국 수출통관가이드 유망품목 25選(2019)



○ 해관 신고 : 통관 필요 서류 제출

◇ 수입시 필요한 서류

- 기본 선적서류 : 계약서,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B/L
- 제품자료 : 외포장지전개도(중문), 영양성분시험성적서, 성분배합율표, 제조공정도 등 제품관련 서류 일체
- 수출국(한국) 관할기관에서 발행한 위생증명서, 동물검역증
- 최초 수입 시(해당 수입항에 최초 수입) 식품안전국가표준에서 규정한 검사항목의 검사측정보고서 원본(외국어일 경우 중국어 번역본 첨부) 제시, 2차 수입부터 최초 수입시 제출한 검사측정보고서, 위생검역합격증명서의 사본 및 해관에서 규정한 항목의 검사측정보고서 원본 제시(식용유, 유제품 등 일부 품목에 한함)
- 기타 수입항의 검사검역당국에서 요구하는 기타 서류

□ STEP 4 관세/증치세 납부

- 해당 연도 세칙에서 MFN세율, 잠정세율, 한중 FTA와 APTA협정세율을 비교, 가장 낮은 관세율 적용함
 - 중국 정부의 소비유턴정책 시행으로 일부 소비품의 잠정세율이 한중 FTA 세율보다 낮거나 MFN 세율을 조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

- 수입증치세는 일반적으로 13%, 일부 농산품은 9%임

□ STEP 5 검사검역

- 검사확인인 해관 검사검역기관에서 직접 수행하며 검사 확인을 받지 않은 상품은 판매 및 사용불가 함
 - 기한 내에 필요한 서류를 검사검역기관에 제출, 지정된 검사장소에서 검사 실시

◇ 검사 신청시 필요 서류

통관신청서, 수입화물무역계약서, 식품위생검역신청서, 수출국발급 식품검사증서, 상업송장, 원산지 증명서, 포장명세서, 선화증권, 식품명칭목록(중국어), 화물수취통지서, 통관위탁서

- ① 검사검역신청을 접수한 해관 검사검역기관에서 우선 현장 확인함
- ② 검사검역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 경우에만 검사규정에 따라 샘플링 검사 진행함
 - 샘플추출량은 원칙적으로 1/1,000의 비율(소량 수입식품의 경우)
 - 품목별 샘플 추출은 최소 3건 이상, 중량은 건당 0.5kg 이상
 - * 식량, 설탕, 정제식용유, 분유류 식품과 식품첨가물은 식품위생표준규정 이외에 동물에 대한 급성독성시험 실시, 기타 식품도 필요 시 급성독성시험 실시



③ 관련 국가표준, 위생표준에 따라 실험실 검사검역 실시함

- 수입식품검사기준은 법률, 행정 및 법규 등 강제성 기준이 우선 적용됨
 - * 해당 품목의 GB 규정이 없을 경우, GB통용표준의 상세 품목 분류 기준에 따름
(ex. 농약잔류허용기준, 중금속함유량, 진균독소제한량 등에 상세 품목 분류 적용)
- 기존에 중국으로 수입된 적 없는 수출 품목에는 중국 국무원 위생부에 국가 표준 제정을 신청하여 비준을 받거나 위생부에서 기존 표준 중 적용 가능한 표준 부여함
 - * 수입 식품, 식품첨가물, 식품관련제품 모두 식품안전국가표준에 부합해야만 통과됨

◇ 검사검역대상 및 정의

- (식품) 사람이 식용 또는 음용하는 각종 식품과 원료 및 전통적인 습관에 따라 약용성분을 가미한 식품(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물품은 제외)
- (식품첨가제) 식품의 품질과 색, 향, 맛 및 방부와 가공을 위해 식품 중에 첨가하는 천연 또는 화학적 물질 의미
- (식품용기 및 포장재료) 포장, 식품을 담기 위한 종이, 나무, 금속, 도기, 플라스틱, 고무, 천연수지, 화학수지, 유리 등 제품과 식품에 접촉하는 재료 의미
- (식품용 기구 및 설비) 식품 생산과정에서 접촉하는 식품기계, 파이프, 컨베이어벨트, 용기, 용구, 식당용품 등 의미

④ 검사결과는 접수 6일 이내 공개, 검사결과에 따라 7일 내 「수입식품위생증서」 발급함

- 발급 후 재검 불가(국제중재에 따른 분쟁 제외)

◇ 불합격 판정기준

- 부패·변질된 식품
- 곰팡이, 생존벌레, 이물질, 유독물질로 오염된 식품
-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사용이 금지된 식품첨가제가 함유된 식품
- 제조일자과 유효기간이 없거나 유효기간을 초과한 식품
- 용기나 포장이 파손, 팽창 및 내용물이 누출된 식품
- 해동된 냉동식품
- 국제기구가 발표한 핵 오염국(지역)에서 생산된 식품
- 통관신청서류상의 화물과 실제화물이 상이할 경우
- 식품표시사항이 중국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식품
- 성기능 및 약물첨가 효과를 표시 또는 광고하는 식품
- 위생기준에 불합격하여 반출된 식품
- 중국 위생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식품
- 유해물질의 함량이 국가 위생기준의 허용범위를 초과한 식품



- ⑤ 중국 위생기준 미달시, 위해성 정도에 따라 반송/폐기/식용 외의 용도로 전용/재처리

4. 통관관련 서류준비³¹⁾

- 수출전 제품과 관련된 모든 자료, 증문 라벨과 제품 포장지 및 성분표의 번역본 등 통관 시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해 두는 것을 권장함
- 바이어 또한 검사검역 조건을 모두 파악하지 못하여 무리하게 수입을 강행하다가 불합격 처리되는 경우도 있음
- 생산자나 수출자가 모든 서류를 갖추고 있다면 바이어 스스로 준비해야 하는 수고를 덜 수 있어 같은 제품이라도 수출이 사전에 준비된 업체를 더욱 신뢰하고 선호하는 경향 존재함

[기본 선적서류 목록]

순번	선적서류 준비 항목	발급처	비고
1	HS CODE 확정	-	자문기관 의뢰 가능
2	패킹리스트 인보이스 계약서 B/L발급	수출업체 직접 작성 화물운송 항공/해운사	중국 해관 제출용
3	원산지 증명서 발급	대한상공회의소-일반/특혜 관세청-특혜	
4	영문 위생증명서 발급	일반농식품-식품의약품안전처 수산물-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5	동/식물검역증 발급 (일부품목)	농림축산검역본부	
6	성분배합 비율표 제조공정도 영양성분시험성적서 외포장지라벨번역본 중문라벨(CCIC인증서)	중국 식품수출 사전준비단계	

31)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2018 중국 농식품 통관 가이드북



4-1 수출서류작성

○ 패킹리스트(P/L)와 인보이스(C/I)제품은 식품안전 국가표준에 부합해야 함

- 패킹리스트(Packing List(P/L), 포장명세서)

수출하고자 하는 품목의 포장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기재한 서류로 품목명, 수량, 순중량, 총중량, 용적 등 수출제품의 정보가 모두 기재된 서류로, 인보이스(상업송장)와 함께 수출/수입 신고시 해관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인보이스(Commercial Invoice(C/I), 상업송장)

수출하고자 하는 품목의 상품명, 수량, 단가, 인도조건, 지급조건 등이 상세하게 명시된 거래상품 명세서로, 해당 명세서를 기준으로 중국 수입 통관시 신고가격 확정 및 관세 부과

- 계약서(Sales Contract(S/C), 판매 계약서)

수출하고자 하는 품목의 상품명, 수량, 단가 등 P/L과 C/I의 기본 내용을 바탕으로 수출자와 수입자 간에 체결한 계약서(명판날인 혹은 사인 필수)로 실제 수입 계약이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진행되었음을 증명

- 비엘(Bill of Lading(B/L), 선하증권)

송화인에 대하여 특정 선박에 특정 화물이 적재되었다는 사실을 기재하고 수령한 화물의 운송과 인도를 약속하기 위하여 선주 또는 선장이 서명하여 발행한 문서. 수입자는 비엘 수취 후 화물인도 가능

4-2 원산지증명서(C/O)발급

○ 원산지증명서는 일반/FTA/APTA 중 관세 부과 금액이 가장 적은 1가지를 선택하여 발급하되, 특혜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 요건에 부합해야 함

- 일반 원산지증명서

수출 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생산(재배, 사육, 제조, 가공 등)된 것임을 증명하는 문서로, 식품은 원산지증명서를 중국 해관에 제출해야 하며, FTA/APTA 특혜 원산지 요구 조건에 부합할 경우 해당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해야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발급처 : 대한상공회의소

☞ 일반원산지증명서 예시 부록1 참조

- FTA(자유무역협정)원산지증명서

한·중 자유무역 협정이 2015년 12월 20일부로 발효되면서, FTA 협정 품목에 해당하고 원산지 결정 조건에도 부합할 경우 FTA원산지 증명서를 신청 발급하여, 협정 관세율 적용이 가능함

※ 주의사항

선적 전/후 7일 근무일 내 발급한 것에 한해 인정

만약 해당 기간 내에 발급받지 못했다면, 선적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발급을 신청하여 “소급발급” 문구가 기재되어 있을 경우, 관세 차액환급 가능함. 단, 중국 해관에 신고시 반드시 사후적용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 발급처 : 대한상공회의소 / 관세청

☞ FTA원산지증명서 예시 부록2 참조

- APTA(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원산지증명서

한국,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라오스, 중국 등 6개국이 무역확대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으로, 협정 대상 품목에 한해 양허관세 적용이 가능함

※ 주의사항

선적일로부터 3근무일(선적일 포함, 근무일 기준)이내 원산지증명서가 신청, 발급되어야 하며, 3일이 초과된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선적 후 3일이 지났을 경우에는 APTA원산지증명서 신청 불가, 일반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발급처 : 대한상공회의소

☞ APTA원산지증명서 예시 부록3 참조

4-3 영문 위생증명서(H/C) 발급

○ 법률 근거 : 수출입식품안전관리법 제12조 제3항임

법률과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국가의 기관에서 발급한 검역(위생)증명서를 해관에 제출해야 함

* 발급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영문위생증명서 예시 부록4 참조



4-4 동물(식물)검역증 필요

* 발급처 : 농림축산검역본부

※ 주의사항

- 1) 수산물, 수산제품은 반드시 식약처 발행 위생증명서가 아닌 수산물위생증을 발급받아야 함(어묵, 수산캔, 김 등)

* 발급처 :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2) 가열, 살균 등 심가공되지 않은 동식물원성을 띠는 품목은 “동식물검역증”이 요구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함

- 동물검역증 필요 품목 : 우유 등 유제품

- 식물검역증 필요 품목 : 김치, 살균되지 않은 과일주스, 쌀 등

* 발급처 : 농림축산검역본부

Q&A 서류작성

1. 실제 화물과 선적 서류는 반드시 일치해야 하나요?

중국 해관총서에서 매월 발표하는 수입식품 불합격 사례를 보면 실제 화물과 서류 불일치로 불합격되는 사례가 있음. 예를 들어, 유통기한을 위생증에 2017년 1월 10일로 기재하여 발급받아 제출했으나, 실제 도착한 화물은 해당 날짜의 제품이 아닌 2월 10일 이거나 수량이 100박스로 기재되었지만 실제로 90박스만 도착한 경우 등이 해당 됨
수출자는 반드시 유통기한과 제품명 등 기본적으로 작성하는 실제 화물의 정보를 수출 선적 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음

2. 수출 서류 여러 건의 내용이 조금씩 달라도 문제가 없을까요?

선적서류에 기대되는 모든 내용은 반드시 일치해야 함. 예를 들어, 품목, 수량 등 기본정보와, 수출자와 수입자의 영문명칭과 주소 등 공통 적용되는 정보가 일치하도록 해야 함

5. 통관 예시³²⁾

□ 음료

1) 사전에 알아두기

상품명칭	음료(飲料/其他無酒精飲料)	HS CODE	2202.9900
관련법규	식품안전국가표준 음료 GB 7101-2015	사전포장식품 라벨 통칙 GB 7718-2014	
	영양강화제사용표준 GB 14880-2012	식품첨가제사용표준 GB 2760-2014	
	음료 GB 7101-2015	음료통칙 GB/T 10789-2015	
주관부처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2) 사전 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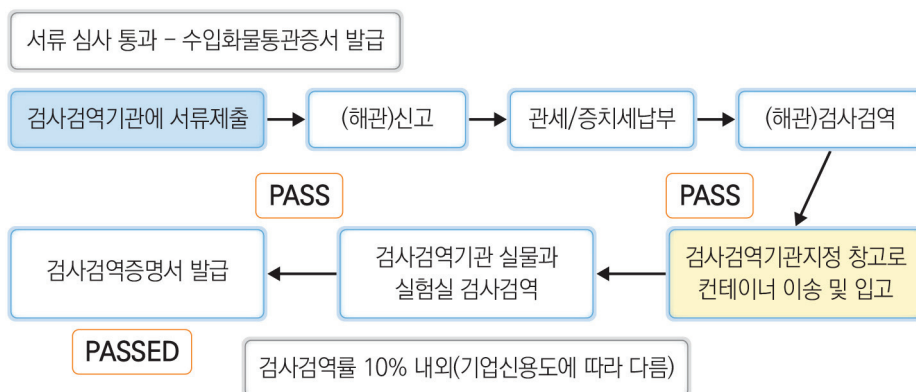
① 수입(대리)업체 식품 수입 등록 시스템에 등록함

- 등록 완료 및 등록번호를 받은 기업만이 식품 수출입 가능
- ▶ 시스템에 등록 후 요청되는 서류 원본을 구비하여 관할지 검사검역기관에 제출
등록번호를 받기까지 약 30일이 소요되므로 사전 취득이 필수임

② 라벨 등록 및 중문 라벨 부착함

- “사전포장식품 라벨 통칙 GB 7718-2014” 등 국가표준 적용

3) 통관절차



자료원 : KOTRA베이징무역관

[음료 통관 절차]

32) KOTRA, 중국 수출통관가이드 유망품목 25選(2019)



① 검사검역기관에 서류 제출함

◇ 음료 수입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계약서, 인보이스, 패킹 리스트, 선적 등 일반 서류
- ㉡ 제품자료: 외포장지전개도(중문), 영양성분시험성적서, 성분배합비율표, 제조공정도 등 관련 서류
- ㉢ 한국 관련 기관에서 발급한 위생증(식약처 발급), 원산지 증명서
- ㉣ 검사검역기관 또는 해관이 요구한 기타 증빙서류

② 해관 신고 및 관세 납부함

- ▶ 음료(HS 2202.9900) 한중 FTA 양허품목 중 하나, 2019년 MFN세율은 5%, APTA 세율 4.2%, 한중 FTA 세율은 26.2%, APT세율 적용 권장!
2034년 한국산 음료 수입시 “0%” 관세 적용

음료(HS 2202.9900) 관세율 비교

2019 MFN	2019 APTA	한중 FTA (2019년)	한중 FTA (2020년)	한중 FTA (2021년)
5%	4.2%	26.2%	24.5%	22.7%

자료원: 중국 수출입세칙

③ 검사검역창고 이동 후 실물 검사검역 및 실험실 검사검역 → 통과 시 검사검역 합격증명서(위생증명서) 발급됨

- ▶ 검역비율은 기업신용도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10% 수준

4) 유의사항

① HS CODE 분류

- 탄산음료나 주류 제조용 음료 베이스는 기타 미분류 제품에 해당, HS CODE가 “2160.9090”

② 식품첨가제, 영양강화제 사용주의

- 음료에 색을 내기 위한 색소나 기타 식품첨가제, 영양강화제 사용할 경우, 반드시 관련 국가표준에서 허용한 것을 첨가해야 함
* (예) 자색양배추 색소는 중국에서 사용이 허가된 식품첨가제가 아님

**“유기농”은 중국에서 인증 받은 후 사용가능**

- '17년 3월 불합격상품 중 제품명에 “유기농” 오렌지음료”로 되어있으며 중국에서 인증을 별도로 받지 않은 상태여서 수입 불허된 사례가 있음

Tips : 유기농제품인증관리지침등 관련 규정에 따라 중국에서 유기농 제품으로 인증을 받은 제품에 한해 “유기농”이라는 단어나 관련 문구 기재가 가능

□ 라면**1) 사전에 알아두기**

상품명칭	라면(拉面/方便面/即食或快熟面条)	HS CODE	1902.3030
관련법규	식품안전국가표준 음료 GB 7101-2015	사전포장식품 라벨 통칙 GB 7718-2014	
	영양강화제사용표준 GB 14880-2012	식품첨가제사용표준 GB 2760-2014	
	봉지라면/컵라면 GB 17400-2015		
주관부처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2) 사전 준비**① 수입(대리)업체 식품 수입 등록 시스템에 등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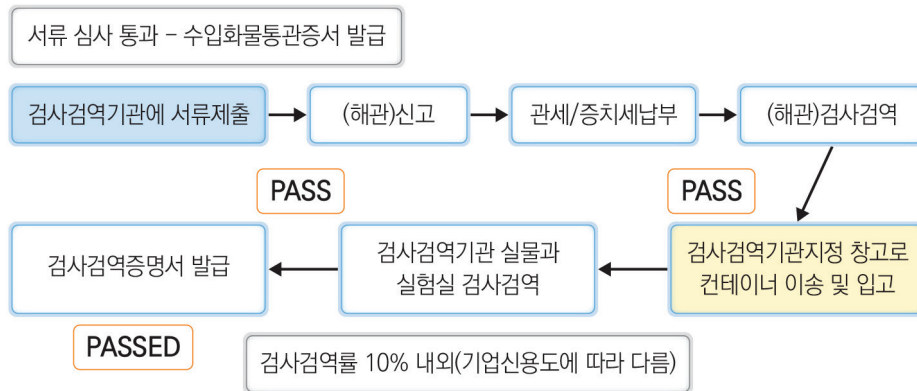
- 등록 완료 및 등록번호를 받은 기업만이 식품 수출입 가능
 - ▶ 시스템에 등록 후 요청되는 서류 원본을 구비하여 관할지 검사검역기관에 제출 등록번호를 받기까지 약 30일이 소요되므로 사전 취득이 필수임

② 라벨 등록 및 증문 라벨 부착함

- “사전포장식품 라벨 통칙 GB 7718-2014” 등 국가표준 적용



3) 통관절차



자료원 : KOTRA베이징무역관

[라면 통관 절차]

① 검사검역기관에 서류 제출함

◇ 라면 수입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계약서, 인보이스, 패킹 리스트, 선적 등 일반 서류
- ㉡ 제품자료: 외포장지전개도(중문), 영양성분시험성적서, 성분배합비율표, 제조공정도 등 제품관련 서류
- ㉢ 한국 관련 기관에서 발급한 위생증(식약처 발급), 원산지 증명서
- ㉣ 검사검역기관 또는 해관이 요구한 기타 증빙서류

② 해관에 신고 및 관세 납부함

- ▶ 라면(HS 1902.3030) 한중 FTA 양허품목 중 하나이나, 2019년 MFN세율과 APTA 세율 모두 FTA보다 낮음. 현재 가장 낮은 APTA 세율(8.7%) 적용 권장! 2023년부터 한중 FTA 세율 적용 권장!

라면(HS 1902.3030) 관세율 비교

2019 MFN	2019 APTA	한중 FTA (2019년)	한중 FTA (2020년)	한중 FTA (2021년)
10%	8.7%	11.2%	10.5%	9.7%

자료원: 중국 수출입세칙 2019



- ③ 검사검역창고 이동 후 실물 검사검역 및 실험실 검사검역 → 통과 시 검사검역 합격증명서(위생증명서) 발급함

▶ 검사검역비용은 기업신용도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10% 수준

4) 유의사항

- ① 중문 라벨, 특히 라면 스프에 첨가된 식품첨가제에 각별히 유의함

- 스프에는 다수의 식품첨가제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식품첨가제사용 국가표준 GB 2760-2014에 따라 첨가제를 규정에 맞게 사용했는지 사전 심의 후 중문 라벨을 제작함

- ② 분말 스프 중 육가공품 사용 불가함

- 국물맛을 내기 위해 분말 스프에 돼지고기, 쇠고기 등 육가공품이 사용된 경우 수입육류제품관리지침에 따라 수입을 불허함
- 특히 한글포장지에 중문 라벨을 부착하여 수출하는 경우 한글포장지에는 돼지고기 등의 육류 성분이 기재되어 있는 것을 사용하고 중문 번역 시 이를 고의로 누락 후 중문 라벨에 육류 성분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 통관 이후 식파라치에 식품안전법 위반으로 소송을 당할 수 있음

▶ 식품안전법에 따라 구매 금액의 10배 배상 판결 사례 증가함

- ③ 스프 생산 시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함

- 스프에 고춧가루나 마늘과 같은 향신료가 주로 사용되며 생산시 균락총수가 초과되는 사례가 빈번함

분말 스프 중 육류 성분 검출로 불합격

- '17년 3월 한국산 라면제품으로 수입신고 된 3건이 불합격 처리됨
- 불합격 사유는 “돼지고기/쇠고기 성분 함유”

Tips : 라면에는 국물맛을 내기 위한 육류 성분이 함유된 경우가 대부분임. 따라서 중국 수출용으로 배합을 변경하거나 육류 성분이 없는 제품을 수출할 수 있도록 사전에 대응책 마련 필요



□ 조미김

1) 사전에 알아두기

상품명칭	조미김(調味海苔/海苔)	HS CODE	2008.9931
관련법규	수출입수산물검사검역감독관리지침 (进出口水产品检验检疫监督管理办法)	사전포장식품 라벨 통칙 GB 7718-2014	
	식품안전국가표준 조류 및 조류제품 GB 19643-2016	식품첨가제사용표준 GB 2760-2014 영양강화제사용표준 GB 14880-2012	
	조미김 GB 19643-2016	김 GB/T 23596-2009	
주관부처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2) 사전 준비

① (한국)생산업체 등록 및 확인함

- 조미김(수산물)은 중국 정부로부터 인허가 받은 해외생산업체에서 생산한 제품만 수입 허가됨

* 등록 조회사이트 <http://www.cnca.gov.cn/bsdt/ywzl/jkspjwscpqzc/>

进口食品境外生产企业注册专栏

首页
通知公告
法律法规
文件下载
常见问题
联系我们

进口水产品境外生产企业注册名单 ← 수입 수산물 해외생산업체 등록 리스트

亚洲

孟加拉(2017年12月11日)	文莱(2018年01月23日)	沙特(2015年07月27日)	缅甸(2017年12月11日)
印度(2017年04月25日)	伊朗(2017年11月09日)	日本(2017年12月11日)	朝鲜(2015年02月25日)
哈萨克斯坦(2017年06月21日)	马尔代夫(2016年10月19日)	马来西亚(2018年01月12日)	巴基斯坦(2017年10月26日)
斯里兰卡(2017年08月24日)	菲律宾(2017年10月16日)	土耳其(2016年08月17日)	新加坡(2017年12月11日)
泰国(2018年01月22日)	越南(2018年01月12日)	韩国(2018年01月22日)	印度尼西亚(2018年01月12日)

조회방법

등록사이트- 수입 수산물 해외
생산업체 등록 리스트 중
“한국” 클릭

등록리스트 중 “등록번호
(注册编号) KP-000”는
통관서류, 라벨 등에 명시해야
하므로 주의 필요!

中华人民共和国国家认证认可监督管理局

Certification and Accreditation Administrat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韩国(水产品)生产企业在华注册名单
(2018/01/22更新)

序号 NO.	注册编号 ApprovalNo.	企业名称 Name	注册地址 Address	州/省/地 Province	城市 City	注册类型 Type	注册产品 Products for approval	备注 Remark
1	KP-257	DONGJIN SOOSAN YOUNGGEUOH AP	#36, YEQUINAE- GIL, DOHWA- MYEON, GOHEUNG- GUN, JEOLLANAM-DO	JEOLLAN AM-DO	GOHEUNG-GUN	PP	水产品	A

자료원 : KOTRA베이징무역관

② 수입(대리)업체 식품 수입 등록 시스템에 등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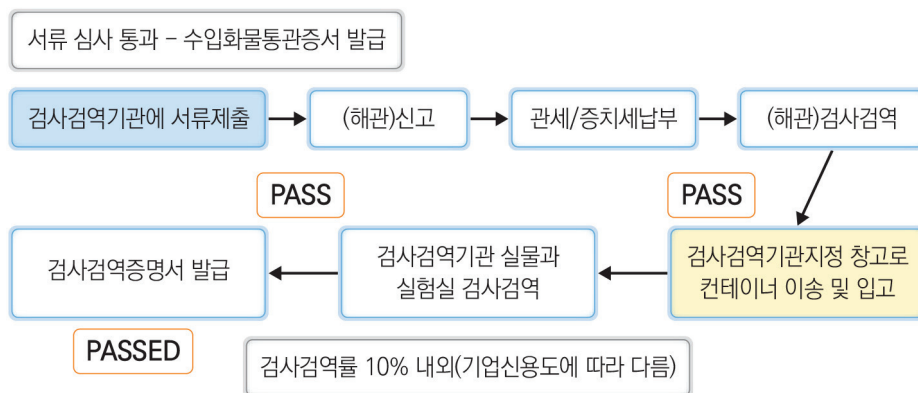
- 등록 완료 및 등록번호를 받은 기업만이 식품 수출입 가능

▶ 시스템에 등록 후 요청되는 서류 원본을 구비하여 관할지 검역기관에 제출 등록번호를 받기까지 약 30일이 소요되므로 사전 취득 필수!

③ 라벨 등록 및 중문 라벨 부착함

- “사전포장식품 라벨 통칙 GB 7718-2014” 등 국가표준 적용

3) 통관절차



자료원 : KOTRA베이징무역관

[조미김 통관 절차]

① 검사검역기관에 서류 제출함

◇ 조미김 수입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 계약서, 인보이스, 패킹 리스트, 선적 등 일반 서류
- 제품자료: 외포장지전개도(중문), 영양성분시험성적서, 성분배합비율표, 제조공정도 등 제품관련 서류
- 한국 관련 기관에서 발급한 위생증(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발급), 원산지 증명서
- 검사검역기관 또는 해관이 요구한 기타 증빙서류



② 해관 신고 및 관세 납부함

- ▶ 조미김(HS 2008.9931) 한중 FTA 양허 품목 중 하나, 2019년 한중 FTA세율 (11.2%) 적용 권장함

조미김(HS 2008.9931) 관세율 비교

2019 MFN	2019 APTA	한중 FTA (2019년)	한중 FTA (2020년)	한중 FTA (2021년)
15%	13.8%	11.2% ⁸⁶	10.5%	9.7%

자료원: 중국 수출입세칙

- ③ 검사검역창고 이동 후 실물 검사검역 및 실험실 검사검역 → 통과 시 검사검역 합격증명서(위생증명서)를 발급받게 됨
 - ▶ 검사검역비용은 기업신용도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10% 수준

4) 유의사항

- ① 위생증명서 발급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임
 - 조미김(HS 2008.9931)으로 분류되는 제품은 수산물위생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 해당 증서의 발급처는 식약처가 아닌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 증서에는 반드시 수산물 가공공장 등록번호 KP-XXX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 ② 수입업체의 판매기록 관리
 - 제품 명칭, 규격, 수량, 제조일, 제조 로트번호, 유통기한, 판매 유통상, 납품일 등의 정보를 시스템에 주기적으로 기록해야 함
- ③ “칼슘” 성분 첨가 금지
 - 식품안전국가표준 영양강화제 사용표준 GB 14880-2012에 따르면 “칼슘은 조류(藻類)제품에는 첨가불가”이므로 유의해야 함

김 수확 및 건조과정에서의 균락수 및 중금속 문제 주의

- 한국산 조미김 불합격 사례는 대부분 균락총수 초과가 주요 원인
- 김은 수확 후 건조 과정에서 세척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위생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균락총수가 초과되는 사례가 빈번하므로 위생관리에 유의해야 함



III

식품 수출 안내서 중국편

식품 등 기준·규격

1. 중국 식품 기준·규격

1-1 기준규격 제정³³⁾

- 중국은 '14년 5월부터 식품안전법 개정을 추진하여 新식품안전법이 2015년 10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변경된 주요 내용은 수출입식품 및 영유아 조제식품 관리감독 강화, 식품안전 사고 관련 처벌강화 등임
- 식품안전관리의 기초가 되는 국가표준(GB)에 대해서는 2012년 8월부터 위생부에서 국가 식품안전 감독관리 체계 12차 5개년 계획(중국 위생부, 2012)을 발표하고 식품관련 국가표준 약 5,000개의 정리작업을 진행하여 2013년말 완료하였음
- 이후 지속적으로 새로운 국가표준 설정 및 작업을 진행하고 있음. 매년 국가표준화 관리위원회가 국가표준 재·개정 계획을 발표하고 있으며, 해당 항목에 대해 진행되는 제·개정 현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사이트에 게재하고 있음

1-2 기준규격 개요³⁴⁾

- 중국 식품안전 국가표준은 국무원 위생행정부(국가위생건강위원회, 이하 위생부)과 국가지장감독관리총국의 제정, 공포를 거쳐 제정되는 식품안전표준으로, 식품을 생산하거나 경영하는 개인이나 회사는 반드시 해당 표준을 준수해야 함
- 현 식품관련 중국 식품안전 국가표준은 총 1,157개(2017년 4월 기준)가 있으며, 식품 수입시 통상 참고하는 표준으로 통용표준 11개, 제품표준 71개, 특수식품 9개가 있음(2018년 11월 기준)
2017년 4월 중국 위생부에서는 국가표준 정리 및 수정 통합작업을 계속 진행중이며, 매년 수정과 갱신, 통합 작업을 통해 식품안전 국가표준 정리 작업을 완성해 나갈 것이라고 발표함

33) 국내외 식품등 기준규격 비교연구(2017년)

34) 중국 농식품 수출 통관가이드북(2017년)



식품안전 국가표준 1차 정리 목록(2018년 11월 기준)

분류	내용	개수
통용표준	식품첨가제 기준, 오염물질 제한량, 라벨 통칙 등 포괄 적용되는 통용표준	11개
제품표준	조제유, 음료, 라면 등 개별 제품 유형에 적용되는 제품표준	71개
특수식품	영유아식품, 특수용도식품 등에 적용되는 특수 제품표준	9개

주요 식품안전 국가표준 목록 1-통용표준(2018년 11월 기준)

순	식품안전 국가표준 명칭	표준번호
1	식품중 진균독소제한량	GB 2761-2017
2	식품중 오염물질제한량	GB 2762-2017
3	식품중 농약최대잔류제한량	GB 2763-2019
4	식품중 병원균제한량	GB 29921-2013
5	식품첨가물 사용표준	GB 2760-2014
6	식품접촉재료 및 제품용 첨가제 사용표준	GB 9685-2016
7	식품 영양강화제 사용표준	GB 14880-2012
8	사전포장식품 라벨 통칙	GB 7718-2011
9	사전포장식품 영양 라벨 통칙	GB 28050-2011
10	사전포장 특수선식용식품 라벨	GB 13432-2013
11	식품첨가제 표시통칙	GB 29924-2013

주요 식품안전 국가표준 목록 2-제품표준(2018년 11월 기준)

순	표준 명칭	표준번호
1	치즈	GB 5420-2010(2021)
2	유청분말과 유청단백분말	GB 11674-2010
3	연유	GB 13102-2010
4	생우유	GB 19301-2010
5	발효유	GB 19302-2010
6	분유	GB 19644-2010
7	파스퇴르(저온)살균유	GB 19645-2010



순	표준 명칭	표준번호
8	크림, 버터와 무수 유지방	GB 19646-2010
9	멸균유	GB 25190-2010
10	조제유	GB 25191-2010
11	재가공치즈	GB 25192-2010
12	유당	GB 25595-2018
13	벌꿀	GB 14963-2011
14	급속냉동 밀가루 및 쌀류 가공제품	GB 19295-2011
15	식용염의 요오드 함량	GB 26878-2011
16	증류주 및 증류 혼합주	GB 2757-2012
17	발효주 및 발효 혼합주	GB 2758-2012
18	글루텐 제품	GB 2711-2014
19	두류(콩)제품	GB 2712-2014
20	양조장류	GB 2718-2014
21	식용균 및 식용균 제품	GB 7096-2014
22	초콜릿, 코코아버터 대체 유지 초콜릿 및 관련제품	GB 9678.2-2014
23	수산 조미품	GB 10133-2014
24	식용 설탕	GB 13104-2014
25	전분당	GB 15203-2014
26	보건식품	GB 16740-2014
27	팽화식품	GB 17401-2014
28	포장음용수	GB 19298-2014
29	견과 및 씨앗류 식품	GB 19300-2014
30	전분제품	GB 2713-2015
31	염장채소	GB 2714-2015
32	미정(화학조미료)	GB 2720-2015
33	식용염	GB 2721-2015
34	염지 육가공품	GB 2730-2015
35	신선, 냉동 동물성 수산물	GB 2733-2015
36	알 및 알가공품	GB 2749-2015



순	표준 명칭	표준번호
37	빙과류 및 빙과류 반제품	GB 2759-2015
38	통조림식품	GB 7096-2015
39	케이크, 빵	GB 7099-2015
40	과자	GB 7100-2015
41	음료	GB 7101-2015
42	동물성 수산제품	GB 10136-2015
43	식용 동물유지	GB 10146-2015
44	콜라겐 소시지 케이싱	GB 14967-2015
45	식용유지제품	GB 15196-2015
46	식품공업용 농축액(즙, 농도가 진한 액즙)	GB 17325-2015
47	인스턴트면	GB 17400-2015
48	젤리	GB 19299-2015
49	식용 식물용 원료	GB 19641-2015
50	건해삼	GB 31602-2015
51	신선(냉동)축산, 가금류 제품	GB 2707-2016
52	양식(곡물 등 식량)	GB 2715-2016
53	익힌 육가공 제품	GB 2726-2016
54	당절임 식품	GB 14884-2016
55	식품가공용 박(지게미)류	GB 14932-2016
56	캔디	GB 17399-2016
57	시리얼 제품	GB 19640-2016
58	조류 및 조류제품	GB 19643-2016
59	식품가공용 식물단백	GB 20371-2016
60	화분	GB 31636-2016
61	식용전분	GB 31637-2016
62	카제인	GB 31638-2016
63	식품 가공용 효모	GB 31639-2016
64	식용 주정	GB 31640-2016
65	식물유	GB 2716-2018

순	표준 명칭	표준번호
66	간장	GB 2717-2018
67	식초	GB 2719-2018
68	음용천연광천수	GB 8537-2018
69	유당	GB 25595-2018
70	복합조미료	GB 31644-2018
71	콜라겐 펩타이드	GB 31645-2018

기준 주요 식품안전 국가표준 목록 3-특수식품(2018년 11월)

순	식품안전 국가표준 명칭	표준번호
1	영아 조제식품	GB 10765-2010(2021)
2	생후 6~12개월 영아 및 유아 조제식품	GB 10767-2010(2021)
3	영유아 곡류 보조식품	GB 10769-2010
4	영유아 캔 보조식품	GB 10770-2010
5	특수의학용도 영유아 조제식품 통칙	GB 25596-2010
6	특수의학용도 조제식품 통칙	GB 29922-2013
7	이유식 영양 보충식품	GB 22570-2014
8	운동 영양식품 통칙	GB 24154-2015
9	임산부 부 수유기 여성 영양 보충식품	GB 31601-2015

※ 중국 식품안전 국가표준 데이터 검색 포털

인터넷 주소 : <https://sppt.cfsa.net.cn:80869/db>

→ 해당 표준번호를 입력하여 검색함

☞ 주요 중국 국가표준(GB)번역본(2017년 8월 기준) 35)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https://www.kati.net>) → 수출뉴스 → 무역장벽 → 중화인민공화국
국가표준(GB)자료안내

35)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https://www.kati.net/board/exportNewsView.do?board_seq=39829&menu_dept2=35&menu_dept3=75&dateSearch=)



1-3 한국 식품 유형에 따른 중국 식품 분류

- 한국 식품공전에 따른 식품분류를 중국기준규격과 비교한 것으로 참고용이므로 제품에 적용할 때에는 확인이 필요함

연번	한국		중국
1	식품품목군	식품품목명	GB 기준규격
2	과자류	과자(스낵과자류)	GB 7100-2015 비스킷
		과자(비스킷류)	
3	빵 또는 떡류	빵류(기타)	GB 7099-2015 케이크·빵 위생표준
4		떡류	-
5	코코아가공품류 또는 초콜릿류	초콜릿가공품	GB9678.2-2014
6		기타코코아가공품	
7		준초콜릿	
8	과당	액상과당	GB 15203-2014 전분당
9	어육가공품	어묵	GB 10136-2015 동물성 수산가공품
10		어육소시지	
11	두부류 또는 목류	목류	두부류 : GB 2712-2014 두류제품 목류 : GB 2713-2015 전분제품
12	식용유지류	콩기름(대두유)	GB 2716-2018 식물성식용유
13	면류	유탕면류(용기면)	GB 17400-2015 라면
14		유탕면류(봉지라면)	
15		국수(개량숙면)	
16		국수(숙면)	
17	다류	액상차(과실차)	GB 7101-2015 음료
18	커피	조제커피	
19		인스턴트커피	
20	음료류	혼합음료	
21		과채음료(가열)	
22		탄산음료	
23		홍삼음료	



연번	한국		중국
24	장류	고추장	GB 31644-2018 복합조미료
25		혼합간장	GB 31644-2018 복합조미료
26		된장	GB 2718-2014 양조장
27		혼합장	GB 31644-2018 복합조미료
28		양조간장	GB 2717-2014 간장
29		산분해간장	GB 31644-2018 복합조미료
30	조미식품	복합조미식품	GB 31644-2018 복합조미료
31		소스류(조미식품)	
32	드레싱	마요네즈	-
33	김치류	배추김치	GB 2714-2015 염장채소
34		기타김치	
35	젓갈류	양념젓갈	GB 10136-2015 동물성 수산 가공품
36	기타식품류	조미김	GB 19643-2016 조류(藻類)제품 위생 표준
37		식물성크림	-

식품의약품안전처



1-4 성분심의³⁶⁾

- 식품원료가 아닌 것을 사용하여 생산한 식품, 식품첨가제가 아닌 화학물질이나 기타 인체 건강에 유해한 물질을 사용하여 생산한 식품, 회수된 원료로 생산된 식품을 생산 혹은 경영하는 것을 금지함(식품안전법 제34조 제1항)

[일반식품에 사용 가능한 원료 기준]

원료구분	품목 예시	심의 기준
특정 지역에서 30년간 전통 식용 관습 보유 및 생산 이력이 있는 원료	오이, 토마토, 당근, 시금치, 커피 등	사용 원료 중국기준 부합 여부심의
전통적으로 종약재이면서 식품에도 사용되는 원료	대추, 도라지, 은행, 봉얌, 갈근, 감초, 구기자, 어성초 등	
신식품원료	5년근 이하 인삼, 알로에(베라) 등 전통식용관습이 없는 동/식물 등 중국 위생부의 신식품 원료 허가를 받아 일반식품으로 승인된 원료	
식품첨가제	인산염, 구연산나트륨 등 국가표준 GB 2760에서 규정한 식품첨가제	국가표준에 기재된 종류와 품목별 제한량 준수 여부 심의
영양강화제	비타민C, 칼슘, 철 등 비타민과 미네랄 등 GB 14880에서 규정한 영양강화제	

- 성분 심의에 필요한 서류 : 성분 배합 비율표
 - 성분배합 비율표는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진실한 내용으로 작성, 임의로 조정하여 제출할 경우 수입검사 검역시 식품첨가제 사용량 초과 등으로 불합격 처리될 수 있음

36)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2018년 중국 농식품 통관 가이드북」



Q&A 원료/성분

1. 전통적인 식용 관습을 30년으로 정한 이유는?

최소 중국의 성(省)관할 구역에서 30년간 식용한 관습이 있다면, 이는 곧 일정 원료를 30년간 식용하였음에도 인체의 이상 반응이나 질병이 나타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어 원료의 안전성에 대한 입증이 충분히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임. 30년의 식용 관습이 있는지에 대한 증명은 해당 행정구역의 위생부에서 관할함. 만약 30년의 식용 관습이 없는 특정 원료라면 “안전성 평가보고서” 등 서류를 준비하여 위생부의 심의를 받은 후 “신식품 원료”로 승인이 되어야 함

2. 한국에서 신개발된 특허 받은 원료인데, 일반식품에 사용가능한가요?

한국에서 신개발된 원료, 특히 추출물과 같은 원료는 중국에서 전통적인 식용관습이 없을 뿐 아니라 동/식물과 미생물에서 분리된 성분이므로 “신식품원료”로 승인을 받은 후 일반식품에 첨가가 가능함. 신식품원료로 승인받은 절차가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원료 선택 시 주의해야 함

3. 한국공전에 존재하는 식품첨가제인데 왜 중국에서는 첨가가 안되나요?

중국에서 식품첨가제는 GB 2760 식품첨가제 국가표준에 따라 규정된 품목과 제한량 범위 내에서 사용해야 함. 일부 식품첨가제는 중국에서는 허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중국 수출을 준비하고 있다면 반드시 중국에서 규정한 첨가제인지 확인해야 함



1-5 식품첨가물 규정³⁷⁾

○ 주요 관리기관

-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 보건관련법률, 정책수립 및 집행과 관리, 의료 및 보건시스템 개선, 질병예방 및 관리 등 담당
 - 인터넷주소: <http://en.nhc.gov.cn/index.html>
- 식품안전표준감시평가국 : 식품안전표준 제정, 식품첨가물 및 기타 식품 관련 제품에 대한 안전성 평가 등
 - 인터넷주소: http://www.nhc.gov.cn/sps/new_index.shtml

- “식품안전국가표준 식품첨가물 사용표준”이라는 명칭의 GB 2760-2014에 제공되며, 다음과 같이 구성됨

구분	제목
	서문
제1장	범위
제2장	용어와 정의
제3장	식품첨가물의 사용원칙
제4장	식품분류체계
제5장	식품첨가물의 사용규정
제6장	식품용 향료
제7장	식품산업용 가공보조제
부록A	식품첨가물 사용규정
부록B	식품용 향료 사용 규정
부록C	식품산업용 가공보조제 사용규정
부록D	식품첨가물 기능 유형
부록E	식품분류체계
부록F	부록 A중 식품첨가물의 사용 규정 색인

- ▶ 중국 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규정 원본과 번역본은 aT KATI(농식품수출정보)
 - 제도 → 식품첨가물 → 식품첨가물 원본 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음
 - 인터넷주소: <https://www.kati.net/additive/additiveList.do>

37)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주요 수출대상국의 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조사 중국 규정해설집(2020)



○ 중국 식품첨가물의 정의

- 식품첨가물규정인 “식품안전 국가표준 식품첨가물 사용표준”에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음
 - 식품의 질 및 색, 향, 맛을 개선하고 부패 방지, 신선 보존 및 가공 공정의 필요를 위해 식품 중에 첨가한 인공 합성 또는 천연물질을 의미함. 착향료, 껌베이스 중 기초제 물질, 식품공업용 가공보조제도 이에 포함됨

○ 한국과 중국의 첨가물 사용량 기준

▶ 한국

- ① 일반사용기준 : 식품첨가물 공전에 등재되어 있어 모든 식품에 사용할 수 있으나, 사용함 있어 사용량에 대한 제한기준이 없는 경우로 식품첨가물 일반 사용기준에 따라 물리적, 영양학적 또는 기타 기술적 효과를 달성하는데 최소 적정량을 사용하여야 함
- ② 사용금지 : 식품첨가물 공전에 등재되어 있으나 해당 품목에 사용할 수 없음

▶ 중국

- ① 최대 사용량 : 사용이 허가된 식품첨가물을 최대로 첨가할 수 있는 양임
- ② 최대잔류량 : 식품첨가물 또는 해당 분해산물이 최종 식품에 잔류할 수 있도록 허락된 잔류량 임
- ③ 식품첨가물 이월(Carry-over) : 식품첨가물이 식품 원재료(식품첨가물 함유)를 통해 식품에 포함되는 경우임
 - 이월(Carry-over)원리 : 직접적인 추가 이외에 첨가물은 식품 성분으로부터의 이월에 의해 식품에 존재할 수도 있음 단 다음과 같은 조건에 부합되어야 함
 - 식품 원재료 중 첨가물의 사용량이 허용된 최대허용 수치를 초과해서는 안 됨
 - 일반 생산공정 조건 하에 원재료를 사용해야 하며, 식품 중 해당 첨가물의 함량이 원재료 이월 수준을 초과해서는 안 됨
 - 원재료 이월 식품 중 해당 첨가물의 함량은 직접 해당 식품에 첨가한 수준 보다 낮아야 함
- ④ 특정 식품첨가물이 특정 식품유형에 사용 허가된 경우, 해당 유형의 하위 분류까지 같이 사용이 허용됨(별도 규정 예외)



1-6 식품용 기구용기포장 규정³⁸⁾

○ 주요 관리기관³⁹⁾⁴⁰⁾⁴¹⁾

-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 식품관련제품*의 생산 및 품질안전 감독 관리함
- 국가위생건강위원회 : 신규 식품관련제품**에 대한 안전성심사, 식품안전국가표준(기준규격)제정함

* 식품관련제품 : 식품에 사용되는 포장재료, 용기, 세척제, 소독제, 식품생산 및 경영에 사용되는 도구, 설비를 가리킴

** 국가식품안전위험평가센터에서 식품관련제품 중 생물성, 화학성, 물리성 위해요소에 대한 리스크평가 후, 국가위생건강위원회에 리스크평가 결과 등 정보 보고함

- “식품용기 및 포장재료용 첨가물 사용 위생 표준(GB 9685-2008)” 개정을 계기로, ‘식품용기 및 포장재료’라는 용어가 ‘식품접촉재료 및 제품(GB 9865-2016)’으로 변경 함(2017.10.19. 시행)

○ 정의

- (식품접촉재료 및 제품) 정상적인 사용 조건 하에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과 접촉 또는 접촉할 가능성이 있거나 그 성분이 식품으로 이행될 가능성이 있는 각종 재료와 제품으로 식품의 생산, 가공, 포장, 운송, 보관, 판매, 사용 과정에서 식품에 사용되는 포장재료, 용기, 도구, 설비, 식품과 직접 또는 간접 접촉 가능성이 있는 인쇄잉크, 접착제, 윤활유 등 포함(세척제, 소독제, 공공급수시설 제외)
- (복합재료 및 제품) 각각 다른 재질 또는 동일한 재질의 재료를 접착, 핫멜트(hot melt), 기타 방식으로 결합해 만들어진 두겹 이상의 식품접촉재료 및 제품
- (조합재료 및 제품) 2종 이상의 각기 다른 재질 또는 동일한 재질의 재료를 조립, 용접, 상감 등 방식으로 조합해 만들어진 식품접촉재료 및 제품

38) 식품안전정보원, 식품용 기구용기포장 관리제도(2017)

39) 식품의약품안전처

(https://mfds.go.kr/brd/m_613/view.do?seq=33123&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7)

40) 식품의약품안전처

(https://mfds.go.kr/brd/m_613/view.do?seq=33126&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7)

41) 국가시험안전위험평가센터

(<https://www.cfsa.net.cn/Article/Singel.aspx?channelcode=B2957AD28C393252428FF9F892D1ED1811F73D8044090E5&code=224F8CC60FBB5F9730DD1A1FEB4FFBECADA5BD5859FE051B>)



○ 근거 법령

- 식품의 포장재료, 용기, 세척제, 소독제, 식품생산 및 경영에 사용되는 도구, 설비의 생산, 경영, 안전관리에 종사할 경우 “식품안전법”을 준수해야 함(제2조)

○ 관련 법령

- 통용표준 : 일반안전요건과 첨가물 사용기준
- 생산규범 : 식품접촉재료 및 제품의 생산(제조) 관리 규정
- 제품표준 : 식품접촉재료 및 제품의 재질별/용도별 규격
- 검사방법표준 : 일반 및 개별 검사방법 표준



2. 한국산 수출식품 부적합 현황⁴²⁾

2-1 개요

- 최근 3년(2018~2020) 국내 식품 부적합 81%가 미국과 중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 미국이 518건(62.0%)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중국 158건(18.9%)으로 미국과 중국이 전체의 81%였음. 그 다음으로는 일본 71건(8.5%), 대만 61건(7.3%), EU 27건(3.2%) 순임
- 주요 부적합 사유는 미국에서는 표시기준 위반이며, 중국에선 기타를 제외하고 식품첨가물·미생물 기준 위반이 주요 부적합 사유로 조사됨

[한국산 수출식품 부적합 현황 : 식품유형별/국가별('18년~'20년)]

구분	미국	중국	일본	대만	EU	합계
가공식품	309 (37.0)	150 (18.0)	42 (5.0)	10 (1.2)	8 (1.0)	519 (62.2)
건강식품류	40 (4.8)	1(0.1)	0	0	1 (0.1)	42 (5.0)
농산물	59 (7.1)	0	7 (0.8)	50 (60.)	1 (0.1)	117 (14.0)
수산물	108 (12.9)	6(0.7)	16 (1.9)	0	17 (2.0)	147 (17.6)
기구용기 포장	0	0	5 (0.6)	1 (0.1)	0	6 (0.7)
기타	2 (0.2)	1(0.1)	1 (0.1)	0	0	4 (0.5)
합계	518 (62.0)	158 (18.9)	71 (8.5)	61 (7.3)	27 (3.2)	835 (100)

(단위 : 건, ()는 비율, %)

42) 식품안전정보원, 한국산 수출식품 부적합 동향 분석('18년~'20년)

2-2 식품유형별 부적합 현황

- '18년부터 '20년까지(3년간) 해관총서가 발표한 한국산 식품부적합 건수는 총 158건으로('17~'19) 490건 대비 67.8% 감소함
- 식품유형별로는 가공식품이 150건(부적합 사례의 95.0%)으로 가장 많았으며, 수산물 6건(3.8%), 건강식품류 1건(0.6%), 기타 1건(0.6%)순이었음
- 부적합 가공식품에는 수산물가공품 4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음료류 31건, 과자류·빵류 또는 떡류 26건, 기타 17건, 조미식품류 16건, 농산가공식품류 9건, 면류 4건 순이었음
 - 수산가공식품류 중에서는 김제품의 부적합 사례가 36건으로 76.6%에 이름
 - * 부적합원인 : 기타(17건), 미생물 관련(10건), 표시위반(8건), 식품첨가물(1건)

[연도별/식품유형별 부적합현황]

구분	'18년	'19년	'20년	합계
가공식품	90 (94.7)	24 (88.9)	36 (100)	150 (94.9)
건강식품류	1 (1.1)	0	0	1 (0.6)
농산물	0	0	0	0
수산물	3 (3.2)	3 (11.1)	0	6 (3.8)
기타	1 (1.1)	0	0	1 (0.6)
합계	95 (100)	27 (100)	36 (100)	158 (100)

(단위 : 건, ()는 연도별 식품 구분 비율, %)



[가공식품의 유형별 부적합현황]

구분	'17년~'19년	'18년~'20년
수산가공식품류	113(26.1)	47(31.3)
과자류·빵류·떡류	108(22.7)	26(17.3)
음료류	99(20.8)	31(20.7)
조미식품류	16(3.4)	16(10.7)
농산가공식품류	27(5.7)	9(6.0)
면류	24(5.1)	4(2.7)
기타	89(18.7)	17(11.3)
합계	476(100)	150(100)

(단위 : 건, ()는 연도별 구분 비율, %)

2-3 원인별 부적합 현황

- 부적합 원인 168건에서 기타(64건, 38.1%)를 제외하고 식품첨가물이 43건(25.6%)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미생물 30건(17.9%), 표시기준 위반 20건(11.9%) 순이었음

[수출식품 부적합 현황 : 연도별/부적합원인별]

구분	'18년	'19년	'20년	합계
식품첨가물	27 (27.6)	7 (25.0)	9 (21.4)	43 (25.6)
미생물	15 (15.3)	6 (21.4)	9 (21.4)	30 (17.9)
표시기준위반	8 (8.2)	2 (7.1)	10 (23.8)	20 (11.9)
중금속	0	0	2 (4.8)	2 (1.2)
품질규격	0	0	7 (16.7)	7 (4.2)
유해물질	1 (1.0)	0	1 (2.4)	2 (1.2)
기타	47 (48.0)	13 (46.4)	4 (9.5)	64 (38.1)
합계	98 (100)	28 (100)	42 (100)	168 (100)

(단위 : 건, ()는 연도별 구분 비율, %)



[수출식품 부적합 현황 : 연도별/미생물 부적합현황]

구분	'18년	'19년	'20년	합계
균락총수(세균수)기준초과	8 (53.3)	5 (83.3)	5 (55.6)	18 (60.0)
대장균군 양성	5 (33.3)	1 (16.7)	1 (11.1)	7 (23.3)
곰팡이 기준초과	2 (13.3)	0	3 (33.3)	5 (16.7)
합계	15 (100)	6 (100)	9 (100)	30 (100)

(단위 : 건, ()는 연도별 구분 비율, %)

[수출식품 부적합 현황 : 연도별/식품첨가물 사용기준 부적합]

구분	'18년	'19년	'20년	합계
비타민E	6 (22.2)	0	1 (11.1)	7 (16.3)
무수아황산	6 (22.2)	0	0	6 (14.0)
황산구리	4 (14.8)	0	0	4 (9.3)
젖산칼슘	0	3 (42.9)	0	3 (7.0)
5'-리보뉴클레오티드이나트륨	2 (7.4)	0	0	2 (4.7)
비타민B ₂	3 (11.1)	0	0	3 (7.0)
비타민D	0	0	2 (22.2)	2 (4.7)
엽산	0	0	2 (22.2)	2 (4.7)
히알루론산나트륨	0	0	1 (11.1)	1 (2.3)
이산화티타늄	1 (3.7)	0	0	1 (2.3)
카카오 껍질 색소	1 (3.7)	0	0	1 (2.3)
황산알루미늄칼륨	1 (3.7)	0	0	1 (2.3)
소비톨액(소비톨 시럽)	0	0	1 (11.1)	1 (2.3)
비타민B ₁ 라우릴황산염	0	2 (28.6)	0	2 (4.7)



구분	'18년	'19년	'20년	합계
심황색소	1 (3.7)	0	0	1 (2.3)
알긴산프로필렌글리콜	1 (3.7)	0	0	1 (2.3)
이초산나트륨	1 (3.7)	0	0	1 (2.3)
인산 및 인삼염	0	1 (14.3)	0	1 (2.3)
자당지방산에스테르	0	1 (14.3)	0	1(2.3)
홍화황색소	0	0	1 (11.1)	1 (2.3)
나트륨 철 EDTA	0	0	1 (11.1)	1 (2.3)
합계	27 (100)	7 (100)	9 (100)	43 (100)

(단위 : 건, ()는 연도별 구분 비율, %)



[주요부적합 세부 현황 및 기준규격('18년)]

품목	부적합 내용	기준규격
김	미생물 균락총수 기준치 초과	즉석 해산품 균락총수 최대허용치 : 30,000CFU/g (검사방법 : GB 4789.2) [출처]: GB 7101-2003
인스턴트면 면류 (라면 이외 기타)	영양 강화제 비타민B ₂ 사용범위 초과	편의식품 비타민B2 최대허용치 : 0.05g/kg [출처]: GB 14880-2012
소스, 소스 제조용 조제품 (마요네즈, 인스턴트 카레, 혼합조미료, 메주 이외 기타)	서류/수산물 공식 검역검증증서 미비	- 상품 수입 및 검역 검증시, 포함상품의 품질증서, 산지 증명서, 안전위생증명서, 살충제 및 농약, 첨가제사용 증명서 등을 준비해야 함 상품수입 신고 시에는 위의 서류와 함께 거래서류 및 선적서류를 첨부하여 검증검역 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해당 사항에 대한 합격을 받아야 함 [출처]: 국외식품생산기업 등록관리규정
김	서류/수산물 공식 검역검증증서 미비	- 상품 수입 및 검역 검증시, 포함상품의 품질증서, 산지 증명서, 안전위생증명서, 살충제 및 농약, 첨가제사용 증명서 등을 준비해야 함 상품수입 신고 시에는 위의 서류와 함께 거래서류 및 선적서류를 첨부하여 검증검역 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해당 사항에 대한 합격을 받아야 함 [출처]: 국외식품생산기업 등록관리규정
갑오징어 (밀폐용기에 넣은 것/ 조제 및 보존처리)	서류/수산물 공식 검역검증증서 미비	- 상품 수입 및 검역 검증시, 포함상품의 품질증서, 산지 증명서, 안전위생증명서, 살충제 및 농약, 첨가제사용 증명서 등을 준비해야 함 상품수입 신고 시에는 위의 서류와 함께 거래서류 및 선적서류를 첨부하여 검증검역 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해당 사항에 대한 합격을 받아야 함 [출처]: 국외식품생산기업 등록관리규정
어류조제, 저장처리 제품(생선 페이스트, 마리네이드, 소시지, 생선묵, 게맛의 것 제외)	서류/수산물 공식 검역검증증서 미비	- 상품 수입 및 검역 검증시, 포함상품의 품질증서, 산지 증명서, 안전위생증명서, 살충제 및 농약, 첨가제사용 증명서 등을 준비해야 함 상품수입 신고 시에는 위의 서류와 함께 거래 서류 및 선적서류를 첨부하여 검증검역 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해당 사항에 대한 합격을 받아야 함 [출처]: 국외식품생산기업 등록관리규정
조제품 기타	서류/수산물 공식 검역검증증서 미비	- 상품 수입 및 검역 검증시, 포함상품의 품질증서, 산지 증명서, 안전위생증명서, 살충제 및 농약, 첨가제사용 증명서 등을 준비해야 함 상품수입 신고 시에는 위의 서류와 함께 거래 서류 및 선적서류를 첨부하여 검증검역 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해당 사항에 대한 합격을 받아야 함 [출처]: 국외식품생산기업 등록관리규정



품목	부적합 내용	기준규격
수프 · 브로드와 수프 · 브로드용 조제품(기타)	서류/수산물 공식 검역검증증서 미비	- 상품 수입 및 검역 검증시, 포함상품의 품질증서, 산지 증명서, 안전위생증명서, 살충제 및 농약, 첨가제사용 증명서 등을 준비해야 함 상품수입 신고 시에는 위의 서류와 함께 거래서류 및 선적서류를 첨부하여 검증검역 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해당 사항에 대한 합격을 받아야 함 [출처]: 국외식품생산기업 등록관리규정
조제품 기타	미생물 균락총수 기준치 초과	살모넬라균은 $n=5$ $c=0$ $m=0$ 을 준수 (검사방법 GB 4789.4) [출처]: GB 29921-2013
조제품 기타	서류/인증서류 미비	- 상품 수입 및 검역 검증시, 포함상품의 품질증서, 산지 증명서, 안전위생증명서, 살충제 및 농약, 첨가제사용 증명서 등을 준비해야 함 상품수입 신고 시에는 위의 서류와 함께 거래서류 및 선적서류를 첨부하여 검증검역 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해당 사항에 대한 합격을 받아야 함 [출처]: 국외식품생산기업 등록관리규정
조제품 기타	첨가물 사용기준 초과	식품첨가물 카카오 껍질 색소(Cocoa husk pigment(可可 壳色)) $\leq 0.9\text{g/kg}$, 황산알루미늄칼륨(Aluminium Potassium Sulfate) 사용범위 초과 [출처]: GB 2760-2014
인스턴트면 면류(라면 이외 기타)	서류/인증서류 미비	- 상품 수입 및 검역 검증시, 포함상품의 품질 증서, 산지 증명서, 안전위생증명서, 살충제 및 농약, 첨가제사용 증명서 등을 준비해야 함. 상품수입 신고 시에는 위의 서류와 함께 거래 서류 및 선적서류를 첨부하여 검증검역 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해당 사항에 대한 합격을 받아야 함 [출처]: 국외식품생산기업 등록관리규정
아마인(파쇄여부 불문)	서류/인증서류 미비	- 상품 수입 및 검역 검증시, 포함상품의 품질증서, 산지 증명서, 안전위생증명서, 살충제 및 농약, 첨가제사용 증명서 등을 준비해야 함 상품수입 신고 시에는 위의 서류와 함께 거래서류 및 선적서류를 첨부하여 검증검역 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해당 사항에 대한 합격을 받아야 함 [출처]: 국외식품생산기업 등록관리규정
소스, 소스 제조용 조제품(마요네즈, 인스턴트 카레, 혼합조미료, 메주 이외 기타)	서류/인증서류 미비	- 상품 수입 및 검역 검증시, 포함상품의 품질증서, 산지 증명서, 안전위생증명서, 살충제 및 농약, 첨가제사용 증명서 등을 준비해야 함 상품수입 신고 시에는 위의 서류와 함께 거래서류 및 선적서류를 첨부하여 검증검역 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해당 사항에 대한 합격을 받아야 함 [출처]: 국외식품생산기업 등록관리규정
설탕과자류 (추잉검, 감초엑스, 캔디류 이외 기타)	식품첨가물 사용량 초과	조제품의 비타민E 최대허용치는 생산수요에 따른 적량사용



품목	부적합 내용	기준규격
물(설탕, 감미료, 향미 첨가/착색한 것)	비타민B ₂ 사용범위 초과	GB 14880-2012 준수 필요
견과류 조제품(땅콩, 밤, 코코넛 이외 기타/조제 및 보존처리)	곰팡이 기준치 초과	견과류 내 곰팡이 최대허용치는 25CFU/g임
어류조제, 저장처리 제품(생선 페이스트, 마리네이드, 소시지, 생선묵, 게맛의 것 제외)	서류/인증서류 미비	- 상품 수입 및 검역 검증 시, 포함상품의 품질증서, 산지 증명서, 안전위생증명서, 살충제 및 농약, 첨가제사용 증명서 등을 준비해야 함 - 상품수입 신고 시에는 위의 서류와 함께 거래서류 및 선적서류를 첨부하여 검증검역 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해당 사항에 대한 합격을 받아야 함 [출처]: 국외식품생산기업 등록관리규정
기타(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 주스와 채소 주스는 제외)	서류/인증서류 미비	- 상품 수입 및 검역 검증 시, 포함상품의 품질증서, 산지 증명서, 안전위생증명서, 살충제 및 농약, 첨가제사용 증명서 등을 준비해야 함 - 상품수입 신고 시에는 위의 서류와 함께 거래서류 및 선적서류를 첨부하여 검증검역 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해당 사항에 대한 합격을 받아야 함 [출처]: 국외식품생산기업 등록관리규정
물(설탕, 감미료, 향미 첨가/착색한 것)	서류/인증서류 미비	- 상품 수입 및 검역 검증 시, 포함상품의 품질증서, 산지 증명서, 안전위생증명서, 살충제 및 농약, 첨가제사용 증명서 등을 준비해야 함 - 상품수입 신고 시에는 위의 서류와 함께 거래서류 및 선적서류를 첨부하여 검증검역 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해당 사항에 대한 합격을 받아야 함 [출처]: 국외식품생산기업 등록관리규정
소스, 소스 제조용 조제품(마요네즈, 인스턴트 카레, 혼합조미료, 메주 이외 기타)	식품첨가물 사용량 초과	이산화황(SO ₂) ≤0.05 이내
스위트 비스킷	비타민E 사용범위 초과	GB 14880-2012 준수
조제식료품(기타)	식품첨가물 사용량 초과	이산화황(SO ₂) ≤0.05 이내



[주요부적합 현황 및 기준규격('19년)]

품목	부적합 내용	기준규격
김	미생물 균락총수 기준치 초과	균락총수 기준치 초과, n=5, c=2, m=30,000, M=100,000CFU/g, GB 19643-2016 규정 준수
김	서류/인증서류 미비	- 상품 수입 및 검역 검증시, 포함상품의 품질증서, 산지 증명서, 안전위생증명서, 살충제 및 농약, 첨가제사용 증명서 등을 준비해야 함. 상품수입 신고 시에는 위의 서류와 함께 거래서류 선적서류를 첨부하여 검증검역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해당 사항에 대한 합격을 받아야 함 [출처]: 국외식품생산기업 등록관리규정
기타(신선·냉장/ 그 밖의 어류/ 제0302.91호부터 제0302.99호까지의 식용 어류 설육은 제외)	수입허가를 못받는 품목임	한국산 병어는 중국으로 수출할 수 없는 품목이므로 통관 거부됨 [출처]: 해관에서 발표한 중국 진입 허가 식품 명단
해삼(건조한 것)	서류/화물증명 불일치	수출입화물의 선적인은 해관에 사실대로 보고해야 함 [출처]: 중화인민공화국해관법 24조
삼치(스콰로모로리스종/ 냉동)	서류/화물증명 불일치	수출입화물의 선적인은 해관에 사실대로 보고해야 함 [출처]: 중화인민공화국해관법 24조
게살(냉동)	서류/화물증명 불일치	수출입화물의 선적인은 해관에 사실대로 보고해야 함 [출처]: 중화인민공화국해관법 24조
매주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초과	식품첨가물 비타민B ₁ 라우릴황산염(Thiamine dilaurylsulfate) 사용범위 초과, 해당 첨가물은 검출되어서는 안됨
조제품 기타	서류/상품증서 불합격	중국으로 수출할 식품, 첨가물이 국가수출입검역부서가 요구하는 합격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됨 원문:进口的食品、食品添加剂应当按照国家出入境检验检疫部门的要求随附合格证明材料 [출처]: 중국식품안전법 제 84조
곡류조제품(떡창, 볶은 것, 콘 플레이크, 콘 칩, 튀긴 쌀 이외 기타)	식품첨가물 사용량 초과	식품첨가물 수크로오스 지방산에스테르(Sucrose Fatty Acid Esters) 사용량 초과, 과자에 수크로오스 지방산에스테르(Sucrose Fatty Acid Esters)가 검출되어서는 안됨 [출처]: GB 2760-2014
속을 채운 파스타 (조제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미생물 균락총수 기준치 초과	떡 균락총수 최대허용치 100,000CFU/g [출처]: GB 7100-2015



품목	부적합 내용	기준규격
속을 채운 파스타 (조제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미생물 대장균 기준치 초과	떡 대장균 최대허용치 100CFU/g [출처]: GB 7100-2015
설탕과자류 (추잉검, 감초엑스, 캔디류 이외 기타)	서류/인증서류 미비	- 상품 수입 및 검역 검증시, 포함상품의 품질증서, 산지 증명서, 안전위생증명서, 살충제 및 농약, 첨가제사용 증명서 등을 준비해야 함. 상품수입 신고 시에는 위의 서류와 함께 거래서류 선적서류를 첨부하여 검증검역 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해당 사항에 대한 합격을 받아야 함 [출처]: 국외식품생산기업 등록관리규정
다랭이(기름담금)	식품첨가물 인산 및 인산염 사용량 초과	여류 통조림 제품 인산 최대허용치 1.0g/kg (지침: GB 2760-2014 p56) [출처]: GB 2760-2014
고구마(건조)	기타/검역검증 승인을 얻지 못함	수입 식품 해당국가 검역당국에 검역허가증명서를 받아야 함 [출처]: 식품안전법 제92조
김	미생물 균락총수 기준치 초과	n=5, c=2, m=30,000, M=100,000CFU/g [출처]: GB 19643-2016
소스, 소스 제조용 조제품(마요네즈, 인스턴트 카레, 혼합조미료, 메주 이외 기타)	서류/인증서류 미비	- 상품 수입 및 검역 검증시, 포함상품의 품질증서, 산지 증명서, 안전위생증명서, 살충제 및 농약, 첨가제사용 증명서 등을 준비해야 함. 상품수입 신고 시에는 위의 서류와 함께 거래서류 선적서류를 첨부하여 검증검역 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해당 사항에 대한 합격을 받아야 함 [출처]: 국외식품생산기업 등록관리규정
기타(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 주스와 채소 주스는 제외)	식품첨가물 젖산칼슘 사용범위 초과	젖산칼슘 사용범위 21.6g/kg 이내



[주요부적합 현황 및 기준규격('20년)]

품목	부적합 내용	기준규격
기타 (식용/동물성 생식품)	서류/ 인증서류 미비	- 상품 수입 및 검역 검증시, 포함상품의 품질증서, 산지 증명서, 안전위생증명서, 살충제 및 농약, 첨가제사용 증명서 등을 준비해야 함 상품수입 신고 시에는 위의 서류와 함께 거래서류 및 선적서류를 첨부하여 검증검역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해당 사항에 대한 합격을 받아야 함 [출처]: 국외식품생산기업 등록관리규정
소스, 소스 제조용 조제품(마요네즈, 인스턴트 카레, 혼합조미료, 메주 이외 기타)	비소 사용범위 초과	검출되어서는 안됨 [출처]: GB 31644-2018, GB 2760-2014
김	균락총수 기준치 초과	최대허용치 100,000CFU/g [출처]: GB 19643-2016
비스킷, 쿠키 및 크레커	식품첨가물 홍화황색소 사용범위초과	최대허용치 0.5g/kg [출처]: GB 2760-2014
콘 플레이크	영양강화제 비타민D와 엽산 사용범위 초과	비타민D 사용범위 12.5 μ g/kg~37.5 μ g/kg 첨가물 사용표준(GB 2760-2014) 엽산 사용범위 1000 μ g/kg~2500 μ g/kg [출처]: GB 2760-2014
조제품 기타	식품첨가물 히알루론산나트륨 검출	검출되어서는 안됨 [출처]: GB 2760-2014
식염	식품첨가물 염화 나트륨 사용범위 초과	소금의 염화나트륨 최대 허용치 97g/100g [출처]: GB 2721-2015
겨자 조제품	영양강화제 Ethylenediamine tetraacetic Acid Ferric Sodium Salt (乙二胺四乙酸铁 纳) 사용 범위 초과	검출되어서는 안됨 [출처]: GB 2760-2014
김(Laver)	식품첨가물 솔비톨 및 비타민E 사용범위 초과	검출되어서는 안됨 [출처]: GB 2760-2014



품목	부적합 내용	기준규격
인스턴트면 면류 (라면 이외 기타)	균락총수 기준치 초과	균락총수 최대 허용치 100,000CFU/g [출처]: GB 17400-2015
조제품 기타	곰팡이 기준치 초과	고체음료 곰팡이 최대 허용치 50CFU/g [출처]: GB 7100-2015
조제품기타	균락총수 기준치 초과	고체음료 균락총수 최대 허용치 50,000CFU/g [출처]: GB 7100-2015
조제품기타	대장균 기준치 초과	고체음료 대장균 최대허용치 100CFU/g [출처]: GB 7100-2015
조제품기타	납기준치 초과	고체음료 납 최대 허용치는 1.0mg/kg [출처]: GB 2762-2017
수프·브로드와 수프·브로드용 조제품(기타)	서류/인증서류 미비	- 상품 수입 및 검역 검증시, 포함상품의 품질증서, 산지 증명서, 안전위생증명서, 살충제 및 농약, 첨가제사용 증명서 등을 준비해야 함 상품수입 신고 시에는 위의 서류와 함께 거래서류 및 선적서류를 첨부하여 검증검역 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해당 사항에 대한 합격을 받아야 함 [출처]: 국외식품생산기업 등록관리규정
곡류제조품	서류/인증서류 미비	- 상품 수입 및 검역 검증시, 포함상품의 품질증서, 산지 증명서, 안전위생증명서, 살충제 및 농약, 첨가제사용 증명서 등을 준비해야함. 상품수입 신고 시에는 위의 서류와 함께 거래서류 및 선적서류를 첨부하여 검증검역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해당 사항에 대한 합격을 받아야 함 [출처]: 국외식품생산기업 등록관리규정
조제품 기타	서류/인증서류 미비	- 상품 수입 및 검역 검증시, 포함상품의 품질증서, 산지 증명서, 안전위생증명서, 살충제 및 농약, 첨가제사용 증명서 등을 준비해야 함 상품수입 신고 시에는 위의 서류와 함께 거래 서류 및 선적서류를 첨부하여 검증검역 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해당 사항에 대한 합격을 받아야 함 [출처]: 국외식품생산기업 등록관리규정



2-4 중국 수입식품 부적합 공개 현황

○ 중국 해관총서 수출입식품안전국에서 월단위로 공개⁴³⁾

2021년9월7일 星期二

海关总署 下载中心 用户空间 无障碍 繁體版 English

中华人民共和国海关总署
进出口食品安全局

请输入搜索关键字

热词: 减免税 | 海关管理 | 货运监管 | 行政监管

首页 | 党群信息 | 工作信息 | 政策法规 | 信息服务 | 办事服务

您的位置: 首页 > 信息服务 > 风险预警

信息服务

有关标准

检验检疫要求

风险预警

业务信息

未准入境的食品信息

- 关于加强法国输华肠衣检验检疫监管的警示通报 2021-09-01
- 2021年7月全国未准入境食品化妆品信息 2021-08-17
- 2021年6月全国未准入境食品化妆品信息 2021-07-16
- 2021年5月全国未准入境食品化妆品信息 2021-06-17
- 2021年4月全国未准入境食品化妆品信息 2021-05-21
- 2021年3月全国未准入境食品化妆品信息 2021-04-20
- 2021年2月全国未准入境食品化妆品信息 2021-03-29

[중국 수입식품 부적합 공개 현황]

附件1

郑重说明: 本表所列未准入境的食品在进口检验时不符合食品安全国家标准或相关法律法规要求, 均已依法做退货或销毁处理。

2021年7月未准入境的食品信息

序号	HS编码	检验检疫编号	产品名称	产地	生产企业信息	进口商信息	进口商备案号	重量(千克)	未准入境的事实	进境口岸
1	1901200000	010120211000299566-1	意大利妙厨三文尼娜面包预拌粉	意大利	MOLINO ROSSETTO S. P. A	北京纵坐标国际贸易有限公司	1112000594	100	未获检验检疫准入	北京
2	0402210000	010120211000301310-1	全脂调制脱奶粉	哈萨克斯坦	EURASIA INVEST LTD.	宁波典极国际贸易有限公司	3821000031	205	菌落总数超标	北京
3	1704900000	010120211000353288-1	NOB红宝石压片糖果	中国香港	六宝健康产品有限公司	江西邦泰绿色生物合成生态产业园发展有限公司	3621000021	71.952	检出非食用添加物β-烟酰胺单核苷酸	北京
4	1008509000	010120211000377942-1	藜麦	秘鲁	ANDES ALIMENTOS & BEBIDAS S. A. C.	沃斯藏(北京)贸易有限公司	111211130000076	0.4	未按要求提供证书或合格证明材料	北京
5	1008509000	010120211000377942-2	藜麦	秘鲁	ANDES ALIMENTOS & BEBIDAS S. A. C.	沃斯藏(北京)贸易有限公司	111211130000076	0.4	未按要求提供证书或合格证明材料	北京
6	1901109000	011820211000014550-2	辅食小桶小米胚芽米精华(婴幼儿谷类辅助食品)	中国台湾	川岳生物科技股份有限公司	北京台宏康国际贸易有限公司	111503020000001	2400	维生素E含量不符合国家标准要求	北京
7	2106909090	1210000000067570-1	桃子葡萄柚味果冻	日本	ORIHIO CO., LTD	大连康康国际贸易有限公司	2120000016	1224	未获检验检疫准入	大连
8	2101120000	121000001709568-7	G7三合一速溶咖啡	越南	BRANCH OF TRUNG NGUYEN GROUP	辽宁越尚贸易有限公司	2120000455	4896	霉菌超标	大连
9	2202990099	351520211151000594-4	统一茶里王日式无糖绿茶	中国台湾	统一企业股份有限公司	平潭连顺进出口贸易有限公司	3515000415	720	标签不合格	福州
10	2006002000	351520211151002218-26	巧益甘草开味黄橄榄	中国台湾	凯岳贸易有限公司	平潭连顺进出口贸易有限公司	3515000415	39	超限量使用食品添加剂柠檬黄	福州

[중국 수입식품 부적합 사례 공표(2021.7월분)]

43) 중국 해관총서 수출입식품안전국 (<http://jckspj.customs.gov.cn/spj/zwgk75/2706876/index.html>)

2-5 부적합 수입식품에 대한 조치⁴⁴⁾

- 수입식품이 검사검역에서 불합격한 경우, 해관은 검사검역처리통지서를 발급함
 - 안전, 건강, 환경보호와 관련된 항목에서 불합격한 경우, 주관 해관은 당사자에게 폐기를 명령하거나 반송처리통지서를 발급하여 수입업체가 반송 절차를 밟도록 함
 - 기타 항목에서 불합격한 경우, 주관 해관의 감독 하에 기술적 처리를 진행할 수 있고 재검사에서 합격한 후에야 판매, 사용할 수 있음

2-6 부적합 동향 분석⁴⁵⁾

- 부적합 조치된 한국산 식품은 대부분 수산가공식품류 및 음료류 등의 가공식품으로 ‘서류미비 등의 기타 사유’ 및 ‘식품첨가물사용기준 위반’, ‘미생물(세균수) 기준 위반’이 주요 원인이었음
 - 수산가공식품 김제품의 경우 ‘서류 미비 등의 기타 사유’ 및 ‘세균수 기준 위반’으로 인한 부적합 사례가 많았으며, ‘20년에는 표시기준 위반으로 인한 부적합 사례도 발생함
 - 중국정부(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지속적으로 식품안전 국가표준을 제정 및 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관련 규정 준수가 필요함
 - 특히 수입식품을 관리하는 해관총서가 수입식품에 대해 요구되는 ‘수입식품 해외 생산기업 등록 관리 규정’ 및 ‘수출입 식품 안전관리 방법’을 ’21년 4월 개정 발표하여 ’22년 1월 1일부터 시행예정이므로 등록 방법 및 준비 사항 등에 대한 철저한 준비 필요함

44) 식품안전정보원, 해외 주요국 수입식품 안전관리 정책(2020)

45) 식품안전정보원, 한국산 수출식품 부적합 동향 분석(18년~20년)



2-7 주요 통관거부사례 지침 가이드⁴⁶⁾

제품	웨하스
통관거부사유	식품첨가물 홍화황색소(carthamins yellow) 사용범위 초과
지침	국가 식품 안전 표준 - 식품첨가물(GB 2760-2014)
지침내용	- 분류 : 팽화식품 - 기준 : 사용량초과 ※ 국가 식품 안전 표준 - 식품첨가물(GB 2760-2014) 표A.1 식품첨가물 사용 허가 품종, 사용범위 및 최대 사용량 또는 잔류량 - 식품유형 : 팽화식품 - 식품첨가물 / 최대사용량 : 홍화황색소 / 0.5g/kg

- 한국 지침 비교

항목	중국	한국
제품	팽화식품	과자류
홍화황색소 사용기준	05.g/kg	검출되어서는 안됨

46) 통관거부사례지침가이드-중국편

(https://www.kati.net/board/trendReportView.do?board_seq=92895&menu_dept2=41)



제품	프로바이오틱 고형음료
통관거부사유	식품첨가물 히알루론산나트륨 사용범위 초과
지침	국가 식품 안전 표준 - 식품첨가물(GB 2760-2014)
지침내용	- 분류 : 고체음료 - 기준 : 검출되어서는 안됨 ※ 국가 식품 안전 표준 - 식품첨가물(GB 2760-2014) 표 A.1 식품첨가물 사용 허가 품종, 사용범위 및 최대 사용량 또는 잔류량 ‘히알루론산나트륨’은 사용 가능한 식품첨가물이 아니므로, 검출되어서는 안됨

- 한국 지침 비교

항목	중국	한국
제품	고체음료	기타음료
히알루론산나트륨 사용기준	해당 첨가물은 사용 가능한 식품첨가물이 아니므로, 검출 되어서는 안됨	검출되어서는 안됨



제품	고체음료
통관거부사유	대장균 기준치 균락총수 기준치 초과 곰팡이 기준치 초과
지침	국가 식품 안전 표준 - 음료(GB 7101-2015)

- 지침내용
- 분류 : 고체음료
 - 기준 : 대장균·균락총수·곰팡이 기준치 초과

표3 미생물 제한량

항목	샘플방안 ^a 및 제한량				검사방법
	n	c	m	M	
대장균군/(CFU/g)	5	2	10	10 ²	GB 4789.3 평판계량법
균락총수/(CFU/g)	5	2	10 ³	5×10 ⁴	GB 4789.2
곰팡이군/(CFU/g)	50				GB 4789.15

a 샘플 수집 및 처리는 GB 4789.1과 GB/T 4789.1에 따라 진행함

- 한국 지침 비교

항목	중국	한국
제품	고체음료	기타음료
대장균 기준치	100CFU/g	10CFU/g
균락총수 기준치	50,000CFU/g	검출되어서는 안 됨
곰팡이 기준치	50CFU/g	검출되어서는 안 됨



제품		딸기맛 요거트 복숭아맛 요거트 키위맛 요거트									
통관거부 사유	라벨 불합격										
지침	국가 식품안전 표준 - 사전포장식품 영양 라벨 통칙(GB 28050-2011)										
지침내용	- 분류 : 낙농품 - 기준 : 라벨링 불합격 (지방 최대 허용량은 0.5g이며 단위 표기 방법은 '克(g)' 임) ※ 국가 식품 안전 표준 - 사전포장식품 영양 라벨 통칙(GB 28050-2011) 표1 열량, 영양성분 명칭, 순서, 단위, 반올림 단위 및 '0' 경계 <table><tr><th>열량, 영양성분의 명칭 및 순서</th><th>단위</th><th>반올림 단위</th><th>'0' 경계치 (100g당 혹은 100ml당)</th></tr><tr><td>지방</td><td>그램(g)</td><td>0.1</td><td>≤0.5g</td></tr></table>			열량, 영양성분의 명칭 및 순서	단위	반올림 단위	'0' 경계치 (100g당 혹은 100ml당)	지방	그램(g)	0.1	≤0.5g
열량, 영양성분의 명칭 및 순서	단위	반올림 단위	'0' 경계치 (100g당 혹은 100ml당)								
지방	그램(g)	0.1	≤0.5g								



제품	김치라면(튀김)
통관거부사유	균락총수 기준치 초과
지침	국가 식품안전 표준 - 라면(GB 17400-2015)
지침내용	- 분류 : 라면 - 기준 : 균락총수 최대 허용치는 100,000CFU/g임

표3 미생물 제한량

항목	샘플방안 ^a 및 제한량				검사방법
	n	c	m	M	
균락총수/(CFU/g)	5	2	10 ⁴	10 ⁵	GB 4789.2

a 샘플 수집 및 처리는 GB 4789.1에 따라 진행함

b 라면의 튀긴 면과 스프의 혼합검사에만 적용함

- 한국 지침 비교

항목	중국	한국
제품	라면	유탕면
균락총수 기준치	100,000CFU/g	검출되어서는 안됨



제품	허니연겨자
통관거부사유	영양강화제 Ethylenediaminetetraacetic Acid Ferric Sodium Salt 사용범위 초과
지침	국가 식품 안전 표준 - 식품첨가물(GB 2760-2014)
지침내용	- 분류 : 향신료 - 기준 : 검출되어서는 안됨 ※ 국가 식품안전 표준 - 식품첨가물(GB 2760-2014) 표A.1 식품첨가물 사용 허가 품종, 사용 범위 및 최대 사용량 또는 잔류량 'Ethylenediaminetetraacetic Acid Ferric Sodium Salt'는 사용 가능한 식품 첨가물이 아니므로, 검출되어서는 안됨

- 한국 지침 비교

항목	중국	한국
제품	향신료	향신료가공품
Ethylenediaminetetraacetic Acid Ferric Sodium Salt 기준치	검출되어서는 안됨	검출되어서는 안됨



제품	떡볶이
통관거부사유	비소 사용범위 초과
지침	국가 식품안전 표준 - 식품첨가물(GB 2760-2014)
지침내용	- 분류 : 혼합 조미료 - 기준 : 검출되어서는 안됨 ※ 국가 식품안전 표준 - 식품첨가물(GB 2760-2014) 표A.1 식품첨가물 사용 허가 품종, 사용 범위 및 최대 사용량 또는 잔류량 ‘비소’는 사용 가능한 식품첨가물이 아니므로, 검출되어서는 안됨

- 한국 지침 비교

항목	중국	한국
제품	혼합 조미료	소스
비소 사용기준	검출되어서는 안됨	검출되어서는 안됨

제품	김 야채맛
통관거부사유	식품첨가물 솔비톨 및 비타민E 사용범위 초과
지침	국가 식품안전 표준 - 식품첨가물(GB 2760-2014)
지침내용	- 분류 : 해조류 - 기준 : 검출되어서는 안됨 ※ 국가 식품안전 표준 - 식품첨가물(GB 2760-2014) 표A.1 식품첨가물 사용 허가 품종, 사용 범위 및 최대 사용량 또는 잔류량 ‘솔비톨’과 ‘비타민E’는 사용 가능한 식품첨가물이나, 해당 제품은 해당 첨가물의 사용 대상이 아니므로, 솔비톨과 비타민 E는 검출되어서는 안됨

- 한국 지침 비교

항목	중국	한국
제품	해조류	조미김
솔비톨 사용기준	해당 식품첨가물 기준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검출되어서는 안 됨	해당 식품첨가물 기준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검출되어서는 안됨
비타민E 사용기준	해당 식품첨가물 기준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검출되어서는 안됨	물리적, 영양학적 또는 기타 기술적 효과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량으로 사용함



IV

식품 수출 안내서 중국편

표시제도

1. 용어 정의

식품 등 표시와 관련하여 사전포장식품 라벨 통칙(GB 7718-2011), 사전포장식품 영양 라벨 통칙(GB 28050-2011), 사전포장 특수식이용도 식품 라벨 통칙(GB 13432-2013) 등에서 규정하며, 이에 적용되는 용어를 정의하자면 아래와 같다.

○ 사전포장식품

사전 정량 포장 또는 포장 재료 및 용기에 제조한 식품으로, 사전 정량 포장 및 사전 정량으로 포장 재료와 용기에 제조된 것, 일정량 범위 내에서 통일된 질량 및 체적 표시를 갖춘 식품을 포함한다.

○ 식품 라벨

식품 포장의 문구, 그림, 부호 및 모든 설명 내용을 가리킨다.

○ 배합 원료

식품을 제조 또는 가공 시 사용하는 것으로, 제품의 모든 물질에 존재(변성 형식으로 존재하는 것도 포함)하며 식품첨가물도 포함된다.

○ 생산일자(제조일자)

최종 완제품이 된 날짜이며, 포장된 날짜도 포함한다. 즉 식품을 포장재 또는 용기에 넣어 최종 판매 단위로 완성된 날짜이다.

○ 품질 보증 기간

사전포장식품이 라벨 중 명시하고 있는 보관 조건 하에서 품질을 유지하는 기한이다. 이 기한 내에서 최적화된 제품을 판매할 수 있으며 라벨에서 설명할 필요가 없거나 설명되어 있는 특유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다.

○ 규격

동일한 사전포장에 여러 개의 사전포장식품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내용량 및 포함되어 있는 개수 관계에 대한 설명이다.

○ 주요표시면

사전포장식품 포장재 또는 포장 용기에서 쉽게 눈에 띄는 면을 말한다.

○ 영양 라벨

사전포장식품라벨에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식품영양정보와 특성의 설명이며 영양 성분표, 영양 표기 및 영양성분기능 표기를 포함한다. 영양 라벨은 사전포장식품라벨의 일부분이다.



○ 영양소

식품 중에 특정한 생리역할을 갖추어 기체생장, 발육, 활동, 번식 및 정상적 대사의 유지에 필요한 물질을 말하며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미네랄 및 비타민을 포함한다.

○ 영양성분

식품 중의 영양소 및 영양소 이외의 영양과(혹은) 생리기능을 갖추는 기타 식물 성분을 가리킨다.

○ 핵심영양소

영양 라벨 중의 핵심영양소는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과 나트륨을 포함한다.

○ 영양성분표

식품영양성분명칭, 함량 및 그 영양소 참고치에 차지한 백분비를 표기하는 규범한 표를 가리킨다.

○ 영양소기준치(NRV)

식품 영양 라벨만 적용하여 식품영양성분 함량의 참고치를 비교하는 데에 적용된다.

○ 영양표기

식품영양특성에 대한 묘사와 표기를 가리키며, 예를 들어 열량 수준, 단백질 함량 수준을 말한다. 영양표기는 함량표기와 비교표기를 포함한다.

○ 함량표기

식품 중 열량 혹은 영양성분 함량수준에 관한 표기이다. 표기용어는 ‘고’, ‘저’ 혹은 ‘없음’ 등을 포함한다.

○ 비교표기

소비자가 알고 있는 같은 종류인 식품의 영양성분함량 혹은 열량을 비교한 후의 표기이다. 표기용어는 ‘증가’ 혹은 ‘감소’ 등을 포함한다.

○ 영양성분기능표기

한 영양성분이 인체 정상적 성장, 발육 및 정상생리기능 등 유지할 수 있는 역할의 표기이다.

○ 반올림 간격

반올림 최소 수치의 단위이다.

○ 식용 가능 부분

사전포장식품의 순함량은 식용 불가한 부분을 제거하여 남은 부분을 말한다.

2. 식품의 표시기준⁴⁷⁾

- ☞ 사전포장식품 라벨 통칙(GB 7718-2011) 부록5 참조
 사전포장식품 영양 라벨 통칙(GB 28050-2011) 부록6 참조
 사전포장 특수식이용도식품 라벨 통칙(GB 13432-2013) 부록7 참조

2-1 사전포장식품의 표시기준

가) 요구사항

- 식품과 식품첨가물의 라벨, 설명서에는 허위·과장 내용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고, 질병 예방·치료 기능이 언급되지 않아야 한다.
- 생산·경영자는 본인이 제공한 라벨·설명서의 모든 내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 중국으로 수출하는 사전포장식품은 중문 라벨이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 규정상 설명서가 요구되는 제품은 중문설명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 식품의 원산지와 중국내 대리업체의 명칭, 주소, 연락방식이 명시되어야 한다.

사전포장식품 표시 요구사항

구분	필수/선택	적용 기준
제품명 원산지 내용량/규격 배합표 생산일자/유통기한 보관방법 수입자 혹은 판매정보 제품 유형 신식품원료 사용법, 첨가 제한량 기타 규정된 기재내용	필수기재	〈식품안전법〉 〈수출입사전포장식품라벨검사감독 관리규정〉 〈수출입식품안전관리방법〉 〈사전포장식품 라벨 통칙〉 (GB 7718-2011) 〈사전포장식품 영양 라벨 통칙〉 (GB 28050-2011)
영양성분표	필수기재 (일부 유형 생략가능)	
섭취방법	선택기재 (일부 유형 필수기재)	
알레르기 경고문구	선택기재 (일부 유형 필수기재)	

47) KATI 중국 라벨링 제도 보고서



나) 주의사항

중국에서는 일부 품목에 대하여 품질 관리 및 안전 이슈를 최적화하기 위해 강화공고 등을 발표하며, 최근 주요 강화공고는 아래와 같다.

〈고체음료〉(강화공고)⁴⁸⁾

- 제품명 부근에 ‘고체음료’라는 명칭을 큰 글자로 표기해야 한다.
- ‘해당 제품은 특수의학용 조제식품, 영유아 조제식품, 보건식품 등 특수식품 대체 불가’라는 경고 문구를 표기해야 한다.
 - 경고 문구 표시 면적 : 전체면의 20%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
 - 경고 문구 표시 글씨체 : 고딕체를 사용하여 표기해야 한다.
- 고체음료의 라벨, 설명서, 홍보자료의 문자나 이미지에 미성년자, 노인, 환자 등에게 적합하다는 것을 암시하거나 강조해서는 안 된다.
- 생산 공정, 원료의 명칭으로 질병 예방, 치료·보건 기능 등과 연관지어 암시하거나 강조해서는 안 된다.

〈간장〉(강화공고)⁴⁹⁾

- 눈에 띄는 위치에 ‘간장’을 명확하게 표기하고 식품 원료 및 식품첨가물을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 ‘조제간장’ 표기를 폐지하고, 간장의 국가표준을 어긴 제품은 ‘간장’으로 표기할 수 없다.

〈식초〉(강화공고)

- 눈에 띄는 위치에 ‘식초’를 명확하게 표기하고 식품 원료 및 식품첨가물을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 ‘조제식초’ 표기를 폐지하고, 식초의 국가표준을 어긴 제품은 ‘식초’로 표기할 수 없다.

48) 중국, 고체음료의 생산 및 라벨 표시 관리·감독 강화 발표
(https://www.kati.net/board/exportNewsView.do?board_seq=93492)

49) 중국, 간장 및 식초를 대상으로 강화된 감독·관리 방침 시행 공고
(https://www.kati.net/board/exportNewsView.do?board_seq=93491)

2-2 농산품의 표시기준

- 제품명, 원산지, 생산자명 혹은 판매자명, 생산일자가 포장지에 표기되거나 별도로 표시, 기재되어야 한다. 등급표준이 있거나 첨가물을 사용했다면 제품의 품질 등급이나 사용한 첨가물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 미포장된 농산품은 라벨, 표식 패드, 표식 밴드, 설명서 등의 형식으로 농산품의 제품명, 생산지, 생산자명 혹은 판매자명 등의 표기가 추가되어야 한다.
- 농산품 표시에 사용할 문자는 규범화된 중문을 사용하여야 한다. 표식, 표기된 내용은 정확하고 진실성이 있으며 뚜렷해야 한다.
- 원산지와 중국내 대리업체의 명칭, 주소, 연락방식이 표기되어야 한다.
- 소량으로 재포장하여 판매되는 농산품은 포장에 농산품의 모든 정보와 재포장업체, 재포장시간, 장소, 유통기한 등의 정보들이 기재되어야 한다.

농산품 표시 요구사항

구분	필수/선택	적용 기준
제품명 원산지 생산자 생산일자/유통기한 보관방법 생산자 혹은 판매자의 명칭 제품 유형 중국내 대리업체 정보 (명칭, 주소, 연락방식)	필수기재	<식품안전법> <농산품포장과 표식관리방법> <식용농산품 시장판매 품질안전 감독관리방법>
품질등급, 사용한 첨가물	선택기재 (일부 유형 필수기재)	
재포장 업체, 시간 및 장소(소량 으로 재포장된 신선 농식품)	선택기재 (일부 유형 필수기재)	

<파프리카>(검역공고)⁵⁰⁾

- 한국산 파프리카의 포장 재질은 중국 식물검역 요구에 따라 위생적이고 깨끗한 포장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

50) 중국 해관총서, 한국산 파프리카 검역 시 라벨링 문제로 통관거부 조치
https://www.kati.net/board/exportNewsView.do?board_seq=93522)



- 모든 외포장박스에 영어로 파프리카 품목, 산지(도,시), 생산국가, 온실 등록번호, 포장공장(명칭, 등록번호) 등의 정보를 표기해야 한다.
- 모든 화물의 외포장에 중문으로 '중국수출' 문구를 표기해야 한다.

2-3 냉장·냉동 육류 제품의 표시기준⁵¹⁾

- 내외포장에 생산국가(지역), 제품명, 생산업체 등록번호, 생산일, 생산 로트번호를 중·영문 혹은 중문 및 수출국가(지역) 문자 표시로 견고하고 명확하며 식별하기 쉽게 명기해야 한다.
- 외포장에는 규격, 생산지(주/성/시 구체적으로 기재), 목적지, 생산일, 품질유지기한, 저장 온도 등을 중문으로 명기해야 하며, 중화인민공화국이 목적지임을 표기하고, 동시에 수출국가(지역) 공식 검사 검역 표시를 제시해야 한다.

2-4 수산품의 표시기준⁵²⁾

- 내외포장에 상품명과 학명, 규격, 생산일, 로트번호, 품질유지기한, 저장조건, 생산방식(바다 어획, 민물 포획, 양식), 생산지역(바다 포획 해역, 민물 포획 국가 혹은 지역, 양식제품 소재 국가 혹은 지역), 생산·가공 관련 모든 기업(포획선, 가공선, 운송선, 독립 냉장·냉동 창고 포함) 명칭, 등록번호 및 주소(주/성/시 구체적으로 기재)를 중·영문 혹은 중문 및 수출국가(지역) 문자 표시로 견고하고 명확하며 식별하기 쉽게 명기해야 한다. 또한 목적지가 중화인민공화국임을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2-5 보건식품의 표시기준

가) 요구사항⁵³⁾

-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에서 승인을 받고 생산 및 판매를 해야 하며 특정한 건강기능 효과나 비타민, 미네랄 보충을 목적으로 하는 식품이어야 한다.
- “특별알림” 부분을 표기하고, 최소 판매포장(용기)의 주표면에 위치해야 하며, 차지하는 면적이 그 면의 30%보다 적으면 안 된다.

51) 수출입식품 안전관리 방법(2022.1.1. 시행)

52) 수출입식품 안전관리 방법(2022.1.1. 시행)

53) 중국 텐진시, 보건식품의 라벨링 규정을 종합한 지침 발표

(https://www.kati.net/board/exportNewsView.do?board_seq=93558)

- 라벨링 내용은 보건식품등록증 또는 구비서류에 기재된 해당내용과 일치해야 한다.
- 라벨과 설명서에 질병예방, 치료기능 등에 관한 내용은 언급하지 못하며 “본 제품은 약물을 대체할 수 없다”는 문구를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 허위, 과대 또는 절대적 용어, 예방 및 치료기능 용어, 비속적 또는 봉건 미신적 용어, 인체조직기관 등 용어, “ ” 이외의 부호, 소비자의 오해를 일으키는 용어 등 내용을 포함하면 안 된다.
- 통용 명칭에는 이미 등록된 약품의 통용 명칭, 보건 기능 명칭 또는 상품의 보건기능을 설명하는 관련 문자,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원료의 약칭, 영양소 보충제 상품의 배합성분 중 일부 비타민 또는 미네랄, 법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기타 용어 등 포함하면 안 된다.

등록제 보건식품 표시 요구사항

구분	필수/선택	적용 기준
제품명 보건식품허가 마크 및 등록번호 내용량/규격 배합표 보건기능 생산일자/유통기한 섭취량/섭취방법 수입자 및 판매자정보 적용대상 제품규격 영양성분표 특수표준내용 및 주의사항 보관방법	필수기재	<식품안전법> <보건식품등록 및 신고관리방법> <보건식품 라벨표기 관리규정(의견수렴안)> <보건식품등록심사업무세칙> <보건식품 명명규정 및 명명메뉴얼> <보건식품 명명 관련 사항 공고> <보건식품등록신청서비스 메뉴얼 공고>
알레르기 경고문구	선택기재 (일부 유형 필수기재)	



신고제 보건식품 표시 요구사항

구분	필수/선택	적용 기준
제품명 보건식품허가 마크 및 신고번호 내용량/규격 원재료/보조 원료 효과성분 또는 대표성 성분 및 함량 생산일자/유통기한 사용대상/사용 부적합 대상 수입자 혹은 판매자정보 보건기능 제품규격 보관방법/품질보증기한 복용량 및 복용방법 특수표준내용 및 주의사항보관방법	필수기재	〈식품안전법〉 〈영양소보충제신고 및 심사규정(시행)〉 〈보건식품신고 및 심사 보충규정(시행)〉 〈보건식품등록 및 신고관리방법 및 해석〉 〈보건식품 명명규정 및 명명매뉴얼〉 〈보건식품신고업무매뉴얼(시행)통고〉 〈보건식품기성명표기 공고 및 해석〉

나) 주의사항⁵⁴⁾⁵⁵⁾

- 라벨 표면적이 100cm² 보다 크거나 같을 때 문구 글자체의 높이는 6.0mm 보다 작지 않아야 한다. 주요 라벨 표면적이 100cm² 보다 작을 때, 문구 글자의 최소 높이는 규정에 따라 같은 비율로 축소한다.
- 라벨에는 민원서비스 전화 정보 구역을 설치하고, 민원서비스 전화, 서비스 시간대 등의 정보를 표시해야 한다. 민원서비스 전화 글꼴은 “보건기능”의 글꼴 크기보다 작지 않아야 한다.
- 수입 보건식품, 특수식이용도식품의 중문 라벨은 반드시 최소 판매 포장 상에 인쇄해야 하며, 스티커로 부착해서는 안 된다.
- ‘보건식품 라벨 경고문 가이드라인’에 따라 경고문 표시 위치와 사이즈, 제조 날짜와 유통기한 표시 방법, 신고 관련 내용을 준수해야 한다.

54) 중국, 보건식품 라벨 치료효과 없음 기재 필요, 내년에 새 규정 발효
 (https://www.kati.net/board/exportNewsView.do?board_seq=87848)

55) 수출입식품 안전관리 방법(2022.1.1. 시행)

보건식품 라벨 경고문 가이드라인⁵⁶⁾

구분	주요 내용
경고문 표시 위치 및 사이즈	- '보건식품은 약물이 아니며 약물을 대체하여 질병 치료 불가'라는 경고문 기재 - 경고문은 고딕체로 인쇄하여 최소 포장물에 표시 - 경고문의 크기는 라벨의 최소 20% 이상 - 라벨 사이즈가 100cm² 이상일 경우, 경고문 글씨는 6mm 이상 - 라벨 사이즈가 100cm² 미만일 경우, 100cm²(라벨 사이즈): 6mm(글씨) 비율 유지
제조날짜 및 유통기한	- 최소 포장물에 제조날짜와 유통기한을 반드시 기재 및 표시 위치 구체적 명시 - 제조날짜와 유통기한 표기 시 배경과 색깔은 다른 부분과 대비를 이루어 식별이 쉽게 해야 하며, 날짜는 수정 불가 - 제조날짜는 보건식품의 내포장이 완성된 시간을 의미 - 1개의 포장지 속에 여러 상품이 포장될 경우, 포장지에 각 상품별 제조날짜와 유통기한 모두 표기 - 제조날짜는 연, 월, 일 순으로 표기하며 띄어쓰기, 부호 등으로 분리 - 유통기한은 '유통기한 XXXX년 XX월 XX일 까지' 방식으로 표기
신고 정보 관련	- 보건식품 라벨에는 신고서비스 전화, 서비스 시간대 정보를 표시해야 함 - 신고서비스 전화의 글자체는 '보건기능'의 글자체와 일치해야 함

2-6 영유아식품의 표시기준

1) 영유아 조제분유

가) 요구사항

- 영유아 조제분유 라벨은 제품 최소 판매포장 상에 문자, 도형, 부호 및 모든 설명 내용 등이 표기되고 있다.
- 제품의 배합내용과 일치해야 하며, 진실성이 있고 정확하고 쉽게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다.
- 허위적 또는 과장되거나 절대화된 표현이 포함되어 있어서는 안 된다.
- 수입 영유아 조제분유의 중문 라벨은 반드시 입국 전 최소 판매포장에 직접 인쇄되어야 하고, 중국내에서 부착되는 것을 금지한다.

나) 주의사항⁵⁷⁾

- 0~6개월 영유아용 조제분유 제품의 경우, 성분 함량 및 기능을 홍보하지 않아야 한다.

56) 중국 텐진시, 보건식품의 라벨링 규정을 종합한 지침 발표
https://www.kati.net/board/exportNewsView.do?board_seq=93558

57) 중국, 영유아 조제분유 제품의 라벨 표지 규범화 공고
https://www.kati.net/board/exportNewsView.do?board_seq=93664&menu_dept2=35&menu_dept3=75&dateSearch=year&srchFr=&srchTo=&srchTp=2&srchWord=중국&page=3



- 6개월 이상 영유아용 조제분유 제품의 경우, ‘필수 성분’의 함량 및 기능을 홍보하지 않아야 하며, ‘선택 성분’은 주표시면이 아닌 곳에 함량 및 기능을 홍보할 수 있다.

* 필수 성분(예시) :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비타민B₁, B₂, 비타민C, 칼슘, 철분, 아연 등

** 선택 성분(예시) : 식이섬유, 균류 등

- 상품명에 동물성 유래 성분이 있는 경우, 원료는 해당 동물에서 유래되어야 하며 2가지 이상의 동물성 유래 성분이 있는 경우에는 성분표에 원료의 비율을 표시해야 한다.
- 복합원료가 있는 경우, 식품국가안전표준을 준수해야 한다. 복합원료가 2가지 이상일 경우, 복합원료의 명칭과 복합원료의 원재료를 성분표에 내림차순으로 기재해야 한다.
-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섭취량, 섭취 방법을 기재하며, 섭취 방법은 ‘필수’, ‘엄격히’ 등의 표현을 피하도록 한다.
- 시판 상품이 라벨 규정을 위반할 경우, 해당 공고의 발표일 6개월 이내 규정에 따라 라벨을 변경하고 기존 라벨의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

영유아 조제분유 표시 요구사항

구분	필수/선택	적용 기준
제품명 배합표 영양성분표 순종량/규격 영유아조제분유 등록번호 생산일자/유통기한 원산국 섭취량/섭취방식 생산업체/재중책임회사 보관방법 생산공장(업체)CNCA 등록번호 “0-6개월 유아에게 최적인 식품은 모유이며, 모유가 부족하거나 나오지 않을 경우 이 제품을 섭취할 수 있다”(영유아 배합분유) 혹은 “순수혼합첨가보조식품”(영유아배합 식품비)라고 표시 간략설명	필수기재	〈식품안전법〉 〈사전포장식품 라벨 통칙〉 (GB 7718-2011) 〈사전포장식품 영양 라벨 통칙〉 (GB 28050-2011) 〈식품안전 국가표준 영유아조제식품〉 (GB 10765-2010) 〈식품안전 국가표준 생후 6-12개월 영유아 및 유아 조제식품〉 (GB 10767-2010) 〈영유아배합분유제품배합라벨등록규범 기술지도원칙(시행)〉
분유 원료 구체적인 원산지 또는 원산국	선택기재 (일부 유형 필수기재)	

2) 영유아 보조식품

가) 요구사항

- 최초 수출 전에는 특별히 인허가를 취득할 필요는 없지만, GB테스트 시험 성적을 사전에 취득하여 통관 시 필히 제출해야 한다.
- “영유아식용” 또는 “6개월 이상 영유아식용” 등 영유아 전용음식을 뜻하는 용어, 도안이 표기되어 있다면 해당 표기내용이 진실하고 정확해야 하며 제품은 “영아” 또는 “유아”가 식품안전 국가표준에서의 정의에 부합해야 한다.
- 허위적이고 과장되거나 소비자를 기만 또는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문자, 도형 등 방식으로 식품을 소개해서는 안되고 글씨 크기 또는 색깔 차이로 소비자를 혼돈하게 해서는 안 된다.

영유아 곡물류 보조식품 표시 요구사항

구분	필수/선택	적용 기준
제품명 배합표 영양성분표 내용량/규격 원산국 법적으로 중국에서 등록된 대리점, 수입업자 또는 판매자의 이름, 주소와 연락처 생산일자/유통기한 저장조건 섭취방식 및 적합한 대상 섭취량 설명서 생산업체의 명칭, 주소와 연락처	필수기재	<식품안전법> <사전포장식품 라벨 통칙> (GB 7718-2011) <사전포장식품 영양 라벨 통칙> (GB 28050-2011) <사전포장 특수식이용도식품 라벨 통칙>(GB 13432-2013) <식품안전 국가표준 영유아 곡물류 보조식품>(GB 10769-2010)
열량 및 영양성분의 함량표시 알레르기 경고문구	선택기재	



3) 특수 의학용도 영유아 보조식품

구분	필수/선택	적용 기준
제품명 제품유형 배합표 영양성분표 조제특징/영양학특징 조직상태 내용량/규격 수입자 혹은 판매자정보 적용대상 보관방법/품질보증기한 섭취량 및 섭취방법 간략설명 및 주의사항 열량 및 영양성분의 함량표시 알레르기 경고문구	필수기재	〈식품안전법〉 〈식품안전법 실시조례〉 〈특수의학용도 조제식품등록관리방법〉 〈특수의학용도식품라벨, 설명서 양식(실행)〉

3. 식품 표시 부적합 주요 현황⁵⁸⁾

‘19년부터 ‘21년 8월까지 한국산 식품 중 표시와 관련된 주요 부적합 사례는 아래 표와 같다.
※ ‘17년 당시 한·중 양국의 사드(THAAD) 갈등으로 한국산 식품 통관이 까다로워져 부적합 식품이 급증했고, ‘18년 상반기 이후 반한 감정이 완화되면서 통관 거부 사례가 감소했다는 일부 시각도 있어⁵⁹⁾ ‘19년 이후의 주요 사례를 기재함

불합격 사유	품목
1. 라벨은 식품 및 포장재와 분리해선 안 됨 2. 라벨은 규범화 중문 사용(상표 제외), 외국문자는 중문과 대응하고 크기는≤중문(등록상표 제외) 3. 병음 표기가 한자보다 커서는 안 됨 4. 표면면적 >35cm ² 인 경우 라벨내용은 1.8mm보다 커야하며, <10cm ² 인 경우 식품명, 생산자, 주소, 내용량, 생산일자, 유통기한만 표기가 가능 5. 개별 포장된 단독 판매 가능 식품은 개별 라벨 필수 6. 외부 포장재를 통해 내부를 분명하게 식별할 수 있는 내용은 중복표시 불가, 그 외의 경우 외부 포장에 필수 내용을 표시 (근거 : GB 7718-2011)	김, 스위트 비스킷, 조제품 기타, 기타(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 제2009호의 과일 주스와 채소 주스는 제외) 등
라벨에 표기 안하는 유전자재조합 성분(pCaMV35S 등) 검출 (근거 : GB 7718-2011)	조제품 기타, 저에루크산 유채유와 그 분획물(조유), 대두유(조유/기타), 해바라기씨유(조유) 등
사전포장식품 100ml(혹은 100g)당 지방 최대 허용량 0.5g이며 단위 표기 방법 “克(g)” (근거 : GB 28050-2011)	요구르트(액상)

58) 식품안전정보원, 수출식품 부적합 사례

(<https://www.foodinfo.or.kr/portal/bbs/selectBoardList.do?bbsId=10000000000000000493>)

59) 식품안전정보원, 한국산 수출식품 부적합 동향 분석(‘17년~‘19년)

(<https://www.foodinfo.or.kr/portal/bbs/detailBBSArticle.do?goMenuNo=9000001472&topMenuNo=9000001079&upperMenuNo=0&tabMenuNo=&bbsId=10000000000000000493&nttlId=244598>)



식품 수출 안내서 중국편

수입제도 주요 개정사항



1. 검사검역제도

2021年8月5日 星期四 海关电邮 · 下载中心 · 用户空间 · 无障碍 · 繁體版 · English

 **中华人民共和国海关总署**
GENERAL ADMINISTRATION OF CUSTOMS, P.R.CHINA

请输入搜索关键字

热词: 减免税 海关管理 货运监管 行政监管

首页 | 总署概况 | 新闻发布 | 政务公开 | 互联网+海关 | 互动交流 | 专题专栏

您的位置: 首页 > 政务公开 > 海关法规

【法规类型】 海关规章	【内容类别】 综合类
【文 号】 署令〔2020〕248号	【发文机关】 海关总署
【发布日期】 2021-04-12	【生效日期】 2022-01-01
【效力】 有效	
【效力说明】	

海关总署第248号令（关于公布《中华人民共和国进口食品境外生产企业注册管理规定》的令）

署令〔2020〕248号

1-1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 등록·관리 규정」 공포(4월12일)⁶⁰⁾

* <http://www.customs.gov.cn/customs/302249/302266/302267/3625372/index.html>

- 2021년 4월12일, 중국 해관총서는 수출입 식품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출입식품 안전관리방법, 이하 ‘관리방법’》을 개정함(시행일 : 2022년 1월 1일) 관리방법은 수입식품 및 해외 생산기업에 대해 강화된 심사관리방법을 규정 하였으며, 이를 근거로《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 등록관리규정, 이하 ‘관리규정’》의 개정안도 발표됨

* 식품첨가물과 식품관련 제품은 불포함

해관총서령 제248호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 관리 규정’ 법령 번역 예시 부록8 참조

- 등록된 기업 리스트는 해관총서 홈페이지에서 조회가능
인터넷 주소 : <http://jckspj.customs.gov.cn/spj/zwgk75/2706880/index.html>

60)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 등록·관리 규정

(<http://www.customs.gov.cn/customs/302249/302266/302267/6325372/index.html>)

수입식품해외생산 기업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중화인민공화국 규정에 대한 관세청의 해석

(<http://www.customs.gov.cn/customs/302249/302270/302272/3642170/index.html>)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 등록대상 업체 확대 및 등록 신청서류 조정

① 소개 국가(지역) 주관 당국에서 등록을 추천

- (기존) 육류 및 육류제품, 케이싱, 수산물, 유제품, 제비집 및 제비집 제품
- (변경) 기존 + 벌꿀제품, 계란 및 계란제품, 식용유지와 그 원료, 소를 넣은 면류, 식용 곡물, 제분 곡물 제품 및 맥아, 신선·탈수 채소 및 견과, 조미료, 견과와 씨앗류, 견과, 로스팅하지 않은 커피콩과 코코아, 특수 식이용 식품, 건강식품
- 이는 일부 식품 종류가 추가된 것이고, 소재국가(지역)주관 당국이 해관총서에 등록을 추천해야 하며, 다음 신청서류를 제출
 - (1) (신규) 주관 당국의 추천서
 - (2) (신규) 업체 명단과 업체 등록 신청서
 - (3) (신규) 주관 당국에서 발급한 영업허가증 등의 업체신분증명서류
 - (4) (기존) 추천업체가 본 규정 요구에 부합함을 약속하는 주관 당국의 성명서
 - (5) (기존) 주관 당국이 관련 업체에 대해 심사를 시행한 심사보고서

② 업체 또는 대리인이 등록 신청

- 상기 식품 이외의 식품을 생산하는 업체에 해당하며 다음 신청서류를 제출
 - (1) (신규) 업체 등록 신청서
 - (2) (신규) 주관 당국에서 발급한 영업허가증 등의 업체신분증명서류
 - (3) (신규) 본 규정 요구에 부합함을 약속하는 업체의 성명서

(2) 평가심사 및 등록관리 요구사항 조정

- 해관총서에서 2명 이상의 심사팀을 구성하여 서면·영상·현장검사 방식으로 평가·심사를 시행하고, 심사 상황에 따라 ‘등록 승인 및 중국에서의 등록번호 부여’ 또는 ‘등록 불허’라는 결론을 내린다는 내용이 신규 추가됨

(3) 라벨표시에 대한 요구사항 변경

- 내포장과 외포장에 동시에 등록번호를 표시해야 함

(4) 해외업체 등록 유효기간 조정

- 등록 유효기간 연장(4년 → 5년)

(5) 변경 및 연장 시 신청서류를 명확히 제시하고, 연장 시 신청 기간 완화

- 등록 변경은 변경정보 대조표 및 관련 증명서류 제출
- 연장은 등록 연장 신청서와 등록요건에 부합한다는 성명서 제출

(6) 해외업체 주관 당국 범위 축소

- 주관 당국을 해외업체 소재 국가에서 식품생산업체 안전 위생 감독 관리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로 한정하여, 정부 위임을 받은 기관이나 업종별 조직은 주관 당국으로 인가하지 않기로 함

(7) 홍콩·마카오·대만에 대한 별도 규정 삭제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1-2 수입식품에 코로나 바이러스 검역 확인서 제출요구⁶¹⁾

- 중국 세관 당국은 중국으로 수출하는 식품업체에게 코로나바이러스 검역 확인 신고서 제출을 요구함. 신고서는 수출업자가 중국법, UN 농식품 기관과 WHO의 지침에 따르며, 중국으로 수입되는 식품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유발하는 바이러스에 오염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장하는 내용임. 또한, 식품 기업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의심되는 사례가 발생하거나 중국으로 수출되는 식품 중 코로나 바이러스 오염 위험이 있는 경우, 수출업자는 식품안전의 위험을 제거하고 소비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함
- 한국산 육류의 중국 수출량은 많지 않지만, 주요 검역대상이 육류제품이기 때문에 이번 코로나바이러스 검역 조치에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음

1-3 콜드체인 수입식품 관리 강화⁶²⁾

- 최근, 중국의 수입 냉동식품 외포장 샘플에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가 잇따라 검출되자, 중국 정부는 콜드체인 수입식품 관련 예방, 소독 지침 등을 계속 발표하며 콜드체인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음
 - 해관총서는 콜드체인 수입식품 검사결과가 양성이면 규정에 따라 반송 또는 폐기 처리하고, 음성이면 검사장소 경영자 또는 수입기업에서 콜드체인 수입식품의 컨테이너 내벽과 화물 외포장을 소독하도록 지도, 감독함
 - 소독 완료 후, 소독업체는 해당 화물이 소독되었다는 증명서를 발급함

61)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https://www.kati.net/board/exportNewsView.do?board_seq=91100&menu_dept2=35&menu_dept3=75)

62) 식품안전정보원, 해외 주요국 수입식품 안전관리 정책(2020)



[중국의 콜드체인 식품 관리 강화 관련 지침 등]

발표기관	지침 등 명칭	발표시기
교통운수부	도로, 수로 수입 콜드체인 식품 물류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예방통제 및 소독 기술 지침 ⁶³⁾	2020.11.13
국무원	수입 콜드체인 식품 예방성 전면 소독 업무 방안 ⁶⁴⁾	2020.11.08
국무원	콜드체인 식품 생산·경영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예방통제 기술 지침 ⁶⁵⁾	2020.10.16
국무원	콜드체인 식품 생산·경영과정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예방통제 소독 기술 지침 ⁶⁶⁾	
교통운수부	콜드체인 물류 채널의 코로나19 예방통제 업무를 더욱 강화할 것에 관한 통지 ⁶⁷⁾	2020.08.26
국무원	농산물거래시장 코로나19상황 예방 통제 기술 지침 ⁶⁸⁾	2020.08.08

- ‘20년 9월, 해관총서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가 검출된 콜드체인 수입식품의 생산 기업을 대상으로 한 ‘긴급예방조치’를 발표했음
 - (관련규정) 해관총서 공고 2020년 제103호
 - (주요내용) ‘20년 9월 11일부터 동일한 해외생산기업이 중국으로 수출한 콜드체인식품 또는 그 포장에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가 검출된 경우, 다음 조치를 실시함
 - 해관총서는 1~2회까지는 해당 기업의 제품 수입신고를 각각 1주일간 중단하고, 1주일이 지나면 자동 재개되도록 함
 - 동일한 해외생산기업에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가 3회 이상 검출된 경우, 해관은 해당 기업의 제품 수입신고를 4주간 중단하고, 4주가 지나면 자동 재개되도록 함

63) 교통운수부 (http://xxgk.mot.gov.cn/2020/jigou/ysfws/202011/t20201113_3489028.html)

64) 국가위생건강위원회

(<http://www.nhc.gov.cn/cms-search/xxgk/getManuscriptXxgk.htm?id=26b2fafc696b48e3b2dab5cdeb2fd50d9>)

65) 국가위생건강위원회

(<http://www.nhc.gov.cn/sps/s7887k/202010/ff228979f1534c3abca56559f14ea115.shtml>)

66) 국가위생건강위원회

(<http://www.nhc.gov.cn/sps/s7887k/202010/ff228979f1534c3abca56559f14ea115.shtml>)

67) 교통운수부 (http://www.gov.cn/zhengce/zhengceku/2020-08/29/content_5538336.htm)

68) 국가위생건강위원회 (http://www.gov.cn/xinwen/2020-08/12/content_5534325.htm)



2. 기준·규격

2-1 통조림 식품 국가표준(GB)발표⁶⁹⁾

- 수산물, 과일, 야채, 견과류 통조림식품 분류표준을 수정하고, 알류 및 식용버섯 통조림 분류를 국가표준에 추가함
- Standardization Administration of China에 따라 통조림식품분류 표준(GB/T 10784-2020)을 '20.7.21일에 정식 발표하여 '21.8.1.부터 실시됨

2-2 코엔자임 Q10 등 5가지 보건의약품 원료목록 제정('21.03.01~)⁷⁰⁾

- 코엔자임Q10등 5가지 보건의약품원료 * 목록에 해당 원료 사용범위, 기능, 기술지표 및 미생물지표 포함
- * 코엔자임Q10(辅酶Q10), 파벽영지포자분(破壁灵芝孢子粉), 스피루리나(螺旋藻), 오메가(魚油), 멜라토닌(褪黑素) 표 및 미생물지표 포함

2-3 중국, 간장 및 식초를 대상으로 강화된 감독·관리 방침 시행 공고⁷¹⁾

- 중국 시장감독총국, 간장과 식초의 품질 관리 및 감독·관리 방식 강화
 - 2021년 6월 23일, 중국시장감독총국은 간장 및 식초를 대상으로 품질관리 및 안전 이슈의 최적화를 위하여 《간장·식초 품질안전 감독·관리 강화에 관한 공고, (이하 '강화공고')》를 발표함
 - 《강화공고》는 간장과 식초의 사용기준을 규정하였으며, 고품질제품의 생산을 장려하고 불법 제품의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생산기업, 현지 시장 감독부서, 이해 관계자의 감독·관리 방식을 명시함. 간장과 식초의 제품 사용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강화공고》는 규정 발표일인 6월 23일부터 시행됨

69)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https://www.kati.net/board/reportORpublicationView.do?board_seq=92459&menu_dept2=49&menu_dept3=53&dateSearch=all&srchFr=&srchTo=&srchTp=&srchWord=&page=1)

70)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https://www.kati.net/board/reportORpublicationView.do?board_seq=92459&menu_dept2=49&menu_dept3=53&dateSearch=all&srchFr=&srchTo=&srchTp=&srchWord=&page=1)

71)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https://www.kati.net/board/exportNewsView.do?board_seq=93491&menu_dept2=35&menu_dept3=75)



(1) 간장의 사용기준

- 국가표준(GB 2717-2018)에 따른 정의 : 대두(大豆) 혹은 탈지 대두, 밀 혹은 밀가루 혹은 밀기울을 주원료로 미생물 발효를 거쳐 제조한 독특한 색·향·맛을 지닌 액체 조미료
- 주의사항 : 완전한 발효 양조 공정을 거쳐 생산해야 하며, AHVPS(Acid hydrolyzed vegetable protein seasoning)등의 성분은 첨가할 수 없음
- 라벨표시사항 :
 - ① 눈에 띄는 위치에 '간장'을 명확하게 표기하고 식품원료 및 식품첨가물을 정확히 기재해야 함
 - ② '조제간장' 표기를 폐지하고, 간장의 국가표준을 어긴 제품을 '간장'으로 표기할 수 없음

(2) 식초의 사용기준

- 국가표준(GB 2719-2018)에 따른 정의 : 전분, 당을 함유한 각종 재료와 식용 주정(酒精)을 단독 혹은 혼합하여 미생물 발효를 거쳐 제조한 액체 조미료
- 주의사항 : 완전한 발효 양조공정을 거쳐 생산해야 하며, 아세트산 등의 성분은 첨가할 수 없음
- 라벨표시사항 :
 - ① 눈에 띄는 위치에 '식초'를 명확히 표기, 식품원료 및 식품첨가물을 정확히 기재해야 함
 - ② '조제식초' 표기를 폐지하고 식초의 국가표준을 어긴 제품은 '식초'로 표기할 수 없음

○ 불법 제품에 대한 감독·관리 방침 강화, 수출 전 사용기준 숙지해야

- 2020년 한국에서 중국으로 수출된 간장 (HS CODE : 2103100000)과 양조 식초(HS CODE: 2209001000)의 수출 규모는 각 126만 달러, 108만 달러를 기록함

《강화공고》의 감독·관리 방침에 따르면, 사용기준에서 금지한 AHVPS, 아세트산 성분 등을 제품에 첨가하거나 라벨 허위표기 등의 불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조사를 통해 처벌하며, 공업용소금 등 비식용물질을 사용한 사람은 중국 공안 기관에 이송됨. 따라서 간장 또는 식초를 중국으로 수출하는 한국 식품기업은 《강화공고》의 내용을 숙지하고, 제조방식과 라벨표시 등에 주의하여 수출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해야 함



※ 간장·식초 사용기준 주요 내용(간장·식초 품질안전 감독·관리 강화에 관한 공고)

	간장	식초
	GB 2717-2018	GB 2719-2018
국가표준	• 대두, 탈지 대두 및 밀, 밀가루 밀기울을 주원료로 사용하여 미생물 발효를 거쳐 제조한 독특한 색·향·맛을 지닌 액체 조미료	• 전분, 당을 함유한 각종 재료와 식용주정을 단독 혹은 혼합하여 미생물 발효를 거쳐 제조한 액체 조미료
제조사	• 완전한 발효 양조 공정을 거쳐 생산	
주의사항	• AHVPS등 성분 첨가 불가	• 아세트산 등 성분 첨가 불가
라벨 표시사항	• 눈에 띄는 위치에 ‘간장’ 혹은 ‘식초’ 명확히 표기 • 식품원료 및 식품첨가물을 정확히 기재 • ‘조제간장’ 및 ‘조제식초’ 표기 폐지 • 간장 혹은 식초의 국가표준을 어긴 제품은 ‘간장’ 또는 ‘식초’ 표기 불가	

출처

시장감독총국(市场监管总局), 市场监管总局关于 加强酱油和食醋质量安全监督管理的公告, 2021. 06. 23

중국식품공업협회(中国食品工业协会), 市场监管总局关于 加强酱油和食醋质量安全监督管理的公告 (2021年第23号), 2021. 06. 30

2-4 [규제관련] 중국, 유제품 패키지에 확인하기 쉬운 유통기한 표시 권장 72)

- 최근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광범위하게 유제품업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시한 유제품 품질·안전 향상 프로젝트와 결합하여<유제품 섭취기한 표시 권장에 관한 공고>를 제정하고 발표함

시장감독관리총국은 대중들의 관심사인 “안심하게 소비, 품질 높은 소비”에 초점에 맞춰 관련 업무를 개시한 결과, 일부 유통기한이 짧은 유제품의 패키지에 표시된 제조일자를 찾기 힘들고 유통기한 마감일을 계산하기 어려워 구입하는 과정에서 불편함을 느끼고 유통기한 내에 구매한 유제품을 마시거나 먹지 않아 낭비를 초래한다는 소비자 반응을 수집함

<식품안전법>의 규정을 따르면, 유제품 제조업체는 제조한 유제품의 패키지에 제조일자와 유통기한을 표시해야 하지만 이번 공고에서는 명확하게 유제품 업체가 선도적으로 냉장이 필요한 신선우유, 요거트 등 유통기한이 짧은 유제품에 소비자가 직관적으로 언제까지 섭취 가능한지 알 수 있게끔 유통기한 마감일을 명확하게 표시할 것을 권장함

72)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https://www.kati.net/board/exportNewsView.do?board_seq=94265&menu_dept2=35&menu_dept3=71)



- ▶ 공고에서 제시한 제조일자와 유통기한 표시방식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필수 항목이 아니지만 대중국 유제품을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도 중국 국가시장감독 총국의 이 권장사항에 호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Q&A 중국, 식품규정에 대한 Q&A 모음⁷³⁾⁷⁴⁾**Q1. 《수출입식품 안전관리법(이하 ‘관리방법’))에서 제시한 수입식품에 대한 “적합성(합격여부) 평가”의 개념은 무엇이고,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나요?**

《관리방법》제10조에 따르면, ‘해관은 수출입 상품 검사의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수입식품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시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즉, 해관의 심사를 통과한 수입식품만 수입이 가능함

수입식품에 대한 적합성 평가 항목으로는 외국(지역)의 식품 안전관리 시스템평가 및 심사, 경외 생산기업 등록, 수출입업자 등록, 수입 동식물검역증, 검사 및 승인된 인증서, 수출실무서류심사, 현장검사, 감독 및 표본 추출, 수입 및 판매기록 검사 등이 있음

※ 《관리방법》의 주요 내용

- 2021년 4월 중국 해관총서는 수출입 식품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관리 방법〉을 개정함. 해당 규정은 수입식품에 대한 합격평가(적합성 평가) 방식을 비롯하여 수입식품의 동식물 검역 심사 방식 변경, 수입 보건식품 및 특수 선식용 식품에 스티커 라벨링 제한, 전 식품에 해외생산기업 등록제 적용 등의 내용을 규정함. 해당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모두 적용됨

☞ 2022년 1월 1일부터 해외 식품 생산기업 등록관리규정 전품목으로 확대적용 (2021.06.25.)

Q2. 국제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식품에 중문 라벨이 있어야 하나요?

《국제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 감독관리 업무 개선에 관한 통지, 이하 ‘개선통지’》에 따르면, 해외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 제품은 개인용 수입품으로 관리감독하며 중문 라벨의 부착을 강제하지 않음

단, 국제 전자상거래 기업(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중국 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하는 해외 기업)은 제품의 품질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소비자에게 고지 의무를 이행해야 함. 그리고 제품 주문 페이지나 눈에 띄는 위치에 소비자의 위험을 고지하고, 판매 제품의 중문 전자 라벨을 제공해야 함

※ 《개선통지》의 주요 내용

- 2018년 11월 상무부등 6개 부서는 국제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에 대한 관리 감독과 정책적 연계를 위해 《개선통지》 제4조 국제 전자상거래 기업의 소비자 고지의무 이행에 관한 규정 항목으로 명시되어 있음

73)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https://www.kati.net/board/exportNewsView.do?board_seq=93614&menu_dept2=35&menu_dept3=75)

74)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https://www.kati.net/board/exportNewsView.do?board_seq=93663&menu_dept2=35&menu_dept3=75)

**Q3. 홍보(광고)용 샘플의 수입은 검역 면제 유형에 해당하나요?**

연구 테스트용 식품 샘플은 라벨 검사 및 샘플 추출검사서 면제될 수 있음. 단, 동물성 및 식물성 식품은 수입조건을 준수해야 함

※ 《수출입상품검사법 시행규정(2019년 개정안)》의 주요 내용

- 《시행규정》제6조에 따르면 수출입 샘플, 선물, 임시화물, 기타 비무역성 물품에 대한 검역을 면제함. 검역 면제 조건에 부합할 경우, 수입업체나 수출업체, 생산기업은 해관이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제정함

Q4. 식품접촉재료의 첨가물 품질사양은 어떤 규정을 준수해야 하나요?

식품접촉재료 및 제품 첨가물은 《식품용기, 포장재질 위생표준, 이하 GB 9685-2008》을 준수해야 되며 식품 제조 시에는 《식품접촉재료 및 제품생산 위생규범, 이하 GB 31603-2015》을 준수해야 됨. 또한 《GB 9685-2008》에 언급하지 않은 첨가물의 경우 기타 국가 표준을 준수하거나 공장이 자체적으로 표준을 만들어야 됨

※ 《GB 31603-2015》의 주요 내용

- 식품접촉재료 및 제품생산기업의 기본 위생요구와 관리 준칙을 규정함. 원재료 구매, 가공, 저장 및 운송 각 단계에 해당되는 장소, 설비, 인원, 원료·보조재 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포함 함
- 원료·보조재 관련 요구사항:
 - ① 관련법률, 표준, 식품안전의 요구에 부합하도록 사용해야 함
 - ② 원료·보조재에 대한 구매, 운송, 저장관리제도를 수립해야 함
 - ③ 원료·보조재 공급에 대한 선정, 심사, 평가 프로세스를 포함한 기업 관리제도 수립해야 함
 - ④ 운송 과정에서 유독, 유해물질과의 접촉을 피해야 함
 - ⑤ 원료·보조재에 대한 입고 검수를 실시하고 품질 접합 증명 서류를 검토해야 함
 - ⑥ 미검수, 적합, 부적합 원료·보조재분리, 저장을 표시해야 함
 - ⑦ 원료·보조재는 물리적, 화학적 특성에 따라 저장해야 함
 - ⑧ 장비에 사용하는 감마제, 접착제, 소독제 등 화학물질은 용도에 따라 분리하여 표시해야 함
 - ⑨ 원료·보조재의 사용은 선입선출 원칙을 준수하고 부적합 원료, 보조재의 사용을 피해야 함
 - ⑩ 입출고 기록 제도를 수립하고 구매, 검수, 저장, 사용, 운송 기록을 보관해야 함

출처

Antion Consulting, 食安快讯, 2021.07

해관총서(中国政府网), 中华人民共和国海关法(2017年修正版), 2017. 11. 04

해관총서(中国政府网), 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实施条例(2019年修订), 2019. 03. 02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중국 보건식품 인증 획득 가이드 및 수출 절차별 매뉴얼, 2017



VI

식품 수출 안내서 중국편

수출·입 통계

1. 수입 현황

- '17~'19년까지 중국에서 한국으로 수입하는 가공식품의 수입비중이 높음
 - (중량기준) 가공식품(52.56%), 농·임산물(36.54%), 수산물(10.36%), 축산물(0.54%)순임
 - (금액기준) 가공식품(41.39%), 수산물(31.70%), 농·임산물(25.30%), 축산물(1.61%)순임

[식품 분류별 수입실적('17년~'19년)]⁷⁵⁾

(단위 : 톤, 천달러)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중량	금액	중량	금액	중량	금액
농 · 임산물	992,184	795,415	976,100	829,392	937,015	828,423
축산물	13,537	41,388	13,845	53,521	15,839	60,988
수산물	273,940	949,019	288,247	1,145,478	261,198	979,608
가공식품	1,329,925	1,264,958	1,424,562	1,367,379	1,425,201	1,380,790

*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검사관리과

2. 수출 현황

- '17~'19년까지 한국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가공식품 수출비중이 높음
 - (중량기준) 가공식품(43.99%), 농산물(27.75%), 임산물(20.84%), 수산물(5.88%), 축산물(1.54%)순임
 - (금액기준) 가공식품(36.45%), 농산물(34.62%), 수산물(18.21%), 축산물(5.96%), 임산물(4.75%)순임

[식품 분류별 수출실적('17년~'19년)]⁷⁶⁾

(단위 : 톤, 천달러)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중량	금액	중량	금액	중량	금액
농산물	447,090	743,951	499,947	823,286	537,872	878,928
임산물	357,702	109,789	489,072	140,163	268,408	85,784
축산물	21,677	132,633	26,334	147,440	34,307	141,272
수산물	90,379	373,349	87,528	390,736	136,809	522,722
가공식품	742,957	811,660	914,054	900,949	696,708	862,664

* 자료 : 농림수산물 수출입동향 및 통계(2019)

75) 식품의약품안전처 (https://www.mfds.go.kr/wpage/m_311/index.do)

76)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https://www.kati.net/board/pubilshedMaterialsView.do?board_seq=91265&menu_dept2=48)



식품 수출 안내서 중국편

부 록

- 부록 1. 일반원산지 증명서 예시
- 부록 2. FTA 원산지 증명서 예시
- 부록 3. ATPA 원산지 증명서 예시
- 부록 4. 영문 위생증명서 예시
- 부록 5. 사전포장식품 라벨 통칙(GB 7718-2011)
- 부록 6. 사전포장식품 영양 라벨 통칙(GB 28050-2011)
- 부록 7. 식품안전 국가표준 사전포장 특수식이용도 식품 라벨
(GB 13432-2013)
- 부록 8.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 관리 규정



[부록 1]

일반원산지 증명서 예시

1. Exporter (Name, address, country)		Reference No. Reference Code.		ORIGINAL
2. Consignee (Name, address, country)		CERTIFICATE OF ORIGIN issued by THE KOREA CHAMBER OF COMMERCE & INDUSTRY Seoul, Republic of Korea		
		3. Country of Origin THE REPUBLIC OF KOREA		
4. Transport details FROM : KOREA TO : CHINA BY : SEA NEW GOLDEN BRIDGE V 2101W ON : 19 JUN, 2018		5. Remarks		
6. Marks & numbers; number and kind of packages, description of goods 20CT 800EA 280KG 290KG ////////////////////////////////////		7. Quantity		
8. Declaration by the Exporter The undersigned, as an authorized signatory, hereby declares that the above-mentioned goods were produced or manufactured in the country shown in box 3.		9. Certification The undersigned authority hereby certifies that the goods described above originate in the country shown in box 3 to the best of its knowledge and belief.		
(Signature)  (Name) PRESIDENT CHOI HYUK JOON		  Deputy Director CHOI-HYUN-JA 15 JUN 2018 Authorized Signatory		

Identify the authenticity of certificate for verification with the website.(<http://cert.korcham.net/search>) 1/1

※ 출처 ; 대한상공회의소



[부록 2]

FTA 원산지 증명서 예시

ORIGINAL



1. Exporter's name and address, country: 2. Producer's name and address, country: SAME		Certificate No.: Certificate Code.: CERTIFICATE OF ORIGIN Form for Korea-China FTA Issued in <u>THE REPUBLIC OF KOREA</u> (see Overleaf Instruction)				
3. Consignee's name and address, country: 4. Means of transport and route (as far as known): Departure Date: 08 MAY, 2018 Vessel/Flight/Train/Vehicle No: NER GOLDEN BRIDGE V 2008 Port of loading: INCHEON, KOREA Port of discharge: QINGDAO, CHINA		5. Remarks: 				
6. Item number (Max 20)	7. Marks and Numbers on packages	8. Number and kind of packages; description of goods	9. HS code (Six-digit code)	10. Origin criterion	11. Gross weight, quantity (Quantity Unit) or other measure (liters, m, etc.)	12. Number and date of invoice
1	FOODCARE, PLT NO. 1, NO 2, NO 3		210690	PSR	530 KG 1,500 PC	
2	////////////////		210690	PSR	530 KG 1,500 PC	
3			210690	PSR	530 KG 1,500 PC	
////		////////////////////////////////////	////////////////////////////////	////////	////////////////////////////////	////////
End Of Page ...						
13. Declaration by the exporter: The undersigned hereby declares that the above details and statement are correct, that all the goods were produced in <u>THE REPUBLIC OF KOREA</u> (Country) and that they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in the FTA for the goods exported to <u>PEOPLE'S REPUBLIC OF CHINA</u> (Importing Country) BUCHEON KOREA 14 MAY 2018 Place and date, signature of authorized signatory			14. Certification: On the basis of control carried out, it is hereby certified that the information herein is correct and that the goods described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in the Korea - China FTA. BUCHEON 14 MAY 2018   Department Manager SANG-CHUL LEE Place and date, signature and stamp of authorized body			

* Identify the authenticity of certificate for verification with the website.(<http://cert.korchon.net/search>)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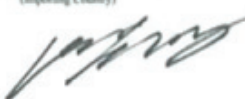
※ 출처 : 대한상공회의소

[부록 3]

ATPA 원산지 증명서 예시

Asia-Pacific Trade Agreement
(Combined declaration and certificate)



1. Goods consigned from: (Exporter's business name, address, country)		Reference No.: Reference Code.: CERTIFICATE OF ORIGIN Issued in: <u>THE REPUBLIC OF KOREA</u> (country)	
2. Goods consigned to: (Consignee's name, address, country)		3. For official use	
4. Means of transport and route (as far as known)			
5. Tariff item number: 2106 2106 ////////	6. Marks and number of Packages: ////////	7. Number and kind of packages/ description of goods: ////////	8. Origin criterion (see notes overleaf) B 0.32% B 0.53% ////////
9. Gross weight or other quantity 7(CT) 123(CT) ////////		10. Number and date of invoices ECN APR/17/2018 ////////	
End Of Page ...			
11. Declaration by the exporter: The undersigned hereby declares that the above details and statements are correct: that all the goods were: produced in <u>THE REPUBLIC OF KOREA</u> (Country) and that they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ose goods in the Asia-Pacific Trade Agreement for goods exported to: <u>PEOPLE'S REPUBLIC OF CHINA</u> (importing Country)  PRESIDENT CHAE BUM PARK Seoul, Korea 18 APR 2018 Place and date, signature of authorized Signatory		12. Certificate It is hereby certified on the basis of control carried out, that the declaration by the exporter is correct.  SEOUL 18 APR 2018 Place and date, signature and Stamp of Certifying Authority  Deputy Director EUN-SUK HAN	

*Identify the authenticity of certificate for verification with the website.(http://cert.korcham.net/search)

1/1

※ 출처 ; 대한상공회의소



[부록 4]

영문 위생증명서 예시

ISSUE NO:



식품의약품안전처

#176-39 Cheomdangwagi-ro, Buk-gu Gwangju, Korea, Tel:+ 82-62-602-1300,
Fax:+ 82-62-602-1400

Certificate No. :

HEALTH CERTIFICATE

MM/DD/YY : 10/17/18

This is to certify that the following products have been produced and distributed in a sanitary manner and are suitable for human consumption according to the Food Sanitation Act of the Republic of Korea

■ Name and address of production establishment :

■ Country of destination : China

■ Name and address of consignor :

■ Name and address of consignee :

■ Remarks :

Minist... and ...
Drug Safety

Signature : Jae Seon Kim

Director of General Services Division
Gwangju Regional Food & Drug Administration
Republic of Korea



[부록 5]

사전포장식품 라벨 통칙(GB 7718-2011)

1. 적용 범위

본 표준은 소비자에게 직접 제공되는 사전포장식품 라벨과 소비자에게 간접 제공되는 사전포장식품 라벨에 적용된다. 본 표준은 사전포장식품의 보관·운반 과정에서 식품 보호를 위해 제공되는 식품 보관 및 운송 포장 라벨, 벌크 식품 및 현장 제조 판매 식품의 라벨에는 적용되지 아니 한다.

2. 용어 및 정의

2.1 사전포장식품

사전 정량 포장 또는 포장 재료 및 용기에 제조한 식품으로, 사전 정량 포장 및 사전 정량으로 포장 재료와 용기에 제조된 것, 일정량 범위 내에서 통일된 질량 및 체적 표시를 갖춘 식품을 포함한다.

2.2 식품 라벨

식품 포장의 문구, 그림, 부호 및 모든 설명 내용

2.3 배합 원료

식품을 제조 또는 가공 시 사용하는 것으로, 제품의 모든 물질에 존재(변성 형식으로 존재하는 것도 포함)하며 식품첨가물도 포함된다.

2.4 생산일자(제조일자)

식품이 최종 완제품이 된 날짜이며, 포장된 날짜도 포함한다. 즉 식품을 포장재 또는 용기에 넣어 최종 판매 단위로 완성된 날짜이다.

2.5 품질 보증 기간

사전포장식품이 라벨 중 명시하고 있는 보관 조건 하에서 품질을 유지하는 기한이다. 이 기한 내에서 최적화된 제품을 판매할 수 있으며 라벨에서 설명할 필요가 없거나 설명되어 있는 특유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다.

2.6 규격

동일한 사전포장에 여러 개의 사전포장식품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내용량 및 포함되어 있는 개수 관계에 대한 설명이다.

2.7 주요표시면

사전포장식품 포장재 또는 포장 용기에서 쉽게 눈에 띄는 면을 말한다.



3. 기본 요구사항

- 3.1 법률, 법규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하고 상응하는 식품 안전 표준의 규정에도 부합되어야 한다.
- 3.2 소비자가 제품 구매 시 쉽게 판단하고 읽을 수 있도록 선명하고 눈에 잘 띄며 오래 유지되어야 한다.
- 3.3 이해하기 쉽고 과학적 근거가 있어야 하며, 미신이나 선정적인 내용 또는 다른 식품을 비하하거나 영양 과학 상식에 어긋나는 내용을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 3.4 사실에 기반하고 정확해야 하며 허위, 과대, 소비자에게 오해나 편견을 줄 소지가 있는 문구나 그림 등을 사용하여 식품을 소개해서는 안되며, 글씨의 크기 또는 색상의 차이로 소비자를 오도해서는 아니 된다.
- 3.5 직접적이거나 암시적인 문구, 그림, 부호를 사용해서는 안되며, 소비자가 구매하려는 식품 또는 식품의 어떤 성질과 다른 제품을 혼동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 3.6 질병의 예방, 치료 효과가 있는 내용을 명시하거나 암시해서는 안되며, 보건 식품이 아닌 경우 건강 유지 및 보장 기능을 명시하거나 암시해서는 아니 된다.
- 3.7 식품이나 해당 포장재(용기)와 분리해서는 아니 된다.
- 3.8 표준 한자(상표 제외)를 사용해야 한다. 꾸미는 역할을 하는 각종 예술적인 글씨는 판별이 용이하도록 정확하게 표기해야 한다.
 - 3.8.1 병음(발음기호)이나 소수민족 문자를 동시에 사용할 수는 있으나 병음 표기가 상응하는 한자보다 크게 표기되어서는 아니 된다.
 - 3.8.2 외국어를 동시에 사용할 수는 있으나 해당 중국어와 대응 관계가 있어야 한다(상표, 수입 식품의 제조자 및 주소, 해외 판매자의 명칭 및 주소, 웹사이트 제외). 모든 외국어 표기는 상응하는 한자보다 커서는 아니 된다(상표 제외).
- 3.9 사전포장식품 포장재 및 포장 용기의 최대 표면적(최대 표면적 계산법은 부록A 참조)이 35cm^2 이상이면 강제 표시 내용의 문자, 부호, 숫자의 크기는 1.8mm보다 작아서는 아니 된다.
- 3.10 판매 단위의 포장에 다양한 품종, 개별 포장으로 단독 판매가 가능한 식품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개별 포장된 식품마다 따로 식품표시를 해야 한다.
- 3.11 외부 포장에 식별이 용이하거나 외포장재를 통해 내부 포장재(용기)를 분명하게 식별할 수 있는 모든 강제 표시 내용 또는 일부 강제 표시 내용은 외포장재에 상응하는 내용을 중복 표시할 수 없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외부 포장에 요구사항에 따라 모든 강제 표시 내용을 표시해야 한다.

4. 표시 내용

4.1 소비자에게 직접 제공되는 사전포장식품 라벨 표시 사항

4.1.1 일반 요구사항

소비자에게 직접 제공되는 포장 식품 라벨은 식품명, 배합원료표, 내용량 및 규격, 생산자 및(또는) 중개 판매자의 명칭, 주소 및 연락처, 생산 일자 및 품질 보증 기간, 보관 조건, 식품 생산허가증 번호, 제품 표준 코드 및 기타 표시가 필요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4.1.2 식품명

4.1.2.1 식품 라벨에서 가장 잘 보이는 위치에 식품의 속성을 반영하는 전용 명칭을 분명하게 표기해야 한다.

4.1.2.1.1 국가표준, 업종표준 또는 지방표준에서 규정한 명칭이 하나 또는 하나 이상인 식품의 경우, 그 중 한 가지를 선택하거나 동일한 효력이 있는 명칭을 선택해야 한다.

4.1.2.1.2 국가표준, 업종표준 또는 지방표준에 규정된 명칭이 없는 식품의 경우, 소비자가 오해 또는 혼동할 소지가 없도록 상용하는 명칭이나 대중적인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

4.1.2.2 ‘신규 명칭’, ‘특이 명칭’, ‘음역 명칭’, ‘브랜드 명칭’, ‘지역 속어 명칭’ 또는 ‘상표 명칭’을 표시할 때, 명칭을 표시한 동일한 표시면에 4.1.2.1에서 규정한 명칭을 표기해야 한다.

4.1.2.2.1 ‘신규 명칭’, ‘특이 명칭’, ‘음역 명칭’, ‘브랜드 명칭’, ‘지역 속어 명칭’ 또는 ‘상표 명칭’에 식품 속성을 오해할 소지가 있는 문구 또는 용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명칭을 표시한 동일 표시면 부근에 동일한 폰트를 사용하여 식품 속성을 반영하는 전용 명칭을 표기해야 한다.

4.1.2.2.2 식품의 실제 속성을 반영하는 전용 명칭이 폰트 또는 폰트 색상 차이로 식품 속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을 경우, 동일한 폰트 및 폰트 색상으로 식품 속성을 반영하는 전용 명칭을 표기해야 한다.

4.1.2.3 소비자가 식품의 실제 속성, 물리적 상태 또는 제조 방법을 오해하거나 혼동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식품명 앞부분이나 뒷부분에 상응하는 단어나 문구(건조된, 농축된, 복원된, 훈제의, 기름에 튀긴, 분말의, 과립형 등)를 넣을 수 있다.

4.1.3 배합원료표

4.1.3.1 사전포장식품의 라벨에 배합원료표를 표시해야 한다. 배합원료표의 각 종 배합 원료는 4.1.2의 요구사항에 따라 상세 명칭을 표시해야 하고, 식품첨가물은 4.1.3.1.4의 요구사항에 따라 명칭을 표시한다.



- 4.1.3.1.1 배합원료표는 ‘배합원료’ 또는 ‘배합원료표’를 색인으로 사용해야 한다. 가공과정에서 사용되는 원료가 이미 기타 성분(술, 간장, 식초 등 발효 제품)으로 바뀌었을 경우, ‘원료’ 또는 ‘원료 및 보조 재료’를 사용하여 ‘배합원료’ 또는 ‘배합원료표’를 대체할 수 있으며, 본 표준에서 해당하는 조항의 요구사항에 따라 각종 원료, 보조 재료 및 식품첨가물을 표기한다. 가공보조제는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 4.1.3.1.2 각종 배합원료는 식품 가공 및 제조 시, 첨가량이 많은 순서로 하나씩 나열한다. 첨가량이 2%를 넘지 않는 배합원료는 순서대로 나열하지 않아도 된다.
- 4.1.3.1.3 배합원료가 두 가지 또는 두 가지 이상의 기타 배합원료로 구성된 복합 원료(복합 식품첨가물은 제외)일 경우, 배합원료표에 복합 배합원료 명칭을 표시하고, 복합 배합원료의 최초 배합원료를 괄호 안에 첨가량이 많은 순서로 표시해야 한다. 국가표준, 업종표준 또는 지방표준에 규정되어 있는 복합 배합 원료이고 첨가량이 총 식품량의 25% 미만일 경우, 복합 배합원료의 최초 배합원료는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 4.1.3.1.4 식품첨가물은 GB 2760의 식품첨가물 통용 명칭을 표시해야 한다. 식품첨가물 통용 명칭은 식품첨가물의 상세 명칭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식품첨가물의 기능별 명칭을 표시할 수 있고 식품첨가물의 상세 명칭 또는 국제 코드(INS 번호)(표시 형식은 부록B 참조)를 동시에 표시할 수 있다. 동일 사전포장식품의 라벨에 부록B의 형식에 따라 식품첨가물을 표시해야 한다. 식품첨가물의 기능별 명칭과 국제코드를 동시에 표시할 경우, 아직 국제코드가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가 필요한 식품첨가물은 해당 상세 명칭을 표시할 수 있다. 식품첨가물의 명칭에는 해당 제조법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첨가량이 총 식품량의 25%보다 적은 복합 배합 원료에 함유된 식품첨가물의 경우, GB 2760 원칙에 부합되고 최종 완제품에서 공정 효과를 낼 수 없다면,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 4.1.3.1.5 식품 제조 또는 가공 과정에서 첨가한 물도 배합원료표에 표기해야 한다. 가공 과정에서 휘발된 물이나 기타 휘발성 배합원료는 표시할 필요가 없다.
- 4.1.3.1.6 식용 가능한 포장재도 배합원료표에 최초 배합 원료를 표시해야 하며 별도의 법률 법규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4.1.3.2 아래의 식품 배합원료는 표1의 방식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표1 배합원료 표시 방식

배합원료 유형	표시 방식
각종 식물유 또는 정제 식물유, 올리브유 제외	‘식물유’ 또는 ‘정제 식물유’, 경화(Hydrogenated) 처리를 거친 경우 ‘경화’ 또는 ‘일부 경화’를 표시해야 한다.
각종 전분, 화학 변성 전분 제외	‘전분’
첨가량이 2%보다 적은 각종 향신료 또는 향신료 침전물(개별 또는 합계)	‘향신료’, ‘향신료류’ 또는 ‘복합향신료’
껌 베이스 캔디의 각종 껌 베이스 제제	‘추잉껌 기초제’, ‘껌 베이스’
첨가량이 10%보다 적은 각종 당절임 건조 과일	‘당절임 과일’, ‘당절임 건조 과일’
식용 에센스, 향료	‘식용 에센스’, ‘식용 향료’, ‘식용 에센스 향료’

4.1.4 배합원료의 정량 표시

4.1.4.1 식품 라벨 또는 식품 설명서에 한 가지 또는 한 가지 이상의 가치가 있고 특성이 있는 배합원료 또는 성분을 첨가한 사실을 특별히 강조할 경우에는 강조하려는 배합원료 또는 성분의 첨가량 또는 제품 중 함량을 표시해야 한다.

4.1.4.2 식품의 라벨 상에 한 가지 또는 한 가지 이상의 배합원료 또는 성분의 함량이 적거나 없다는 사실을 특별히 강조할 경우, 강조하려는 배합원료 또는 제품 중 함량을 표시해야 한다.

4.1.4.3 식품명에 언급된 어떤 배합원료 또는 성분이 라벨에 특별히 강조되지 않았을 경우, 해당 배합원료나 성분의 첨가량 또는 제품 중 함량을 표시할 필요가 없다.

4.1.5 내용량 및 규격

4.1.5.1 내용량 표시에는 내용량, 숫자 및 법정 계량 단위(표시 형식은 부록C 참조)를 표시해야 한다.

4.1.5.2 법정 계량 단위에 따라 아래의 형식에 따라 포장재(용기)의 식품의 내용량을 표시해야 한다.

- 액체 식품은 부피 단위인 리터(L), (l), 밀리리터(mL), (ml)를 사용하거나 또는 질량 단위인 그램(g), 킬로그램(kg)을 사용한다.
- 고체 식품은 질량 단위인 그램(g), 킬로그램(kg)을 사용한다.
- 반고체 또는 점성 식품은 질량 단위인 그램(g), 킬로그램(kg)을 사용하거나 부피 단위인 리터(L), (l), 밀리리터(mL), (ml)를 사용한다.



4.1.5.3 내용량의 계량 단위는 표2의 내용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표2 내용량 계량 단위의 표시 방식

계량 방식	내용량(Q)의 범위	계량 단위
부피	Q<1,000mL Q≥1,000mL	밀리리터(mL), (ml) 리터(L), (l)
질량	Q<1,000g Q≥1,000g	그램(g) 킬로그램(kg)

4.1.5.4 내용량 문자 부호의 최소 크기는 표3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표3 내용량 문자 부호의 최소 크기

내용량(Q)의 범위	글자 부호 최소 크기(mm)
Q≤50mL/Q≤50g	2
50mL<Q≤200mL/50g<Q≤200g	3
200mL<Q≤1L/200g<Q≤1kg	4
Q>1kg/ Q>1L	6

4.1.5.5 내용량은 식품명과 함께 포장재 또는 용기의 동일 주표시면에 표시해야 한다.

4.1.5.6 용기 중 고체, 액체 두 가지 상태의 물질이 함유되어 있는 식품이고 고체 물질이 주요 식품 배합원료일 경우, 내용량을 표시하는 것 외에 질량이나 질량 분수의 형식으로 고형물의 함량도 표시해야 한다(표시 형식은 부록C 참조).

4.1.5.7 동일 사전포장에 여러 단일 사전포장 제품이 들어있을 경우, 최종 포장에는 내용량과 규격을 모두 표시해야 한다.

4.1.5.8 규격은 단일 사전포장식품의 내용량과 개수를 표시하거나 개수만을 표시해야 하며, '규격' 두 글자를 표시하지 아니 한다. 단일 사전포장식품의 규격은 내용량을 의미한다(표시 형식은 부록C 참조).

4.1.6 생산자, 중개 판매자의 명칭, 주소 및 연락처

4.1.6.1 생산자의 명칭, 주소 및 연락처를 표시해야 한다. 생산자 명칭과 주소는 법에 의거하여 등록되고 제품 안전 품질을 책임질 수 있는 생산자의 명칭, 주소를 표시해야 한다. 다음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다음의 요구사항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 4.1.6.1.1 법에 의거하여 독립적으로 법적 책임을 지는 그룹 회사, 그룹 회사의 자회사는 각자의 명칭과 주소를 표시해야 한다.
- 4.1.6.1.2 법에 의거하여 독립적으로 법적 책임을 질 수 없는 그룹 회사의 자회사 또는 그룹 회사의 생산기지는 그룹 회사와 지사(생산 기지)의 명칭, 주소를 표시해야 한다. 또는 회사명, 주소 및 생산지만 표시할 경우 생산지는 행정 구획에 따라 2급 행정구역까지 표시해야 한다.
- 4.1.6.1.3 위탁 가공으로 생산되는 사전포장식품의 경우, 위탁 의뢰 업체와 위탁 받은 업체의 명칭과 주소를 표시해야 한다. 또는 위탁 업체의 명칭과 주소 및 생산지만 표시할 경우, 행정 구획에 따라 2급 행정구역까지 표시해야 한다.
- 4.1.6.2 법적 책임을 지는 생산자나 중개 판매자의 연락처 항목(전화, 팩스, 홈페이지 등 또는 우편번호가 함께 기재된 주소)에서 최소 1가지 이상을 표시해야 한다.
- 4.1.6.3 수입 사전포장식품은 원산지 국가명 또는 지역명(예: 홍콩, 마카오, 대만) 및 중국에 법에 의거하여 등록된 대리업체, 수입업체 또는 중개 판매자의 명칭, 주소 및 연락처를 표시해야 하고, 생산자 명칭, 주소 및 연락처는 표시하지 아니한다.
- 4.1.7 날짜 표시
- 4.1.7.1 사전포장식품의 생산일자 및 품질 보증 기간을 분명하게 표시해야 한다. 만약 ‘포장재 어떤 부분을 참조하세요’의 형식을 채택한다면 해당 포장재의 구체적인 위치를 표시해야 한다. 일자 표시는 절대 별도의 스티커 부착, 보충 인쇄, 수정 (표시 형식은 부록C 참조)을 할 수 없다.
- 4.1.7.2 동일 사전포장 중 생산일자와 품질 보증 기한이 표시된 단일 사전포장식품이 여러 개 들어 있을 경우, 외부 포장에 표시할 품질 보증 기간은 가장 빠른 날짜의 제품의 품질 보증 기간으로 계산해야 한다. 외부 포장에 표시된 생산일자는 가장 빠른 날짜에 생산된 제품의 생산일자를 기준으로 하거나 외부 포장이 완성되어 완제품이 된 날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또 외부 포장에 단일 제품 각각의 생산일자와 품질 보증 기간을 따로 표시해도 된다.
- 4.1.7.3 년, 월, 일의 순서에 따라 날짜를 표시해야 하며, 이 순서가 아닐 경우에는 날짜 표시 순서를 명시해야 한다(표시 형식은 부록C 참조).
- 4.1.8 보관 조건
- 사전포장식품 라벨은 보관 조건을 표시해야 한다(표시 형식은 부록C 참조).
- 4.1.9 식품 생산허가증 일련번호
- 사전포장식품 라벨은 식품 생산허가증 일련번호를 표시해야 하며 표시 형식은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4.1.10 제품 표준코드

국내에서 생산되고 국내에서 판매되는 사전포장식품(수입 사전포장식품 제외)은 제품의 표준 코드 및 시퀀스 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4.1.11 기타 표시 사항

4.1.11.1 방사선 조사식품

4.1.11.1.1 이온화 방사선이나 이온화 에너지 처리를 거친 식품으로, 식품명 부근에 ‘조사식품’을 표시해야 한다.

4.1.11.1.2 이온화 방사선이나 이온화 에너지 처리를 거친 모든 배합원료이며 배합원료표에 표기해야 한다.

4.1.11.2 유전자재조합 식품

유전자재조합 식품의 표시는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4.1.11.3 영양 라벨

4.1.11.3.1 특수 식이류 식품 및 영유아 전용 주·보조식품은 주요 영양 성분 및 함량을 표시해야 하고 표시 방법은 GB 13432를 준수해야 한다.

4.1.11.3.2 기타 사전포장식품에 영양 라벨이 필요할 경우 표시 방법은 관련 법규의 기준을 참조한다.

4.1.11.4 품질 등급

식품의 해당 표준에서 품질 등급을 규정한 경우 품질 등급을 표시해야 한다.

4.2 소비자에게 직접적으로 제공되지 않는 사전포장식품 라벨 표시 사항

소비자에게 직접적으로 제공되지 않는 사전포장식품 라벨은 4.1 이하의 해당 요구 사항에 따라 식품명, 규격, 내용량, 생산일자, 품질 보증 기간 및 보관 조건을 표시해야 하며, 라벨에 표시가 없는 기타 사항은 설명서나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4.3 표시 내용의 면제

4.3.1 다음 나열된 사전포장식품은 품질 보증 기간 표시가 면제된다. 알코올 농도 10% 이상의 알코올 음료(주류), 식초, 식염, 고체 상태의 설탕, 조미료

4.3.2 사전포장식품의 포장재 또는 포장 용기의 최대표면적이 10cm²보다 작을 경우 (최대표면적 계산방법은 부록A 참조), 제품명, 내용량, 생산자(또는 중개 판매자)의 명칭과 주소만을 표시할 수 있다.

4.4 권장 표시 사항

4.4.1 로트 번호

제품의 필요에 따라 제품 로트 번호를 표시할 수 있다.

4.4.2 섭취 방법

제품의 필요에 따라 용기의 개봉 방법, 섭취 방법, 조리 방법, 물을 붓고 제조하는 방법 등 소비자에게 유익한 도움말을 표시할 수 있다.

4.4.3 알레르기 유발물질

4.4.3.1 다음의 식품 및 관련 제품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으므로 배합원료를 사용할 때 배합원료표에 이해하기 쉬운 명칭을 쓰거나 배합원료표 부근에 추가 설명을 덧붙인다.

- a) 글루텐 함유 곡물 및 해당 제품(밀, 호밀, 보리, 귀리, 스펠트밀 또는 교배 품종 계열)
- b) 갑각류 동물 및 갑각류 동물 제품(새우, 바닷가재, 게 등)
- c) 어류 및 어류 제품
- d) 알류 및 알류 제품
- e) 땅콩 및 땅콩 제품
- f) 대두 및 대두 제품
- g) 우유 및 우유 제품(유당 포함)
- h) 전과류 및 씨앗류 제품

4.4.3.2 가공 과정에서 상기한 식품 또는 관련 제품이 사용될 경우 배합원료표 부근에 추가로 표시한다.

5 기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특수 심의 및 승인이 필요한 식품의 경우, 라벨은 관련 규정에 따라 이행한다.

[부록A]

포장재 또는 포장 용기 최대 표면적 계산 방법

A.1 직육면체 형태의 포장재 또는 포장 용기 계산 방법

직육면체 포장재나 포장 용기의 한쪽 측면 최대 높이(cm)에 너비(cm)를 곱한다.

A.2 원기둥 형태의 포장재, 포장 용기 또는 원기둥과 유사한 형태의 포장 용기 계산 방법
원기둥 포장재나 포장 용기의 높이(cm)에 원 둘레(cm)의 40%를 곱한다.

A.3 기타 형태의 포장재 또는 포장 용기 계산 방법

포장재나 포장 용기 총 표면적의 40% 이다.

포장재나 포장 용기에 명확한 주표시면이 있다면 주표시면의 면적을 최대 표면적으로 해야 한다. 포장봉지 등의 표면적을 계산할 때, 밀봉하는 가장 자리 부분의 길이는



제외해야 한다. 병 형태 또는 캔 형태 포장의 표면적을 계산할 때는 어깨, 목, 상단 및 하단의 돌출 부분은 포함하지 아니 한다.

[부록B]

식품 첨가물의 배합원료표에서의 표시 형식

B.1 첨가량이 많은 순서로 식품첨가물의 상세 명칭 모두 표시

배합원료: 물, 전지분유, 휘핑크림, 식물유, 초콜릿(코코아 액체덩어리, 백설탕, 코코아 버터, 인지질, 리시놀레산 지방산, 식용 에센스, 레몬황), 포도시럽, 프로필렌 글리콜 지방산 에스테르, 카라기난, 구아검, 빅신, 말토덱스트린, 식용 향료

B.2 첨가량이 많은 순서로 식품첨가물의 기능 유형 명칭 및 국제 코드 모두 표시

배합 원료: 물, 전지분유, 휘핑크림, 식물유, 초콜릿(코코아액체덩어리, 백설탕, 코코아 버터, 유화제(322, 476), 식용 에센스, 색소(102)), 포도시럽, 유화제(477), 증점제 (407, 412), 색소(160b), 말토덱스트린, 식용 향료

B.3 첨가량이 많은 순서로 식품첨가물의 기능 유형 명칭 및 상세 명칭 모두 표시

배합 원료: 물, 전지분유, 휘핑크림, 식물유, 초콜릿(코코아 액체덩어리, 백설탕, 코코아버터, 유화제(인지질, 리시놀레산 지방산), 식용 에센스, 색소(레몬황)), 포도시럽, 유화제(프로필렌 글리콜 지방산 에스테르), 증점제(캐라기난, 구아검), 색소(빅신), 말토덱스트린, 식용 향료

B.4 식품첨가물 통합 표시 형식 구축

B.4.1 일반 원칙

직접 사용한 식품첨가물은 식품첨가물 항목에 표시해야 한다. 영양강화제, 식용 에센스 향료, 껌 베이스 캔디 중 기초제 물질은 배합 원료 표의 식품첨가물 이외 항목에 표시할 수 있다. 간접 사용한 식품첨가물은 식품첨가물 항목에 표시하지 아니 한다. 식품첨가물 항목의 배합 원료 표의 표시 순서는 이 항목에 들어가야 하는 각종 식품첨가물의 총 무게에 따라 결정된다.

B.4.2 식품첨가물 상세 명칭 모두 표시

배합원료: 물, 전지분유, 휘핑크림, 식물유, 초콜릿(코코아액체덩어리, 백설탕, 코코아기름, 인지질, 리시놀레산 지방산, 식용 에센스, 레몬황), 포도시럽, 식품 첨가물(프로필렌 글리콜 지방산 에스테르, 캐라기난, 구아검, 빅신), 말토덱스트린, 식용 향료

B.4.3 식품첨가물 기능 유형 명칭 및 국제 코드 모두 표시

배합원료: 물, 전지분유, 휘핑크림, 식물유, 초콜릿(코코아액체덩어리, 백설탕, 코코아

버터, 유화제(322, 476), 식용 에센스, 색소(102)), 포도시럽, 식품첨가물(유화제(477), 증점제(407, 412), 색소(160b)), 말토덱스트린, 식용 향료

B.4.4 식품첨가물 기능 유형 명칭 및 상세 명칭 모두 표시

배합 원료: 물, 전지분유, 휘핑크림, 식물유, 초콜릿(코코아엑체덩어리, 백설탕, 코코아 버터, 유화제(인지질, 리시놀레산 지방산), 식용 에센스, 색소(레몬황)), 포도 시럽, 식품첨가물(유화제(프로필렌 글리콜 지방산 에스테르), 증점제(캐라지난, 구아검), 색소(빅신)), 말토덱스트린, 식용 향료

[부록C]

일부 라벨 항목의 권장 표시 형식

C.1 개요

본 부록은 예시 형식으로 포장 식품의 일부 라벨 항목의 권장 표시 형식을 제공하며 상응하는 항목을 표시할 때 선택할 수 있으나 이 형식으로 제한하지 아니 한다. 필요할 경우 식품의 특수성이나 포장의 특징 등을 고려하여 권장 형식을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권장 형식과는 기본적으로 내용이 동일해야 한다.

C.2 내용량 및 규격의 표시

간단한 설명을 위해 내용량의 예시는 동일 질량 계량 방식을 사용한다. 라벨에는 실제 제품에 적용된 계량 단위를 사용해야 하고 실제 상황에 따라 공백이나 기타 기호로 구분하여 가독성을 높일 수 있다.

C.2.1 단일 제품 포장 식품의 내용량(규격)은 다음 표시 형식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내용량(또는 내용량/규격): 450g

내용량(또는 내용량/규격): 225g(200g+25g 증정)

내용량(또는 내용량/규격): 200g+25g 증정

내용량(또는 내용량/규격): (200+25)g

C.2.2 내용량과 고형물은 다음 표시 형식('당절임 배 통조림'이 예시)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내용량(또는 내용량/규격): 425g 고형물: 255g 이상(또는 60% 이상)

C.2.3 동일 포장에 여러 종류의 단일 포장 식품이 들어있을 경우 내용량 및 규격은 모두 다음 표시 형식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내용량(또는 내용량/규격): 40g×5

내용량(또는 내용량/규격): 5×40g

내용량(또는 내용량/규격): 200g(5×40g)

내용량(또는 내용량/규격): 200g(40g×5)



내용량(또는 내용량/규격): 200g(5개)

내용량: 200g 규격: 5×40g

내용량: 200g 규격: 40g×5

내용량: 200g 규격: 5개

내용량(또는 내용량/규격): 200g(100g+ 50g×2)

내용량(또는 내용량/규격): 200g(80g×2 + 40g)

내용량: 200g 규격: 100g+ 50g×2

내용량: 200g 규격: 80g×2 + 40g

C.2.4 동일 포장에 여러 유형의 단일 제품이 들어있는 포장 식품의 내용량과 규격은 다음 표시형식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내용량(또는 내용량/규격): 200g(A제품40g×3, B제품40g×2)

내용량(또는 내용량/규격): 200g(40g×3, 40g×2)

내용량(또는 내용량/규격): 100g A제품, 50g×2 B제품, 50g C제품

내용량(또는 내용량/규격): A제품 : 100g, B제품 : 50g×2, C제품 : 50g

내용량/규격: 100g(A제품), 50g×2(B제품), 50g(C제품)

내용량/규격: A제품 100g, B제품 50g×2, C제품 50g

C.3 날짜의 표시

년, 월, 일은 공백, 슬래시, 하이픈, 마침표 등의 기호로 구분하거나 기호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 연도는 보통 4자리 숫자로 표시하며 소포장 식품은 2자리 숫자로 표시할 수 있다. 월, 일 표시는 2자리 숫자로 표시해야 한다.

날짜는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표시할 수 있다.

2010년 3월 20일

2010 03 20, 2010/03/20, 20100320

20일 3월 2010년, 3월 20일 2010년

(월/일/년): 03 20 2010, 03/20/2010, 03202010

C.4 품질보증기간의 표시

품질보증기간은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표시할 수 있다.

가능한 ……전까지 드세요

…일 전까지 다 드세요

품질보증기간 …(까지)/품질 보증 기간 ××개월(또는 ××일/×× 일간/××주/×년)

C.5 보관 조건의 표시

보관 조건은 ‘보관 조건’, ‘저장 조건’, ‘저장 방법’ 등의 타이틀로 표시하거나 타이틀



없이 표시할 수 있다.

보관 조건은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표시할 수 있다.

상온(또는 냉동/냉장/그늘/서늘하고 건조한 곳) 보관

×× - ×× ℃ 보관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십시오.

상온 보관, 개봉 후 반드시 냉장 보관

온도: ≤××℃, 습도: ≤×× %

**[부록 6]****사전포장식품 영양 라벨 통칙(GB 28050-2011)****1 범위**

본 표준 사전포장식품 영양 라벨에 제시하는 영양정보의 묘사와 설명에 적용된다. 본 표준 보건식품 및 사전포장 특수식이용 식품(预包装特殊膳食用食品)의 영양 라벨표기에 적용하지 않는다.

2 용어와 정의**2.1 영양 라벨**

사전포장식품라벨에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식품영양정보와 특성의 설명이며 영양성분표, 영양 표기 및 영양성분기능 표기를 포함한다. 영양 라벨은 사전포장식품라벨의 일부분이다.

2.2 영양소

식품 중에 특정한 생리역할을 갖추어 기체생장, 발육, 활동, 번식 및 정상적 대사의 유지에 필요한 물질을 말하며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미네랄 및 비타민을 포함한다.

2.3 영양성분

식품 중의 영양소 및 영양소 이외의 영양과(혹은) 생리기능을 갖추는 기타 식물성분을 가리킨다. 각 영양성분의 정의는 GB/Z 21922 <식품영양성분기본용어>에서 참조할 수 있다.

2.4 핵심영양소

영양 라벨 중의 핵심영양소는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과 나트륨을 포함한다.

2.5 영양성분표

식품영양성분명칭, 함량 및 그 영양소참고치에 차지한 백분비를 표기하는 규범한 표

2.6 영양소기준치(NRV)

식품 영양 라벨만 적용하여 식품영양성분 함량의 참고치를 비교하는 데에 적용된다.

2.7 영양표기

식품영양특성에 대한 묘사와 표기, 예를 들어 열량 수준, 단백질 함량 수준. 영양표기는 함량표기와 비교표기를 포함한다.

2.7.1 함량표기

식품 중 열량 혹은 영양성분 함량수준에 관한 표기한다. 표기용어는 ‘고’, ‘저’ 혹은 ‘없음’ 등 포함한다.

2.7.2 비교표기

소비자가 알고 있는 같은 종류인 식품의 영양성분함량 혹은 열량을 비교한 후의 표기. 표기용어는 ‘증가’ 혹은 ‘감소’ 등을 포함한다.

2.8 영양성분기능표기

한 영양성분이 인체 정상적 성장, 발육 및 정상생리기능 등 유지할 수 있는 역할의 표기

2.9 반올림 간격

반올림 최소 수치의 단위

2.10 식용 가능 부분

사전포장식품의 순함량은 식용 불가한 부분을 제거하여 남은 부분

3 기본요구사항

3.1 사전포장식품 영양 라벨에 표기하는 모든 영양정보가 사실이어야 하며 객관적이어야 한다. 허위정보를 표기하는 것과 식품의 영양역할 및 기타 역할을 과대하면 안 된다.

3.2 사전포장식품 영양 라벨은 중문을 사용해야 한다. 사전포장식품 라벨은 동시에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지만 글자크기는 해당 중국어보다 작아야 한다.

3.3 영양성분표는 ‘블록다이어그램’ 형식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블록 사이즈가 제한 없음, 포장의 기선과 수직해야 한다. 표의 제목은 ‘영양성분표’이어야 한다.

3.4 식품영양성분함량은 구체적 수치로 표기해야 하며 수치는 원료계산 혹은 제품점검으로 취득할 수 있다. 각 영양성분의 영양소기준치(NRV)는 부록A 참조

3.5 영양 라벨의 양식은 부록B 참조, 식품업체가 식품의 영양특성, 포장면적의 크기와 모양 등 요소에 따라 그 중의 한 가지 양식을 선택할 수 있다.

3.6 영양 라벨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최소한 포장단위에 표기해야 한다.

4 강제 표기사항

4.1 모든 사전포장식품의 영양 라벨이 강제로 표기해야 하는 내용은 열량, 핵심영양소의 함량 및 그 영양소기준치(NRV)에 차지한 백분비를 포함한다. 기타 성분을 표기할 때 적당한 형식을 취하여 열량과 핵심영양소의 표기를 더 눈에 띄게 해야 한다.

4.2 열량과 핵심영양소 이외에 기타 영양성분에 대하여 영양표기 혹은 영양성분기능표기를 할 때 영양성분표에서 해당되는 영양성분의 함량 및 그 영양소기준치에 차지한 백분비도 표기해야 한다.

4.3 영양강화제를 사용한 사전포장식품은 4.1 제시한 내용 이외에 영양성분표 중에 강화한 후 식품 중 해당된 영양성분의 함량 및 그 영양소기준치(NRV)에 차지한 백분비도 표기해야 한다.



4.4 식품배합재료가 수소화와 (혹은) 부분 수소화유지를 함유할 경우, 영양성분표에 트랜스 지방(산)의 함량도 표기해야 한다.

4.5 상술 규정하지 않는 영양소기준치(NRV)의 영양성분은 함량만 표기하면 된다.

5 선택 표기사항

5.1 상술 강제로 표기하는 내용을 제외하고 영양성분표 중에 표1 제시한 기타 성분도 선택 표기할 수 있다.

5.2 한 영양성분 함량 표기수치 표C.1의 함량요구와 제한조건에 부합할 경우, 해당된 성분이 함량표기를 표기할 수 있다. 표기방식은 표C.1 참조. 한 영양성분 함량은 표C.3의 요구와 조건에 부합할 경우, 해당된 성분이 비교표기를 표기할 수 있다. 표기방식은 표C.3 참조. 한 영양성분은 동시에 함량표기 및 비교표기의 요구에 부합할 경우, 두 가지 표기방식을 동시 사용할 수 있거나 함량표기만 사용해도 된다. 함량표기와 비교표기의 동의어는 표C.2와 표C.4참조

5.3 한 영양성분의 함량 표기수치 함량표기 혹은 비교표기의 요구와 조건에 부합할 경우, 부록D에 제시하는 상응한 하나 혹은 여러 개의 영양성분기능표기 기준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 기능표기용어에 대하여 어떤 형식의 수정, 첨가 및 합병을 하면 안 된다.

6 영양성분의 표기방식

6.1 사전포장식품 중 열량과 영양성분의 함량은 매100그램(g)과(혹은) 매100밀리리터(mL)와 (혹은) 1인 분량의 식품 가식부 중의 구체적인 수치로 표기해야한다. 1인 분량으로 표기할 때 식품의 양을 표기해야 한다. 1인 분량의 크기 식품의 특징 혹은 추천물량에 의거하여 규정한다.

6.2 영양성분표 중 강제표기 및 선택 가능 표기의 영양성분의 명칭, 순서, 표기단위, 반올림 간격, '0'경계치 등 표1 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한 영양성분을 표기하지 않는 경우, 순서대로 위로 이동한다.

6.3 표1을 제외하고 GB 14880과 위생부 공고 중 강화가 허락된 기타 영양성분을 표기할 때 표1에 나열한 영양소 뒤에 표기해야 한다.

표1 열량, 영양성분명칭, 순서, 단위, 반올림 단위 및 '0' 경계치

열량, 영양성분의 명칭 및 순서	단위 ^a	반올림 간격	'0'경계치 (매100g 혹은 100ml) ^b
열량	킬로줄(kJ)	1	≤17kJ
단백질	그램(g)	0.1	≤0.5g
지방	그램(g)	0.1	≤0.5g
포화지방(산)	그램(g)	0.1	≤0.1g
트랜스지방(산)	그램(g)	0.1	≤0.3g
단불포화지방(산)	그램(g)	0.1	≤0.1g
다불포화지방(산)	그램(g)	0.1	≤0.1g
콜레스테롤	밀리그램(mg)	1	≤5mg
탄수화물	그램(g)	0.1	≤0.5g
설탕(유당 ^c)	그램(g)	0.1	≤0.5g
식이섬유(혹은 단체성분, 혹은 수용성 식이섬유, 비수용성 식이섬유)	그램(g)	0.1	≤0.5g
나트륨	밀리그램(mg)	1	≤5mg
비타민A	마이크로그램 레티놀당량(μgRE)	1	≤8μgRE
비타민D	마이크로그램(μg)	0.1	≤0.1μg
비타민E	밀리그램 알파토코페롤(mg α-TE)	0.01	≤0.28mg α-TE
비타민K	마이크로그램(μg)	0.1	≤1.6μg
비타민B ₁ (티아민)	밀리그램(mg)	0.01	≤0.03mg
비타민B ₂ (리보플라빈)	밀리그램(mg)	0.01	≤0.03mg
비타민B ₆	밀리그램(mg)	0.01	≤0.03mg
비타민B ₁₂	마이크로그램(μg)	0.01	≤0.05μg
비타민C(아스코르브산)	밀리그램(mg)	0.1	≤2.0mg
니코틴산	밀리그램(mg)	0.01	≤0.28mg
엽산	마이크로그램(μg) 혹은 식이엽산당량(μg DFE)	1	≤8μg
판토텐산	밀리그램(mg)	0.01	≤0.10mg
비오틴	마이크로그램(μg)	0.1	≤0.6μg
콜린	밀리그램(mg)	0.1	≤9mg



열량, 영양성분의 명칭 및 순서	단위 ^a	반올림 간격	'0'경계치 (매100g 혹은 100ml) ^b
인	밀리그램(mg)	1	≤14mg
칼륨	밀리그램(mg)	1	≤20mg
마그네슘	밀리그램(mg)	1	≤6mg
칼슘	밀리그램(mg)	1	≤8mg
철	밀리그램(mg)	0.1	≤0.3mg
아연	밀리그램(mg)	0.01	≤0.30mg
요오드	마이크로그램(μ g)	0.1	≤3.0 μ g
셀레늄	마이크로그램(μ g)	0.1	≤1.0 μ g
구리	밀리그램(mg)	0.01	≤0.03mg
불소	밀리그램(mg)	0.01	≤0.02mg
망가니즈	밀리그램(mg)	0.01	≤0.06mg

a. 영양성분의 표기단위가 표 중의 중문 혹은 영문으로 표기할 수 있거나 둘 다 사용할 수 있음

b. 한 영양성분 함량수치 ≤'0'경계치, 함량은 '0'로 표기해야 함. '분량(份)'으로 계량단위를 할 사용할 때 매 100mg 혹은 100ml의 '0' 경계치 규정에 부합해야 함

c. 유 및 유제품의 영양 라벨은 직접 유당을 표기할 수 있음

6.4 제품 유통기한 안에 열량과 영양성분함량 허용오차범위는 표2 제시한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표2 열량 및 영양성분함량의 허용 오차범위

열량과 영양성분	허용오차범위
식품의 단백질, 다불포화지방(산), 탄수화물, 설탕(유당만), 수용성 식이섬유, 비수용성 식이섬유 및 그 단체, 비타민(비타민D, 비타민A 제외), 미네랄(나트륨 제외), 강화한 기타 영양성분	≥80% 표기치
식품 중의 열량 및 지방, 포화지방(산), 트랜스지방(산), 콜레스테롤, 나트륨, 설탕(유당 제외)	≤120% 표기치
식품 중의 비타민A와 비타민D	80%~180% 표기치

7 영양 라벨 강제표기를 면제한 사전포장식품

아래 사전포장식품 강제영양 라벨 표기를 면제한다.

- 생선식품, 날고기, 물고기, 야채, 과일, 난(알)류
- 알코올함량 $\geq$ 0.5%의 음료주류
- 포장 총면적 $\leq$ 100cm² 혹은 최대 표면면적 $\leq$ 20cm²의 식품
- 즉시 제작하여 판매하는 식품
- 포장하는 음용수
- 일일섭취량 $\leq$ 10g 혹은 10mL의 사전포장식품
- 기타 법률 및 법규표준에 규정된 영양 라벨 표기가 불필요한 사전포장식품

영양 라벨 강제표기를 면제한 사전포장식품이 포장에 어떠한 영양정보를 나타낼 경우, 본 표준을 참조하여 이행해야 한다.

[부록A]

식품라벨영양소기준치(NRV) 및 그 사용방법

A.1 식품라벨 영양소 참고치(NRV)

규정된 열량(에너지)과 32종 영양성분의 참고치는 표A.1과 같다.

표A.1 식품라벨영양기준치(NRV)

영양성분	NRV	영양성분	NRV
열량 ^a	8400kJ	엽산	400 μ g DFE
단백질	60g	판토텐산	5mg
지방	$\leq$ 60g	비오틴	30 μ g
포화지방산	$\leq$ 20g	콜린	450mg
콜레스테롤	$\leq$ 300mg	칼슘	800mg
탄수화물	300g	인	700mg
식이섬유	25g	칼륨	2000mg
비타민A	800 μ gRE	나트륨	2000mg
비타민D	5 μ g	마그네슘	300mg
비타민E	14mg α -TE	철	15mg
비타민K	80 μ g	아연	15mg



영양성분	NRV	영양성분	NRV
비타민B ₁	1.4mg	요오드	150μg
비타민B ₂	1.4mg	셀레늄	50μg
비타민B ₆	1.4mg	구리	1.5mg
비타민B ₁₂	2.4μg	불소	1mg
비타민C	100mg	망가니즈	3mg
니코틴산	14mg		

a 열량이 2000kcal와 대등함.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제공하는 열량은 각각 총열량의 13%, 27%, 60% 차지함.

A.2 사용목적 및 방식

열량 혹은 영양성분의 함량을 비교하는 것과 묘사에 적용된다. 영양표기와 0 수치 표기할 때 기준으로 삼는다. 사용방식이 영양성분 함량이 영양소기준치(NRV)에 차지한 백분비. 지정한 NRV%의 반올림 간격은 1이다. 예를 들어 1%, 5%, 16% 등

A.3 사용목적 및 방식

영양성분함량이 영양소기준치(NRV)에 차지한 백분비 계산공식(A.1):

$$NRV\% = \frac{X}{NRV} \times 100\%$$

공식중:

X- 식품 중 모 영양소의 함량

NRV- 해당된 영양소의 영양소기준치

[부록B]

영양 라벨 형식

B.1 본 부록이 사전포장식품 영양 라벨의 형식을 규정한다.

B.2 아래 6가지 형식 중의 하나를 선택하여 영양 라벨을 표기해야 한다.

B.2.1 열량과 핵심영양소만 표기하는 형식

열량과 핵심영양소만 표기하는 형식 예1 참조

예1 :

영양성분표

구분	매100그램(g) 혹은 100밀리리터(ml) 혹은 1인 분량	영양소기준치% 혹은 NRV%
열량	킬로줄(kJ)	%
단백질	그램(g)	%
지방	그램(g)	%
탄수화물	그램(g)	%
나트륨	마이크로그램(μ g)	%

B.2.2 더 많은 영양성분을 표기하는 형식

더 많은 영양성분을 표기하는 형식 예2 참조

예2 :

영양성분표

구분	매100그램(g) 혹은 100밀리리터(ml) 혹은 1인 분량	영양소기준치% 혹은 NRV%
열량	킬로줄(kJ)	%
단백질	그램(g)	%
지방	그램(g)	%
--포화지방	그램(g)	%
콜레스테롤	밀리그램(mg)	%
탄수화물	그램(g)	%
설탕	그램(g)	-
식이섬유	그램(g)	%
나트륨	밀리그램(mg)	%
비타민A	마이크로그램 레티놀당량(μ gRE)	%
칼슘	밀리그램(mg)	%

주의: 적당한 형식을 사용하여 핵심 영양소를 더 눈에 띄게 해야 함.



B.2.3 외국어 표기하는 형식

외국어 표기하는 영양 라벨 예3 참조

예3 :

영양성분표

구분/Items	매100그램(g) / 100밀리리터(ml) 혹은 1인 분량 per 100g/100ml or per serving	영양소기준치% 혹은 NRV%
열량/energy	킬로줄(kJ)	%
단백질/protein	그램(g)	%
지방/fat	그램(g)	%
탄수화물/carbohydrate	그램(g)	%
나트륨/sodium	밀리그램(mg)	%

B.2.4 가로형식

가로형식 영양 라벨 예4 참조

예4 :

영양성분표

구분	매100그램(g)/ 밀리리터(ml) 혹은 1인 분량	영양소 기준치 %	구분	매100그램(g)/ 밀리리터(ml) 혹은 1인 분량	영양소 기준치 %
열량	킬로줄(kJ)	%	단백질	그램(g)	%
탄수화물	그램(g)	%	지방	그램(g)	%
나트륨	밀리그램(mg)	%	-	-	%

주의: 포장특성에 따라 영양성분 좌에서 우까지 나열하여 2칸 혹은 이상 표기한다.

B.2.5 문자형식

포장의 총면적이 100cm²보다 작을 때 영양성분을 표기하는 경우, 표가 아닌 다른 형식으로 표기할 수 있으며 영양기준치(NRV) 생략해도 된다. 포장특성에 따라 영양성분 좌에서 우까지 혹은 위에서 아래로 나열해도 된다. 예5 참조.

예 5:

영양성분/100g, 열량××kJ, 단백질××g, 탄수화물××g, 나트륨××mg.

B.2.6 영양표기와 영양성분기능표기를 표기하는 영양 라벨 예6참조

예6 :

영양성분표

구분	매100그램(g) 혹은 100밀리리터(ml) 혹은 1인 분량	영양소기준치% 혹은 NRV%
열량	킬로줄(kJ)	%
단백질	그램(g)	%
지방	그램(g)	%
탄수화물	그램(g)	%
나트륨	밀리그램(mg)	%

영양표기: 저지방 × ×

영양성분기능표기: 매일 음식 중 지방이 제공하는 열량 비례는 총열량의 30% 초과하면
적당하지 않다.

영양표기, 영양성분기능표기는 라벨의 임의 위치에 표기해도 된다. 글자크기는 식품명칭과
상표보다 크면 안 된다.

[부록C]

열량과 영양성분함량표기와 비교표기의 요구, 조건 및 동의어

C.1 표C.1 사전포장식품열량과 영양성분함량표기의 요구 및 조건

C.2 표C.2 사전포장식품열량과 영양성분함량표기의 동의어

C.3 표C.3 사전포장식품열량과 영양성분비교표기의 요구 및 조건

C.4 표C.4 사전포장식품열량과 영양성분비교표기의 동의어

표C.1 사전포장식품열량과 영양성분함량표기의 요구 및 조건

구분	함량표기방식	함량요구 ^a	제한조건
열량	무열량	≤17kJ/100g(고체) 혹은 100ml(액체)	지방에서 생긴 열량≤ 총열량의 50%
	저열량	≤170kJ/100g(고체) ≤80kJ/100ml(액체)	
단백질	저단백질	단백질에서 생긴 열량≤총열량의 5%	총열량은 100g/mL당 또는 1인 분량당



구분	함량표기방식	함량요구 ^a	제한조건
	저단백질 내원, 혹은 단백질 함유	매 100g 함량 $\geq$ 10% NRV 매 100ml 함량 $\geq$ 5% NRV 혹은 매 420kJ 함량 $\geq$ 5% NRV	
	단백질 함량이 높다. 혹은 풍부하다.	매 100g 함량 $\geq$ 20% NRV 매 100ml 함량 $\geq$ 10% NRV 혹은 매 420kJ 함량 $\geq$ 10% NRV	
지방	무지방 혹은 불포함	$\leq 0.5\text{g}/100\text{g}(\text{고체})$ 혹은 $100\text{mL}(\text{액체})$	
	저지방	$\leq 3\text{g}/100\text{g}(\text{고체})$ $\leq 1.5\text{g}/100\text{mL}(\text{액체})$	
	비계가 적다	지방함량 $\leq$ 10%	축육과 가금만 제한
	탈지	액체 우유와 요구르트: 지방함량 $\leq$ 0.5%; 분유: 지방함량 $\leq$ 1.5%	유제품만 제한
	불포화지방이 없음 혹은 불포함	$\leq 0.1\text{g}/100\text{g}(\text{고체})$ 혹은 $100\text{mL}(\text{액체})$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의 총합만 가리킨다.
	저포화지방	$\leq 1.5\text{g}/100\text{g}(\text{고체})$ $\leq 0.75\text{g}/100\text{mL}(\text{액체})$	1.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의 총합만 가리킨다. 2. 여기에서 생긴 열량 $\leq$ 총 열량의 10%
	트랜스지방이 없음 혹은 불포함	$\leq 0.3\text{g}/100\text{g}(\text{고체})$ 혹은 $100\text{mL}(\text{액체})$	
콜레스테롤	콜레스테롤이 없음 혹은 불포함	$\leq 5\text{mg}/100\text{g}(\text{고체})$ 혹은 $100\text{mL}(\text{액체})$	동시에 저포화지방과 지방의 표기함량요구 및 제한조건에 부합하여야 함
	저콜레스테롤	$\leq 20\text{mg}/100\text{g}(\text{고체})$ $\leq 10\text{mg}/100\text{mL}(\text{액체})$	
탄수화물 (설탕)	설탕이 없음 혹은 불포함	$\leq 0.5\text{g}/100\text{g}(\text{고체})$ 혹은 $100\text{mL}(\text{액체})$	
	저당	$\leq 5\text{g}/100\text{g}(\text{고체})$ 혹은 $100\text{mL}(\text{액체})$	
	저유당	유당함량 $\leq$ 2g/100g(ml)	유제품만 제한
	유당이 없음	유당함량 $\leq$ 0.5g/100g(ml)	



구분	함량표기방식	함량요구 ^a	제한조건
식이섬유	식이섬유 내원 혹은 식이섬유를 함유함	≥3g/100g(고체) ≥1.5g/100ml(액체) 혹은 ≥1.5g/420kJ	식이섬유 총량이 함량요구에 부합함; 혹은 수용성 식이섬유, 비수용성 식이섬유 혹은 단체 성분 중 임의의 하나에 함량 요구에 부합함.
	식이섬유 함량이 높다 혹은 풍부하다, 혹은 내원이 좋다.	≥6g/100g(고체) ≥3g/100ml(액체) 혹은 ≥3g/420kJ	
나트륨	나트륨이 없음 혹은 불포함	≤5mg/100g(고체) 혹은 100ml(액체)	'나트륨' 표기의 표기에 부합한 경우 '염'으로 '나트륨'을 대체할 수 있음. 예를 들어 '저염', '염분 줄임'
	나트륨 함량이 아주 낮다.	≤40mg/100g(고체) 혹은 100ml(액체)	
	나트륨 함량이 적다.	≤120mg/100g(고체) 혹은 100ml(액체)	
비타민	비타민×내원 혹은 비타민 함유×	매 100g 중≥15% NRV 매 100ml 중≥7.5% NRV 혹은 매 420kJ 중≥5%NRV	'다양한 비타민' 함유하는 것은 3가지 및(혹은) 3가지 이상의 비타민함량이 '함유'의 표기 요구에 부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비타민 함량이 높다 혹은 풍부하다.	매 100g 중≥30% NRV 매 100ml 중 ≥15% NRV 혹은 매 420kJ 중 ≥10%NRV	
미네랄 (나트륨 미포함)	×내원 혹은 함유×	매 100g 중≥15% NRV 매 100ml 중≥7.5% NRV 혹은 매 420kJ 중≥5%NRV	'다양한 미네랄' 함유하는 것은 3가지 및(혹은) 3가지 이상의 미네랄함량이 '함유'의 표기 요구에 부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높다. 혹은 풍부하다.	매 100g 중≥30% NRV 매 100ml 중≥15% NRV 혹은 매 420kJ 중≥10%NRV	

a '분량(份)'으로 식품계량단위로 삼을 때 100g(mL) 함량요구에 부합하여만 표기할 수 있음.



표C.2 함량표기 및 동의어

표준어	동의어	표준어	동의어
불포함, 무	영'0', 없음, 100% 불포함, 무, 0%	함유, 내원	제공, 함유, 있음
아주 낮다.	아주 적다.	대량으로 함유, 높다.	내원이 좋다. ×× 풍부하다. 풍부한 ××, 높은×× 제공함.
낮음	적음, 지방이 적다 ^a		

a '지방이 적다.' 저지방표기에만 적용됨

표C.3 열량과 영양성분비교표기의 요구 및 조건

비교표기의 방식	요구	조건
열량 감소	참고식품과 비교하여, 열량이 25% 이상 감소함	참고식품(기준식품)이 소비자들이 잘 알고 있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같은 종류 혹은 같은 속성의 식품이어야 함
단백질 증가 혹은 감소	참고식품과 비교하여, 단백질이 25%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함	
지방 감소	참고식품과 비교하여, 지방이 25% 이상 감소함	
콜레스테롤 감소	참고식품과 비교하여, 콜레스테롤이 25% 이상 감소함	
탄수화물 증가 혹은 감소	참고식품과 비교하여, 탄수화물이 25%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함	
설탕 감소	참고식품과 비교하여, 설탕이 25% 이상 감소함	
식이섬유 증가 혹은 감소	참고식품과 비교하여, 식이섬유가 25%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함	
나트륨 감소	참고식품과 비교하여, 나트륨이 25% 이상 감소함	
미네랄 증가 혹은 감소	참고식품과 비교하여, 미네랄이 25%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함	
비타민 증가 혹은 감소	참고식품과 비교하여, 비타민이 25%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함	

표C.4 비교표기의 동의어

표준어	동의어	표준어	동의어
증가	증가×% (×배)	감소	감소×% (×배)
	증 ×% (×배)		감 ×% (×배)
	가 ×% (×배)		소 ×% (×배)
	제고×% (×배)		줄임 ×% (×배)
	첨가×% (×배)		하락 ×% (×배)
	증가×%, 제고(×배)		하락 ×% (×배) 등

[부록 D]

열량 및 영양성분 기능 표준용어 표기

D.1 본 부록은 열량 및 영양성분 기능 표준용어 표기에 대해 규정했다.

D.2 열량

인체는 생명활동을 지속함에 있어서 열량이 필요하다.

생물체의 성장발육과 일체 행동은 열량이 필요하다.

일정한 열량은 양호한 건강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열량과다섭취, 운동부족은 비만 및 과다체중과 관련이 있다.

D.3 단백질

단백질은 인체의 주요한 구성물질이자 각종 아미노산을 제공하고 있다.

단백질은 인체생명활동 중에 꼭 필요한 중요물질이며 조직의 형성과 생장에 도움이 된다.

단백질은 인체조직의 구성 및 회복에 도움이 된다.

단백질은 조직의 형성과 생장에 도움이 된다.

단백질은 조직형성과 생장에 있어서 중요한 영양성분이다.

D.4 지방

지방은 고열량을 제공한다.

하루당 섭취하는 음식 중에서 지방이 제공하는 열량은 총 열량의 30%를 초과하면 안 된다.

지방은 인체의 중요한 조성성분이다.

지방은 지용성비타민의 흡수에 도움이 된다.

지방은 인체 필수 지방산을 제공한다.

D.4.1 포화지방

포화지방은 식품 중 콜레스테롤의 흡수를 촉진한다.



포화지방의 섭취량이 많을 경우 건강에 해롭다.

포화지방을 과다 섭취하였을 경우 콜레스테롤의 수치가 높아지므로 섭취량은 하루당 총 열량의 10%를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D.4.2 트랜스 지방산

트랜스 지방산은 과다 섭취 시 건강에 해로우므로 하루당 섭취량은 2.2g을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트랜스 지방산은 과다 섭취 시 건강에 해로우므로 섭취량은 하루 총 열량의 1%보다 적어야 된다.

트랜스 지방산을 과다 섭취 시 콜레스테롤의 수치가 높아짐에 따라 심혈관질환의 발병률이 높아진다.

D.5 콜레스테롤

성인 하루당 섭취하는 음식 중 콜레스테롤 섭취량은 300mg을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D.6 탄수화물

탄수화물은 인간이 생존함에 있어서 기본적인 물질이자 열량 주요 근원이다.

탄수화물은 인간에게 필요한 열량의 주요 근원이다.

탄수화물은 혈당을 생성하는 주요 근원이다.

음식 중 탄수화물은 총 열량의 약 60%를 차지한다.

D.7 식이섬유

식이섬유는 정상적인 장 기능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

식이섬유는 저 열량 물질이다.

D.8 나트륨

나트륨은 인체의 수분을 조절 할 수 있고 산알칼리 평형을 유지한다.

성인 한 명이 하루당 소금섭취량은 6g을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나트륨을 과다 섭취 시 건강에 해롭다.

D.9 비타민 A

비타민 A는 암 시력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

비타민 A는 피부와 점막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

D.10 비타민 D

비타민 D는 칼슘의 흡수를 촉진한다.

비타민 D는 골격과 치아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

비타민 D는 골격형성에 도움이 된다.

D.11 비타민 E

비타민 E는 항산화 작용이 있다.

D.12 비타민 B₁

비타민 B₁은 열량대사 중 꼭 필요한 성분이다.

비타민 B₁은 신경계통의 정상적인 생리기능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

D.13 비타민 B₂

비타민 B₂은 피부와 점막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

비타민 B₂은 열량대사 중 꼭 필요한 성분이다.

D.14 비타민 B₆

비타민 B₆은 단백질의 대사와 이용함에 있어서 도움이 된다.

D.15 비타민 B₁₂

비타민 B₁₂는 적혈구의 형성에 도움이 된다.

D.16 비타민 C

비타민 C는 피부와 점막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

비타민 C는 골격과 치아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

비타민 C는 철의 흡수를 촉진하는 작용을 한다.

비타민 C는 항산화 작용이 있다.

D.17 니코틴산

니코틴산은 피부와 점막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

니코틴산은 열량대사 중 꼭 필요한 성분이다.

니코틴산은 신경계통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

D.18 엽산

엽산은 태아의 두뇌와 신경계통의 정상적인 발육에 도움이 된다.

엽산은 적혈구의 형성에 도움이 된다.

엽산은 태아의 정상적인 발육에 도움이 된다.

D.19 판토텐산

판토텐산은 열량대사와 조직형성의 중요한 성분이다.

D.20 칼슘

칼슘은 인체 골격과 치아의 주요한 조성성분으로서 많은 생리기능들이 칼슘이 필요하다.

칼슘은 골격과 치아의 주요성분으로서 골밀도를 유지한다.

칼슘은 골격과 치아의 발육에 도움이 된다.

칼슘은 골격과 치아를 더욱 단단하게 한다.



D.21 마그네슘

마그네슘은 열량대사, 조직형성 및 골격발육의 중요한 성분이다.

D.22 철

철은 적혈구 형성의 중요한 성분이다.

철은 적혈구 형성의 필요 물질이다.

철은 적혈구의 형성에 꼭 필요하다.

D.23 아연

아연은 어린이들의 발육을 함에 있어서 필요물질이다.

아연은 식욕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된다.

아연은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된다.

D.24 요오드

요오드는 갑상선이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함에 있어서 필요물질이다.

[부록 7]

사전포장 특수식이용도식품 라벨 통칙(GB 13432-2013)

1. 범위

본 표준은 사전포장 특수식이용도 식품 라벨(영양 라벨 포함)에 적용된다.

2. 용어와 정의

GB 7718에서 규정한 경우 및 다음 용어와 정의는 본 표준에 적용한다.

2.1 특수식이용도식품

특수한 신체 혹은 생리적인 상황과(혹은) 질병, 교란 등 특수 영양 수요 만족을 위하여 전문 가공 혹은 조제한 식품이다. 이 식품들은 영양소와(혹은) 기타 영양 성분 함량이 일반 식품과 다르다. 특수식이용도식품에 포함되는 식품 유형은 부록 A를 참조한다.

2.2 영양소

식품에 특정 생리적 기능이 있으며 섭취자의 성장, 발육, 활동, 번식 및 정상적인 대사에 필요한 물질을 유지할 수 있다.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미네랄 및 비타민 등이 여기에 속한다.

2.3 영양 성분

식품 중 영양소와 영양소 외의 영양 및(혹은) 생리적 기능을 갖춘 기타 식품 성분을 말한다.

2.4 권장 섭취량

특정 성별, 연령 및 생리적인 상황에서 절대 다수의 개체가 필요로 하는 영양소 섭취 수준이다.

2.5 적정 섭취량

영양소를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수준이다. 관찰과 실험을 통해 얻어진 건강한 자의 영양소 섭취량이다.

3. 기본 요구 조건

사전포장 특수식이용도식품 라벨은 GB 7718 규정의 기본 조건과 다음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 질병 예방, 치료 기능을 언급하지 않는다.
- 사전포장 특수식이용도식품에 해당하는 제품 표준 중 라벨, 설명서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 0~6개월 영아에 대한 조제식품 중 필수 성분에 대한 함량 강조와 기능 강조를 금지한다.

4. 강제 표시 내용

4.1 일반 조건

사전포장 특수식이용도식품 라벨 표시 내용은 GB 7718 중 관련 조항에 부합해야 한다.

4.2 식품 명칭

2.1의 정의에 부합하는 식품에만 ‘특수식이용도식품’ 명칭 혹은 해당 제품의 특수성을 묘사하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4.3 에너지와 영양 성분 표시

4.3.1 사각형 표 형식으로 에너지,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과 나트륨 및 제품 표준에서 요구한 기타 영양 성분 및 함량을 표시해야 한다. 사각형 사이즈는 자유롭게 선택 하며 포장과 수직을 이루고 제목을 ‘영양 성분표’라고 표기한다. 제품이 관련 법규 혹은 표준에 의거하여 선택성 성분을 첨가하였거나 혹은 특정 물질을 강화하였으면 그 성분 및 함량을 표시해야 한다.

4.3.2 사전포장 특수식이용도식품 중 에너지와 영양 성분 함량은 100g과(혹은) 100mL와 (혹은) 식품 하나당 섭취 가능한 부분의 구체적인 수치에 따라 표시한다. 용량을 표시할 때 분량의 크기를 식품 특징 혹은 권장량에 따라 규정한다. 필요 시 혹은 제품 표준에서 별도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100kJ 당 영양 성분함량을 표시해야 한다.

4.3.3 에너지 혹은 영양 성분 표시 수치는 제품 검사 혹은 원료 계산으로 알 수 있다. 제품 품질보증기한 내에 에너지와 영양 성분의 실제 함량은 표시값의 80% 이상 이어야 하며 제품 표준 요구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4.3.4 사전포장 특수식이용도 식품의 단백질 공급원이 가수 분해 단백질 혹은 아미노산 이면 ‘단백질’ 항목에 ‘단백질’, ‘단백질(동일 물질)’ 혹은 ‘아미노산 총량’ 중 하나를 선택하여 표시할 수 있다.

4.4 섭취 방법과 대상

4.4.1 사전포장 특수식이용도식품의 섭취 방법, 하루 혹은 매끼니 섭취량에 대해 필요 시 조제 방법 혹은 재수화 조제 방법을 표시해야 한다.

4.4.2 사전포장 특수식이용도식품 섭취 대상을 표시한다. 특수의학용도 영아조제 식품과 특수의학용도 조제식품의 경우 제품 표준에 따라 섭취 대상을 표시한다.

4.5 보관 조건

4.5.1 라벨에 사전포장 특수식이용도식품 보관 조건을 표기하고 필요 시 개봉 후 보관 조건도 표기해야 한다.

4.5.2 사전포장 특수식이용도식품을 개봉 후 보관하면 안 된다거나 혹은 원래의 포장 용기 내 보관하면 안 되는 경우 소비자에게 특별 경고한다.

4.6 표시 내용 면제

사전포장 특수식이용도식품 포장물 혹은 포장 용기의 최대 표면 면적이 10cm² 이하 이면 제품 명칭, 순함량, 생산자(혹은 판매 중개상) 명칭과 주소, 생산일자과 품질보증 기한만 표시해도 된다.

5. 선택성 표시 내용

5.1 권장 섭취량 혹은 적정 섭취량 중 에너지와 영양 성분 질량 비율

에너지값과 영양 성분 함량값을 표시하고 또한 섭취 대상에 따라 100g과(혹은) 100mL와(혹은) ‘중국 국민 영양 참고 섭취량’ 권장 섭취량(RNI) 혹은 충분 섭취량(AI) 중 식품 하나당 에너지와 영양 성분 함량의 비율을 표시한다. 권장 섭취량과 충분 섭취량이 없는 영양 성분은 비율을 표시하지 않거나 혹은 ‘-’와 같은 방식으로 표시해도 된다.

5.2 에너지와 영양 성분 함량 강조

5.2.1 제품 내 에너지 혹은 영양 성분 함량이 제품 표준의 최솟값 혹은 허용 강화량 최댓값에 도달할 시 함량을 강조할 수 있다.

5.2.2 제품 표준에 특정 영양 성분 최솟값 조건이 없거나 혹은 최저 강화량 조건이 없으면 기타 국가와(혹은) 국제 조직이 허가한 영양 성분 근거를 제시한다.

5.2.3 함량 강조 용어에 ‘함유’, ‘제공’, ‘출처’, ‘함’, ‘유’ 등이 포함된다.

5.3 에너지와 영양 성분 기능 강조

5.3.1 함량 강조 조건에 부합하는 사전포장 특수식이용도식품은 에너지와(혹은) 영양 성분에 대해 기능을 강조할 수 있다. 기능 강조 용어는 GB 28050에서 규정한 기능 강조 표준 용어를 선택 사용해야 한다.

5.3.2 GB 28050 중 기능 강조 표준 용어에 포함되지 않은 영양 성분은 해당 물질 기능 강조 용어에 대한 기타국가 및 국제조직의 근거를 제공해야 한다.



[부록A]

특수식이용도식품의 유형

특수식이용도 식품의 유형은 아래 내용이 포함된다.

a) 영유아 조제식품

- 1) 영아 조제식품
- 2) 영아 후기 및 유아 조제식품
- 3) 특수의학용도 영아 조제식품

b) 영유아 보조식품

- 1) 영유아 곡물류 보조식품
- 2) 영유아 통조림 포장 보조식품

c) 특수의학용도 조제식품(특수의학용도 영아 조제식품 관련 품종은 제외)

d) 상기 유형을 제외한 기타 특수식이용도식품(보조식 영양보충제품, 운동영양 식품 및 기타 국가표준에 상응하는 특수식이용도식품 포함)

[부록 8] 해관총서령 제248호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 관리 규정’⁷⁷⁾

중화인민공화국 해관총서령

제248호

〈중화인민공화국 수입식품 해외 생산기업 등록 관리 규정〉은 2021년 3월 12일 해관총서 서무회의 심의를 거쳐 통과되었는 바 2022년 1월 1일부터 정식 시행함을 공표한다. 2012년 3월 22일 구(舊)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령 제145호에의거 발표되고 2018년 11월 23일 해관총서령 제243호에 따라 개정된 〈수입식품 해외 생산기업 등록 관리 규정〉은 동시에 폐지된다.

서장 니웨펑(倪岳峰)

2021년 4월 12일

77) 중화인민공화국 수입식품 해외 생산기업 등록관리규정

(<https://www.foodinfo.or.kr/portal/bbs/detailBBSArticle.do?bbsId=10000000000000000494&goMenuNo=9000001474&topMenuNo=9000001079&upperMenuNo=9000001096&nttId=273069#none>)



중화인민공화국 수입식품 해외 생산기업 등록 관리 규정(249호령)

제1장 총칙

제1조 수입식품 해외 생산기업에 대한 등록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식품 안전법〉 및 실시조례,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 검역법〉 및 실시조례, 〈중화인민공화국출입국 동식물검역법〉 및 실시조례, 〈식품 등 제품 안전감독관리 강화에 관한 국무원특별규정〉등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중국 내로 식품을 수출하는 해외 생산·가공·저장 기업(이하 수입식품 해외 생산기업으로 통칭)의 등록 관리에 대해서는 본 규정을 적용한다. 전항에 규정된 수입식품 해외 생산기업에 식품첨가제, 식품 관련 제품 생산·가공·저장기업은 포함되지 않는다.

제3조 해관총서는 수입식품 해외 생산기업의 등록 관리 업무를 일괄 책임진다.

제4조 수입식품 해외 생산기업은 반드시 해관총서의 등록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장 등록 조건 및 절차

제5조 수입식품 해외 생산기업의 등록조건

- (1) 소재 국가(지역)의 식품 안전 관리시스템이 해관총서의 동등성(Equivalence) 평가 및 심사에 통과해야 한다.
- (2)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의 승인을 거쳐 설립되고 해당 부문의 효과적인 감독관리 하에 있어야 한다.
- (3) 효과적인 식품 안전위생 관리와 예방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고, 소재 국가(지역)에서 합법적으로 생산, 수출되며, 중국으로 수출하는 식품이 중국 관련 법률, 법규와 식품안전 국가표준에 부합함을 보장해야 한다.
- (4) 해관총서와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이 합의한 검사검역 관련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제6조 수입식품 해외 생산기업 등록방식은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 추천 등록 방식과 기업 단위 신청 등록 방식이 포함된다. 해관총서는 식품의 원료공급원, 생산가공

공정, 식품 안전 관련 기존 누적 데이터, 소비자층, 식용방식 등 요소에 대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하되 국제 관례를 함께 참조하여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방식과 신청 제출자료를 확정한다. 리스크 분석을 통해 특정 식품의 리스크 변동 사실이 밝혀지거나 이를 입증하는 증거가 드러날 경우 해관총서는 관련 식품의 해외 생산기업 등록방식과 신청 제출자료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다음 열거된 식품의 해외 생산기업은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이 해관총서에 추천하여 등록을 진행한다.

육류와 육제품, 소시지케이싱, 수산물, 유제품, 제비집과 제비집 제품, 벌꿀제품, 알과 알제품, 식용유지와 식용유 원료, 소가 들어 있는 밀가루식품, 식용 곡물, 곡물제분 공업제품 및 맥아, 신선·탈수(건조) 채소 및 건조 두류, 조미료, 견과와 씨앗, 건조 과일, 로스팅 전(前) 단계 커피원두, 코코아, 특수식이용도식품, 보건식품

제8조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은 등록을 추천한 업체에 대해 심사, 검사를 진행하고 등록요건 부합 여부 확인 후 해관총서에 등록을 추천해야 하며 동시에 다음 제시된 신청자를 제출한다.

- (1)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의 추천서
- (2) 기업 명단과 기업 등록 신청서
- (3) 기업 신분 증명 서류, 예: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이 발급한 사업자 등록증 등
- (4)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이 추천한 기업이 본 규정 요구에 부합한다는 성명서
- (5)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이 관련 기업에 대해 실시한 심사, 검사의 결과 보고서
필요 시 해관총서는 기업 공장 구역, 작업장, 냉장·냉동 창고의 평면도, 공정 흐름도
기업 식품안전 위생 및 예방 체계 관련 서류 제출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본 규정 제7조에 열거된 식품 외 기타 식품의 해외 생산기업은 자체적으로 혹은 대리인에게 위탁하여 해관총서에 등록 신청을 하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1) 기업 등록 신청서
- (2) 기업의 신분 증명 서류, 예: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이 발급한 사업자 등록증 등
- (3) 본 규정의 요구에 부합함을 서약하는 기업의 성명서

제10조 기업 등록 신청서 내용에는 기업명, 소재 국가(지역), 생산장소 주소, 법정대표인, 연락담당자, 연락처,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이 승인한 등록번호, 등록 신청 식품 유형, 생산유형, 생산능력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 제11조** 등록 신청 서류는 반드시 중국어 또는 영어로 작성 후 제출하며, 관련 국가(지역)와 중국 간 등록방식과 신청서류에 대한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 양측 합의에 따라 이행한다.
- 제12조**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 또는 수입식품 해외 생산기업은 제출 서류의 진실성, 완전성, 합법성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 제13조** 해관총서는 자체적으로 혹은 관련 기관에 위탁하여 심사팀을 구성하며, 등록 신청한 수입식품 해외 생산기업에 대해 서면검사, 영상검사, 현장검사 등 형식이나 복수 조합 형태의 검사를 통해 평가와 심사를 실시한다. 심사팀은 2명 이상의 평가심사위원으로 구성된다.
수입식품 해외 생산기업과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은 상기 평가 심사 업무 과정에 협조해야 한다.
- 제14조** 해관총서는 평가 심사 결과에 근거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수입식품 해외 생산기업에 대해 등록을 승인하고 중국에서의 등록번호를 부여하며,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 또는 수입식품 해외 생산기업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요건에 부적합한 수입식품 해외 생산기업에 대해서는 등록 승인을 하지 않고,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 혹은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에 서면으로 이를 통보한다.
- 제15조** 등록 완료 기업은 중국으로 식품 수출 시 반드시 식품의 내·외포장에 중국에서 부여받은 등록번호 또는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에서 발급받은 등록번호를 표기해야 한다.
- 제16조** 수입식품 해외 생산기업의 등록 유효기간은 5년이다.
해관총서는 수입식품 해외 생산기업 등록 승인 시 등록 유효기간의 시작일과 만료일을 확정해야 한다.
- 제17조** 해관총서는 등록 승인된 수입식품 해외 생산기업 명단을 일괄 공표한다.

제3장 등록 관리

- 제18조** 해관총서는 자체적으로 또는 관련 기관에 의뢰하여 심사팀을 구성하고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이 등록 요건에 지속적으로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재검사를 실시한다. 심사팀은 2명 이상의 평가심사위원으로 구성된다.

제19조 등록 유효기한 내에 수입식품 해외 생산기업의 등록 정보에 변동이 생길 경우 등록신청 경로를 통해 해관총서에 변경 신청을 하고 다음의 서류를 제출한다.

- (1) 등록사항 변경 정보 대조표
- (2) 변경 정보 관련 증빙서류

해관총서는 평가를 거쳐 변경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변경을 허락한다.

생산장소 이전, 법정대표인 변경 혹은 소재 국가(지역)에서 발급된 등록번호 변경 시에는 재등록 신청을 해야 하며, 이때 중국 내 등록번호는 자동으로 효력 상실된다.

제20조 수입식품 해외 생산기업이 등록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등록 유효기간 만료일 전 3~6개월 내에 등록 신청 경로를 통해 해관총서에 등록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등록 연장 신청 시 제출 자료는 다음과 같다.

- (1) 등록 연장 신청서
- (2) 등록 요건에 지속적으로 부합함을 서약하는 성명서

해관총서는 등록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기업에 등록 연장을 허가하며, 등록 유효기간은 5년 연장한다.

제21조 기등록된 수입식품 해외 생산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해관총서는 해당 기업의 등록을 말소하며,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 또는 수입식품 해외 생산기업에 통보하고 이를 대외 공표한다.

- (1) 규정에 따라 등록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2)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 또는 수입식품 해외 생산기업이 자발적으로 말소 신청하는 경우
- (3) 본 규정 제5조 제(2)항 요구사항에 더 이상 부합하지 않는 경우

제22조 수입식품 해외 생산기업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은 기등록 기업에 대한 효과적인 감독 관리를 실시하며, 등록 기업이 지속적으로 등록 요구사항에 부합하도록 독려해야 한다.

등록 요구 부적격 사항 발견 시 신속히 통제 조치를 취하고 등록 요구에 부합하도록 시정 완료할 때까지 관련 기업의 대(對)중국 식품 수출을 잠정 중단한다. 수입식품해외 생산기업이 자체적으로 등록 요구 부적격 사항을 발견한 경우 자발적으로 대(對)중국 수출을 잠정 중단하고 신속히 시정 조치를 강구하여 등록요구에 부합할 때까지 시정을 지속한다.

제23조 기등록 수입식품 해외 생산기업이 등록 요구사항에 더 이상 적합하지 않음을 발견할 경우 해관총서는 규정 기한 내에 시정할 것을 명하고, 시정 기간에 해당기업의



식품 수입을 잠정 중단한다.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이 등록을 추천한 기업이 수입 잠정 중단 조치를 받을 시, 주관 당국은 관련 기업이 규정 기한 내에 시정 완료하도록 감독하고, 해관총서에 서면 시정보고서와 등록 요구사항 부합 서면 성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자체적으로 또는 대리인에 위탁하여 등록을 신청한 기업이 수입 잠정 중단 조치를 받을 시, 규정 기한 내에 시정을 완료하고, 해관총서에 서면 시정보고서와 등록 요구사항 부합 서면 성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해관총서는 업체의 시정 현황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고, 심사 합격 시 관련 기업의 식품수입을 재개하도록 한다.

제24조 기등록 수입식품 해외 생산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해관총서는 해당 업체의 등록을 말소하고 이를 대외 공표한다.

- (1) 기업이 자체 귀책 사유로 수입식품에 중대 식품안전사고를 초래한 경우
- (2) 중국으로 수출된 식품이 입국 검사검역 과정에서 식품 안전 문제가 발견되고 그 상황이 심각할 경우
- (3) 기업의 식품 안전 위생 관리에 중대한 문제가 존재하여 중국으로 수출하는 식품의 안전 위생 요구사항 부합 여부를 보장할 수 없는 경우
- (4) 시정 조치 이행 후에도 여전히 등록 요구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5) 허위서류를 제출하고 관련 상황을 은폐한 경우
- (6) 해관총서의 재심사 및 사고 조사를 거절하여 협조하지 않는 경우
- (7) 등록번호를 임대, 대여, 양도, 전매, 도용하는 경우

제4장 부 칙

제25조 국제조직 혹은 중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국가(지역)의 주관 당국이 전염병 발발 상황을 발표하거나 입국 검사검역 중 관련 식품에서 전염병, 공중보건사건 등 심각한 문제가 발견된 경우, 해관총서는 해당 국가(지역)의 식품 수입에 대한 잠정 중단 조치를 공지하고, 해당기간에는 해당 국가(지역) 관련 식품생산기업의 등록 신청을 받지 않는다.

제26조 본 규정에서 지칭하는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은 수입식품 해외 생산기업이 소재한 국가(지역)에서 식품생산기업 대상 안전위생 감독 관리를 책임지는 정부부처를 말한다.



제27조 본 규정의 해석은 해관총서가 담당한다.

제28조 본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12년 3월 22일 구(舊) 국가품질감독
검사검역총국령 제145호에 의거 발표되고 2018년 11월 23일 해관총서령 제243호에
따라 개정한〈수입식품 해외 생산기업 등록 관리 규정〉은 동시에 폐지된다.

【알 림】

본 자료 내용은 조사시점에서 중국의 인터넷사이트와 기존의 자료 등을 분석하여 작성한 참고 자료입니다.

자료의 조사시점 이후 중국 국가의 정책·제도의 변화와 번역으로 인한 일부 상이한 부분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깨끗하고 바른 당신! 세상을 밝힙니다.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란? 공익신고자등(친족 또는 동거인 포함)이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지 않도록 비밀보장, 불이익 보호조치, 신변보호조치 등을 통하여 보호하는 제도

(우)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공익보호지원과
Tel : 044-200-7773 / Fax : 044-200-7949

식품 수출 안내서 중국편



식품의약품안전처

(우)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종합상담센터 : 1577-1255